

정보인권 보고서

2013. 1.

발 간 사

정보통신기술(ICTs)의 발전은 정치, 사회,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 인류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혜택을 가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감시와 통제, 정보 접근성에 따른 사회적 격차 등과 같은 수많은 과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더욱 더 고도화되어 가는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인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수 십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토론회, 국내·외 심포지엄을 거치며 정보사회의 인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12년 ASEM 인권세미나에서는 48개 회원국 각국의 모범사례를 통하여 회원국들의 국제사회의 기준을 마련하는 초석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인권 보고서는 개별적인 기본권과 단편적인 사례 중심의 논의를 탈피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발간되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를 위해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 정보인권과 관련된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 및 기준을 소개하고 정보인권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이번 발간되는 정보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정보통신기술의 선도국인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면서, 앞으로 국내와 국외를 아울러 정보인권에 관한 종합적 논의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자문해 주신 각계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3.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정보사회와 정보인권	3
제2절 정보인권 보고서의 필요성	4
제3절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8
1.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와 개념 규정	8
2. 정보인권의 유형과 내용	11
 제2장 유형별 정보인권 현황과 이슈	17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	19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19
2. 국제 동향 및 기준	20
(1) 최근동향	20
(2) 국제기준	24
3. 정보프라이버시 법·제도 현황	29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시행	29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
4. 주요 정보프라이버시 이슈	32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53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53
2. 국제 동향 및 기준	54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쟁점사건	58
(1) 제도적 논쟁	58
(2) 쟁점사건	70
(3)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	79
제3절 정보접근권	84

1.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내용	84
(1) 정보접근권의 의의	84
(2) 정보접근권의 내용	86
2. 국제 동향 및 기준	87
(1) 정보접근권의 역사	87
(2) 정보공개청구의 법제화 동향	88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제화 동향	96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이슈	97
(1) 제도적 논쟁	97
(2) 정보접근권 관련 이슈	110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	118
1. 정보문화향유권의 의미	118
2. 국제동향 및 기준	119
(1) 문화향유권의 개념구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	119
(2)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충돌의 발생	122
3.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의 현황과 이슈	126
(1) 정보문화향유권의 헌법적 근거	126
(2)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된 이슈	126
 제3장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137
제1절 진정·상담·민원 현황	139
1. 정보인권 관련 전체적 민원 현황	139
2. 정보프라이버시권	141
3.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142
4. 정보접근권 및 정보문화향유권	144
제2절 권고·의견표명 및 진정·상담 내용	146
1. 정보인권 각 영역별 주요 권고 및 상담 사례	146
(1) 정보프라이버시권	146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147

(3) 정보접근권	150
2. 정보인권 관련 정책 권고 현황	151
3. 정보인권 관련 진정 사건 결정 사례	160
4. 정보인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176
 제4장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189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강화	191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의 통일	191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개편	191
3.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191
4. 강력범죄 피의자의 가족, 친지 등 사생활 보호장치 마련	192
5.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개선	192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보장장치 마련	193
7.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193
8. 생체정보의 수집·처리원칙 마련 및 오남용 방지	194
9. 인터넷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의 제한 및 기준·절차 등 마련	195
10.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재정립	195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	196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강화	196
1. 인터넷에서 불법정보심의제도의 개선 및 자율규제 원칙 적용 ...	196
2.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의 강화	197
3.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장 강화	197
4.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의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 확대	197
5.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원칙을 준수	198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제도의 개선	198

제3절 정보접근권의 강화	198
1.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의 확대	198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의 수립	199
3. 인터넷 접속권의 보장 확대와 망중립성 확보	199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의 강화	200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200
2. 정보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	201

표 목 차

<표 1>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의 주요내용(1980)	26
<표 2>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주요내용(1985)	26
<표 3> ILO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실행규약의 주요내용(1997)	27
<표 4> APEC 프라이버시원칙의 주요내용(2004)	28
<표 5> OECD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29
<표 6> 국내 CCTV 카메라 설치 보급 대수 전망	32
<표 7>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및 통신자료 등 제공현황 · 46	
<표 8> 수사기관별 감청협조 제공 자료	46
<표 9> 1986년 이후 정보 증가	51
<표 10>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한 7원칙 (유럽평의회)	56
<표 11> 표현의 자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7
<표 12> 표현규제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칙	61
<표 13> 저작권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134
<표 14> 유형별 정보인권 관련 민원 현황	139
<표 15> 민원 종류별 정보인권 관련 민원 현황	140
<표 16>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현황	141
<표 17>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민원 현황	143
<표 18> 정보접근권 관련 민원 현황	144
<표 19>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관련 정책권고 현황	152
<표 20>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진정사례	161
<표 21>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 사례	174
<표 22> 정보접근권 관련 진정 사례	175
<표 23>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176
<표 24>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주요 상담 사례	186
<표 25> 정보접근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187



제1장 | 서론

제1절 정보사회와 정보인권	3
제2절 정보인권 보고서의 필요성	4
제3절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8

제1절 정보사회와 정보인권

20세기 후반에 펼쳐진 디지털 정보혁명은 500여 년 전의 인쇄혁명보다 더 놀라운 커뮤니케이션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혁명은 인쇄혁명이 그랬듯이 단순히 사회 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혁명을 기반으로 한 정보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모든 형태의 정보를 생성·이용·가공·저장·검색·전달할 수 있으며 또 이들 정보가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어떻게 유지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정보인권이 강조되는 것은 더욱 고도화되어가는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개인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불가침·불가양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 중에서 정보의 유통에 관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들을 묶어서 ‘정보인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나 지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배 혹은 권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정한 정보를 누르는 받고 누르는 받지 못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그의 권력은 강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공동체 내에서 정보를 누가 얼마만큼 장악하고 지배하느냐는 그 공동체의 권력구조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결정하는 핵심조건이 된다. 정보의 지배는 권력의 기초이자 동시에 자유의 조건인 것이다. 문제는 누가 정보를 지배하고 통제하느냐에 있다.

예를 들면,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지배는 그 정보주체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제3자인 정부나 기업이 그 개인정보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당해 정보주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기초가 된다. 최근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개인정보를 중심

4 정보인권 보고서

으로 한 자유와 권력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보사회에서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결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자유의 조건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로 그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기본적 권리들의 묶음인 정보인권을 단선적이고 편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서는 정보인권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정보인권의 이해에 있어서는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컨대, 개인정보가 당해 정보주체의 인격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소통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타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공동체는 존속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용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에게만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과 소통’이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입법(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의 취지인 것이다.

이처럼 정보인권의 실현과 적용에 있어서는 경합하는 가치와 이익이 공존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묘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컨대, 익명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해서 그 익명 속에 숨어서 무고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대로 인격보호의 명분 아래 익명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도 안 된다. 인격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익명성이 양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정보인권의 실현과 적용에 있어서 경합하는 정당한 가치들 사이의 미묘한 균형과 합리적인 조화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제2절 정보인권 보고서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90년대 초반부터 국가정보화 전략을 바탕으로 정보화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다. 높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인터넷의 보편화와

고도의 정보화 기술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술의 발전은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고, 고도화된 기술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발달하였으며, 정보 접근의 용이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현상 등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으로 승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판시¹⁾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으로 승인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상황의 변동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류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종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사생활 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헌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국가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가의 급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복리증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 및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국민이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공평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뒷받침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을 초월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어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와 정보통신기업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

1) 헌법재판소 2005.5.26. 선고 99헌마513

6 정보인권 보고서

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알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인권 관련 상담 및 진정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위원회의 정보인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결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정보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정보인권에 대한 접근범위와 방향을 재설정하고 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앨빈 토플러의 주장²⁾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보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인에 대한 개념 정립과 유형별로 균형감각을 갖는 전체적인 보고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이 온라인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인권 가치 실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균형 잡힌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보화 사회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원래 그것이 생겨날 때부터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해왔으며, 그것이 탄생시킨 디지털 세상, 사이버 공간 역시 그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배태하고 있다. 디지털의 복제, 인터넷의 공유라는 특징적인 속성에 맹목적 기술적 진보가 더해져 진화해나감으로써 그 부정적 기능과 현상이 더욱 확산되는 것이다³⁾.

정부차원에서는 전자정부를 활용한 지속적인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축적을

2) 앨빈 토플러는 “한국은 그 동안 영국과 미국이 축적한 산업사회의 모델을 잘 따라왔으나, 이제는 한국이 따를 만한 검증된 모형은 없으며,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앨빈토플러,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2면 참조.)

3) 정보문화진흥원(2009), “디지털 위험사회 대응 정책방안 연구” 15면

통한 감시와 검열 가능성이 공존한다. 특히,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활용이라는 통제 메커니즘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투쟁의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만큼 정보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시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며,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창출의 유용성이라는 이면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따른 유출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도 모르는 자신이 존재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개인 측면에서도 정부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개인을 감시할 수도 있고,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도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는 법·정치·행정·사회·교육·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산발적이고, 사례중심의 개별적 접근만이 이루어져 왔을 뿐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화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하여 정보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 및 기준을 살펴보고, 국내의 정보인권 관련 이슈를 통한 법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관련 활동을 분석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고 21세기 정보 사회에 맞는 국가 전체적인 입법화 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보고서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정보인권 관련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4) 제1호에 의거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제3절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1.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와 개념 규정

199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산업사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정보가 중심이 되고 권력의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 관하여 논쟁⁵⁾이 있어 왔다. 하지만 컴퓨터·인터넷·디지털 혁명에 기초한 ‘정보 사회’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기존의 산업사회와 구별에 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정보인권’이라는 용어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관련 기본권(알권리, 프라이버시권, 정보접근, 표현의 자유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1년 정보관련 기본권을 정보기본권으로 명명하고, 이를 독자적·통합적 관점⁶⁾에서 정보기본권으로 개념화하기 시작⁷⁾하였다. 그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정보화 시대의 인권’, ‘정보기본권’이라는 개념을 혼용하여 이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정보통신부는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정보기본권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정책개발지원사업종합보고서⁸⁾를 발간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자주민카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제기를 통해 ‘정보인권’이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정보사회의 개념은 분석적으로 기술적, 경제적, 직업적, 공간적, 문화적인 기준으로서의 개념정의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학자들에 따라 정보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는 다니엘 벨의 후기산업사회에 대한 개념화, 감시를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수행하는 역할을 자세히 보여주는 민족국가와 폭력성에 관한 안토니 기든스, 선진자본주의의 정보에 대한 요구와 조작에 관한 허버트 설러의 견해, 공공영역이 축소되고 있고 그와 함께 정보의 충실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논의, 포드주의로부터 정보 관리에 성패가 달려 있는 포스트포드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살고 있다는 주장 등이 있다, F. Webster(1995), “Theorise of The Information Society” 참조.
- 6) 김배원, “정보관련 기본권의 독자적, 통합적 보장을 위한 시론”,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2001.8)
- 7) 국회도서관에서 정보기본권, 정보인권을 키워드로 하여 정보기본권(54건), 정보인권(224건)문헌을 검색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8) 관련 내용 중 이인호, 한상희 교수를 포함한 9명의 연구자들이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법 연구 분야에 “디지털 시대의 정보법 질서와 정보기본권” 부분을 포함하여 집필함

라는 용어를 국민들에게 인식되도록 노력하였고, 문헌상으로는 2003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고한 문헌⁹⁾에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2003.8.13.자)를 통해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3.11.10)에 대한 보도자료(2003.11.13.자)에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로 정보인권 보장해야”라는 제목으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 사업계획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2009~2011년 인권행동증진 3개년 계획에 정보인권 강화를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2012년 사업계획에서 ‘정보인권 증진’을 기획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는 학계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정보기본권”의 개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으로 “정보인권”보호라는 캠페인적인 구호를 사용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정보인권의 개념은 학자들의 논의과정과 시민단체의 논의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통신의 비밀보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프라이버시권뿐만 아니라 알권리의 정보접근권, 정보생산 및 제공권과 관련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문화를 향유할 권리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인권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으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¹⁰⁾

9) 오병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계기로 본 정보인권”, 『문화과학』 통권 제35호 (2003년 가을), 문화과학사

10) 1. 이인호, “헌법상 정보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의 자유(공적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사적 정보의 보호)’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는 권리”,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자유의 긴장과 조화’, 법학연구 제3호,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2008)

2. 이창범, “정보인권이란 디지털 정보와 매체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권리로서 정보의 생산에 참여할 권리,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정보를 향유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보에 관한 기본적 인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정보사회에 새롭게 대두한 독자적 기본권이지만 정보와 관련성이 있는 기존의 기본권으로 포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과 같이 정보적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들에 의해서도 정보인권은 보장될 수 있지만 알권리, 액세스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은 전통적인 기본권들만으로는 충분히 포섭할 수 없는 정보인권의 영역이 존재하며,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¹¹⁾으로서 기존의 기본권 조항이나 기타 헌법원리 등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보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인권 포럼회의를 개최¹²⁾하여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계에서는 인권과 기본권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과 사업방향에 비추어 ‘정보 기본권’보다는 ‘정보인권’의

통제할 권리로 구성된다.”

3. 이민영, “정보인권이란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이를 통해 삶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삶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 ‘정보인권의 법적 의의와 좌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학술대회(2010)
4. 권건보, “정보인권이란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여 수집하고 이를 자유롭게 전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정보인권의 증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위원회 설립 10년 기념 공동심포지엄(2012), 국가인권위원회·한국헌법학회
5. 김배원, “정보기본권이란 정보를 중심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기본권들을 정보기본권 내지 정보헌법 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대응한 하나의 기본권계열로 파악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정보관련 기본권의 독자적, 통합적 보장을 위한 시론’,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2001)
6. 김상겸, “정보기본권은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와 관련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등장하였고, 정보와 관련된 인간의 기본권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기본권은 정보와 관련된 인간의 기본권을 의미한다.”, ‘정보 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7. 하우영, “정보기본권이란, 헌법상 보장된 기존의 인권 개념이 정보화라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확대·발전된 것으로서, 국민이 정보사회에서 자유롭게 평등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노동정보 처리와 정보인권 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지 제13권 제6호(2003)

11) 헌법재판소 2005. 5.26. 자 99헌마513 결정

12) 제1차 정보인권 포럼회의(2012.10.5): 정보인권 개념 및 유형에 관한 논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사회에서의 인권보호’라는 개념은 국민에게 과도기적 표현으로서 이해의 용이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으로서 다른 분야의 인권보다 외국과 비교하여 차별적이고 선도적으로 앞서 나간다는 차원으로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보인권’의 개념은 한정적 개념이 아닌 발전적 개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정보인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and Human Rights)”이란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2. 정보인권의 유형과 내용

‘정보’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따라 정보인권의 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정보의 의미는 그 활용범위만큼이나 기술적 의미로서 ‘0’과 ‘1’로 구현되는 디지털 정보로 보는 협의에서 사회적 의미로서 의미있게 처리되는 자료로 보는 광의까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¹³⁾, 현행법상 정보는 법률에서만 694건 그리고 법령 전체에서는 2,052건이 검색되고 있는 보편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¹⁴⁾.

정보(情報; Information)란 ‘informatio’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¹⁵⁾ ‘생활주체와

13) 가령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의미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에 해당하지만, 군사용어로 쓰일 때에는 ‘일차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분석·평가하여 얻은, 적(敵)의 실정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이나 자료’를 뜻하며, 컴퓨터용어로는 ‘어떤 자료나 소식을 통하여 얻는 지식이나 상태의 총량’을 말한다.

14) 이민영(2010), “정보인권의 법적 의의와 좌표”, 국가인권위원회

15) 중세 라틴어인 ‘informatio’는 ‘형상(形狀; Vorstellung)’, ‘설명(說明; Erläuterung)’, ‘교시(敎示; Unterweisung)’ 등을 뜻하였던 것으로, 프랑스에서는 고전적인 원어로서 주로 법적 차원에서 ‘어떤 진상(真相)에 관한 수집 및 처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Christopher John Fox, *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an investigation of information, misinformation, informing, and misinforming*,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3, pp.4~6.

외부객체 사이의 사정이나 정황에 관한 보고'와 같이 보편적으로 사회적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의 개념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종래의 아날로그(analogue) 방식과는 달리 모든 정보가 '0'과 '1'로 구현되는 디지털(digital) 방식으로 통일화되었으며, 이를 테면 동일한 기억매체에 저장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지는 음악과 영상과 같은 정보가 그 성격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의 정보는 급속히 전자적 정보(electronic information)로 변형·유통·창출되어지게 이르렀으며, 이러한 전자정보의 확대는 전자적 아이템 혹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기존에는 예상할 수 없던 새로운 거래대상을 출현케 하였을 뿐 아니라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인해 그 유통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¹⁶⁾

따라서 고전적인 활자매체를 통한 일차원적인 정보개념은 디지털 정보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입체적 정보 개념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으며,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정보 개념과 유통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그 정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이라는 처리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범위를 '디지털화된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보편화되어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디지털 정보와 급격히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따라 인류에 제공되는 혜택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온라인의 기술적 특성으로 법적 해석이 애매해지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인권 문제를 조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하는 만큼 정보인권에서 다루는 정보의 범위는 '디지털화된 정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보인권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정보인권에 대한 유형의 분류는 정립된 유형이 없어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분류¹⁷⁾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16) 이민영, 개인정보법제론, 진한M&B, 2007, 23면.

17) 1. 이인호 교수는 크게 정보의 자유, 정보프라이버시권으로 분류하면서 정보의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공개청구권(정보접근권), 정보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이 있

분류를 참고하여 종합하면 크게 공적 정보의 자유와 사적 정보의 보호라는 큰 틀 속에 세부적으로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권, 정보접근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확장하여 정보문화향유권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으며, 정보프라이버시에는 정보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이인호(2008),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자유의 긴장과 조화”, 『법학연구』 제3호,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 이민영 교수는 정보인권의 유형으로 크게 정보참여권, 프라이버시, 정보향유권으로 나누고, 정보참여권에는 정보접근권, 정보보안권, 정보영업권, 프라이버시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권, 정보향유권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평등권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민영(2010), “정보인권의 법적 의의와 좌표”, 『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체화』, 국가인권위원회·가톨릭대학교 공동학술세미나
 3. 권건보 교수는 정보인권을 정보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으로 나누고 정보의 자유에는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이 이에 속하며, 자기정보통제권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이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음. 권건보(2012), “정보인권의 증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그리고 도전과 전망』, 국가인권위원회·헌법학회 공동심포지엄
 4. 명재진 교수는 사적정보의 보호(정보통신의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와 공적정보의 자유(정보접근권, 알권리)라는 틀로 분류하고 있음. 명재진·이한데(2011),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정보화정책』 제18권, 제1호
 5. 강경근 교수는 정보의 보호, 정보의 자유의 틀로 나누고 정보의 보호에는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정보보안권으로, 정보의 자유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이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음. 강경근(2004), 『헌법학』
 6. 김배원 교수는 정보기본권에는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비밀보장, 정보제공권,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으로 분류하고 하고 있음. 김배원(2006),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 18) 대표적으로 이인호 교수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헌법은 정보인권을 두 가지 상이한 차원의 기본권, 즉 정보소통의 권리와 정보프라이버시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정보소통의 권리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에, 정보프라이버시권은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주체가 그 유통에 대해 통제 내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정보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며, 우리 헌법상의 정보질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봉사하기 위하여,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이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정책지표를 표방하면서, 그 구현방법으로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소통의 권리”와 “정보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호(2008),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법학연구, 가톨릭대학교

하지만 정보인권에 대한 이러한 분류 체계는 일정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권리들의 특징을 표현한 것에 불가하므로 정보인권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보다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하여 어떠한 인권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같이 정보인권을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정의할 경우 정보인권의 유형을 논의함에 있어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헌법상의 권리와 정보인권의 구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인권의 독자성과 관련하여 정보인권은 정보적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들(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의해서도 보장될 수 있으나, 전통적인 기본권들만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없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기존의 기본권 조항이나 기타 헌법원리 등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정보인권만이 가지는 특수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된 알권리, 액세스권, 자기정보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¹⁹⁾

또한 정보인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헌법 체계와 동일하되 논의의 대상은 정보이며,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이 디지털화되고, 그 디지털화된 정보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디지털화된 정보가 개방, 참여 공유라고 하는 매커니즘 속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⁰⁾

예를 들자면, 근대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의 기원은 미국에서 1880년에 Thomas Cooley 판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Tort)에 관한 저서²¹⁾에서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라는 의미로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1890년에 Warren과 Brandeis가 이를 보다 상세히 분석한 한 논문²²⁾에서 ‘프라이버시

19) 권건보(2012), “정보인권의 증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그리고 도전과 전망』, 국가인권위원회·헌법학회 공동심포지엄

20) 제1차 정보인권 포럼: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논의(2012.10.5.)

21) Thomas C. Cooley, Laws of Torts (1st ed. 1880), Sec. 29.

권은 진보된 문명세계에서 살고 있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권은 컴퓨터와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과 그 이후의 제2세대 정보프라이버시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2세대 정보프라이버시권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른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종래의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은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로서 '사적인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익'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즉, 물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 결정²³⁾과 같이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에 의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처리과정에 정보주체가 참여하는 권리이다. 그리하여 정보수집의 목적과 처리방법을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처리거부청구권 등의 권리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은 디지털기술에 힘입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정부나 기업에서 무한대로 축적·처리·가공·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보프라이버시권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기존의 프라이버시 개념에 기반을 둔 프라이버시 보호 제도들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 및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정보 통제권이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 성격과 개인 이용자들의 정보활동 및 정보제공의 자발성, 그리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개인과 기관, 개인과 개인간에 존재해온 권력 불균등의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개념에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특히 개인 이용자들과 정보이용기관들 간의 권력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식별가능성 여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식별되지 않을 권리를 네트워크 프라이버시 개념의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2)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95 (1890) ; 이에 관한 상세는 서주실, "Warren·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제6호(미국헌법학회, 1995), 45면 이하 참조.

23) 헌법재판소 2005.5.26. 선고 99헌마513

것이다.²⁴⁾

또한 정보공개원칙은 기존의 방식에도 구현되는 권리였으나, 정보인권에서 정보공개원칙을 접근할 때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의 투명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저작권은 저작권법으로 저작자의 권리가 있는 만큼, 타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정보문화향유권 측면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인권에 대한 설명의 대상은 디지털화된 정보이며, 정보가 생산되어 폐기될 때까지 정보의 생산주기(Life-Cycle)에 따라 발생되어지는 현상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프라이버시권과 같이 정보인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으로 해석할 경우 현재 헌법 체계와 구분하기 어렵고, 그 체계 내에 포섭되어 정보인권 측면만의 독특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 바라보는 정보인권은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사회의 특징에 기초하여 디지털화된 정보의 수집·가공·유통·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²⁵⁾을 중심으로 기존의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는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정보인권의 유형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향후 또 다르게 포섭될 수 있는 현상이나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인권의 유형을 고정화 하여 정하지 않고, 현재 정보인권을 분류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인 정보프라이버시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24) 우지숙(2005), “정보통제권에서 식별되지 않을 권리로-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13권 제4호

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아닌 정보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가 아닌 정보접근권, 문화·예술의 자유가 아닌 정보문화향유권



제2장 | 유형별 정보인권 현향과 이슈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	19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53
제3절 정보접근권	84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	118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프라이버시권(Privacy)은 그가 어느 나라에서 살든 신분의 귀천을 떠나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다. 프라이버시권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 보호 그 밖에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 및 사적 자치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가치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확대되고 이에 비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논쟁적인 정책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개인에 관한 정보가 유출 또는 오·남용됨으로써 개인이 겪게 되는 인격적 모욕, 경제적 피해, 차별적 취급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자치, 사회적 관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테러 이후 각국의 입법자들은 시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남아 있다.

개인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수집은 국가나 기업이 원하는 유형이나 부류로 사람들의 집단을 나누고 분류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감시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약화를 초래하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까지 움츠려 들게 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사회에서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공개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또는 Data Privacy)란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유통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이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 귀결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적 생활의 자유 즉 신체, 공간, 의사결정에 대한 간섭의 배제를 강조해온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보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의 내용은 크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권, 동의 철회권, 정정 및 삭제 요구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열람·확인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많은 나라의 입법례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익명성은 대체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아직 정보주체의 권리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정보 프라이버시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유통,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률적·정치적 이슈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국제 동향 및 기준

(1) 최근동향

최근 국제사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뚜렷이 대비되는 두 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즉 개인정보를 가급적 폭넓게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정부(특히 수사기관·법집행기관) 및 사업자들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능한 폭넓게 보호받으려 원하는 시민 및 소비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ICT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축적·이용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사적 자치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집행기관들은 효율적인 수사과 법집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확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의 자유와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1) 反테러리스트법, 데이터 보관법 등의 제정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이른바 反테러리스트법(anti-terrorist laws)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반테러리스트법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공권력의 간

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의 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적인 보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CCTV를 이용한 모니터링 행위의 증가도 프라이버시 위기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서방 선진국에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목적으로 한 CCTV의 설치·운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휴대전화 등 통신서비스의 이용기록을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입법도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법집행기관들의 요구에 못 이겨 2006년 3월 15일 전자통신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 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생성·처리된 정보의 보관의무를 규정한 「데이터 보관 지침」(Directive 2006/24/EC)²⁶⁾을 채택하였다. 지침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통신의 발신지 또는 목적지의 추적·확인, 통신의 일시·기간·형태의 확인, 통신단말기의 확인, 이동통신단말기의 위치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신정보의 보존을 의무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2009년에도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소 2년 동안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²⁷⁾ 2011년 7월에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수사 편의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모든 고객의 로그기록을 12개월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²⁸⁾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기업들도 이에 뒤질세라 고객관계관리(CRM), 맞춤형 온라인광고, 1대1 직접 마케팅, 고객 트렌드 분석 등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공격적 마케팅 기법을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사를 계속적으로 추적·분석해 구매 잠재력이 높은 소비자들을 겨냥해 광고를 대행해주는 온라인광고 전문회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심층 패킷 감청’ 기법을 이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웹 서핑 등 통신내용을 분석해 광고주에게 제공해 주는 폼사(Phorm)의 패킷감청기술이 2008년 초 현지에서 불법 감청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국 최대의 통신회사인 BT가 폼사의 패킷감청

26) “Directive 2006/24/EC on the retention of data generated or proces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mending Directive 2002/58/EC”

27) The Internet Stopping Adults Facilitating the Exploitation of Today’s Youth(SAFETY) Act of 2009 (H.R.1076 and S.436)

28) Protecting Children From Internet Pornographers Act of 2011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으며 영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왕립검찰청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²⁹⁾ 미국에서도 2008년 폼사와 유사한 기술인 네뷰애드의 패킷감청기술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사(Charter Communications, Inc)에 도입된 것이 알려지면서 의회 청문회까지 열리는 소동 끝에 패킷감청기술 도입이 철회된 바 있다.

그밖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위치정보기반 모바일서비스,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 IT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심각하다.

2) 잊혀질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한편, 이와는 반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빅데이터 등의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범유럽 정부간 협력기구인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 소속 27개 회원국 장관과 대표들은 「반테러리스트법」으로부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9일 「미디어 및 주요인터넷자원의 새로운 개념, 반테러리스트법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결의」³⁰⁾를 채택하였으며, 그에 앞서 2009년 3월 26일에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보안과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유럽의회 권고」³¹⁾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1월 25일 클라우드 컴퓨팅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환경에 대응하여 잊혀질 권리 도입, 프로파일링 제한, 열람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³²⁾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법집행기관이나 기업에 의해서 무분별화

29) 지난 2006년부터 폼사와 이 서비스를 시험 서비스해 온 BT(British Telecom) 그룹은 2009년 7월 끝내 인터넷 행태분석기반 타깃광고 서비스 도입을 중단했다.

30) Resolutions on the new notion of media, critical internet resources, and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with regard to anti-terrorist laws

31) 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recommendation to the council on strengthening security and fundamental freedoms on the Internet

32) European Commission(2012.1.25),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게 자행되고 있는 개인 감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행에 대한 법·제도적인 검증 및 보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문법 국가인 미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수의 연방 개별법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민간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백악관은 2012년 2월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³³⁾를 발표하였고, 뒤이어 3월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온라인 추적차단(do-not-track) 기능, 설계 프라이버시(Privacy by Design), 모바일 프라이버시, 플랫폼 프라이버시, 데이터 브로커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권고’³⁴⁾를 채택하였다. 두 개 모두 의회에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州)차원에서는 이미 일리노이스, 알래스카, 아칸사스, 캘리포니아, 버몬트, 와이오밍, 캔자스 등 다수의 주가 최근 민간부문 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전체의 개인정보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한편, 27개 EU 회원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캐나다는 매년 1월 28일을 ‘정보 프라이버시의 날(National Data Privacy Day)’로 선언하고 이 날을 국제적인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이 범국가적으로 참여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의 날’의 지정 목적은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을 목표로 하여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 프라이버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술 이용자인 10대 청소년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이끌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정보 프라이버시의 날 행사에는 전국적으로 프라이버시 전문가, 기업, 정부, 국회 이외에 학교, 교사, 학생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프라이버시 권리와 관행에 대해서 다양한 행사와 열띤 토론을 벌인다.

33)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34)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 Recommendations for Business and Policymakers.

(2) 국제기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려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관심과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1948년 UN총회에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은 국제규범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³⁵⁾ 1981년에는 유럽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및 국경을 넘는 유통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유럽개인정보보호협약」³⁶⁾을 체결하였으며, 유럽연합은 1995년 채택한 「유럽개인정보보호지침」³⁷⁾을 통해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EU회원국과 같은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해 발족된 다자간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980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국제적 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³⁸⁾(이하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하고 수집 시 특정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되는지 통지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정확한 적용을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독립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5) 세계인권 선언 제12조 :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나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유럽인권선언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36)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1981)

37)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1995)

38)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1980)

정보 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국제규범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2004년 채택한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³⁹⁾를 들 수 있다.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으로, OECD 프라이버시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 “피해예방의 원칙”, “통지의 원칙”, “선택의 원칙”을 추가하고 있다.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의 채택에는 한국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근로계약의 체결 시나 근로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노동자 및 작업장 감시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1997년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행규약(Code of Practice)」⁴⁰⁾을 채택하였다. 규약은 회원국을 구속하는 강제력은 없지만 노동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공정한 수집원칙, 목적 외 이용금지, 전자적 모니터링 제한 등 13개의 기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2012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ASEM인권세미나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회원국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인권 보호에 기초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규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책임성, 민간, 상업 분야에 국가의 인권 프레임워크 적용을 통한 이용자들의 인권 침해 방지, 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 규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방식 채택 등을 권고하였다. 둘째, 정보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자 도입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칙 이행,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통된 원칙(알권리, 동의할 권리, 자기정보접근권, 정보에 대한 진실성과 보안에 대한 권리 등)의 적용, 설계를 통한 사생활 보호 및 사생활 보호 강화 기술의 촉진 등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의식강화 및 국제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젊은 세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강화와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증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국제적 협력 증진을 권고하였다.

39) “APEC Privacy Framework”(2004)

40)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1997)

〈표 1〉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의 주요내용(1980)

원칙		내 용
제1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수집 •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2원칙	정확성 확보의 원칙	• 이용목적과의 관련성 요구 • 이용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확보
제3원칙	목적명시의 원칙	• 수집 이전 또는 당시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명시 •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제4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및 공개 금지
제5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침해, 누설,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조직적·기술적 안전조치 확보
제6원칙	공개성의 원칙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의 공개 • 개인정보관리자의 신원 및 연락처, 개인정보의 존재사실, 이용목적 등에 대한 접근 용이성 확보
제7원칙	개인참여의 원칙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청구권 보장 • 정보주체가 합리적 시간과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제8원칙	책임의 원칙	•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원칙 준수의무 및 책임 부과

〈표 2〉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주요내용(1985)

구 분	내 용
정보처리자의 의무	• 공정하고 적법한 개인정보의 처리 • 정보처리목적의 명시 • 정보처리목적과의 적절성과 관련성, 비례성 유지 •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 • 기술적, 조직적 보안조치 확보 • 감독기관에 정보처리에 대하여 고지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통지받을 권리 • 정보처리에 대하여 협의할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권리 • 특정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금지	• 적절한 보호수준을 갖추지 않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금지
독립기구의 설치	• 회원국 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

〈표 3〉 ILO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실행규약의 주요내용(1997)

원칙		내 용
제1원칙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처리는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합법적이고 공정해야 함
제2원칙	목적외 이용금지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제3원칙	본래의 용도와 부합	• 본래 수집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본래 용도와 상충되지 않게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야 함
제4원칙	통제목적 이용금지	•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한 기술적 조치 또는 조직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시 근로자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5원칙	자동처리결과와 과잉의존금지	• 근로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개인정보의 자동처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 것
제6원칙	근무성적 평가의 제한	• 전자 모니터링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됨
제7원칙	개인정보처리관행의 정기점검	• 고용주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의 축소 및 근로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의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
제8원칙	권리의 확인 및 지득	• 정보수집 절차 및 그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과 자신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가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9원칙	교육 및 역할 이해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보 수집 절차를 이해하고, 본 규약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제10원칙	차별취급금지	•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고용 또는 직무상의 불법적인 차별결과를 가져와서는 아니 됨
제11원칙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협력	• 고용주, 근로자, 근로자대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본 규약에 부합하는 근로자 프라이버시보호 방침 개발에 협력하여야 함
제12원칙	비밀준수의무	• 고용주, 근로자대표, 고용알선기관, 근로자 등 모든 당사자는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본 규약상의 의무와 원칙에 부합하는 비밀준수 원칙을 지킬 것을 확약하여야 함
제13원칙	권리포기 금지	• 근로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

〈표 4〉 APEC 프라이버시원칙의 주요내용(2004)

원칙		내 용
제1원칙	피해예방	• 개인의 합법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를 존중하고 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신상정보의 오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고, 신상 정보의 수집, 활용 및 이전에 따르는 피해의 개연성과 심각성에 비례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함
제2원칙	통지	• 신상정보 통제자는 신상정보에 관한 관행과 정책을 해당 개인에게 명료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함 • 신상정보를 수집하기 전이나 수집하는 동안 통지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직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뤄져야함
제3원칙	정보수집의 제한	• 개인의 신상정보 수집은 수집 목적에 국한 • 정보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함 • 가능한 한 해당개인에게 통지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제4원칙	신상정보의 활용	• 수집된 신상정보는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개인이 요구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우, 사법 기관이나 기타 법률서류, 및 법적 효력을 가진 선언이나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수집 목적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함
제5원칙	선택	• 가능한 한 개인에게 자기 신상정보의 수집, 활용, 및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명료하고 뚜렷하며 쉽게 이해되고 액세스할 수 있으며 부담이 되지 않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함
제6원칙	신상정보의 완벽성	• 개인 신상정보는 정확하고 완벽해야 하며, 활용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함
제7원칙	보안조치	• 신상정보 통제자는 보관 중인 정보를 분실, 비인가자의 접근, 비인가된 파괴, 활용, 조작, 또는 공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함
제8원칙	액세스 및 수정	• 개인들은 신상정보 통제자에게 자신의 신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확인하고, 자신들의 신원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신상 정보를 제공한 후 신상 정보 통제자와 지속적인 통신을 유지하며, 자기 신상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신상 정보를 교정, 보완, 수정 또는 삭제 요청할 수 있어야 함
제9원칙	책임	• 신상정보 통제자는 상기 원칙의 실행방안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 • 신상정보가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개인이나 조직으로 이전될 때는, 신상정보 통제자가 해당 개인들로부터 동의를 획득하거나 동 정보를 수령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수령한 정보를 본 원칙에 따라 보호하도록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정보프라이버시 법·제도 현황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시행

17대 국회에서부터 줄곧 논의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조에서 제정 목적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들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국제 규범과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 개인정보보호원칙은 선언적 규범이긴 하지만 정책담당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행동지침으로써의 역할을 하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이론적 기준을 제시해 준다.

〈표 5〉 OECD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OECD 8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제한의 원칙 (제1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정보 정확성의 원칙 (제2원칙)	•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제3항)
목적 명확화의 원칙 (제3원칙)	• 처리 목적의 명확화(제1항)
이용제한의 원칙 (제4원칙)	•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제2항)
안전성 확보의 원칙 (제5원칙)	•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제4항)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 (제6원칙)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공개(제5항)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제7원칙)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5항)
책임의 원칙 (제8원칙)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확보 노력(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업무 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로서 대통령 산하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지나치게 경제적 또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설립되었지만, 이로 인한 중복규제 및 이중감독이 문제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중복규제와 이중감독을 피하기 위해 단일법 주의를 채택하고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를 개인정보보호기구(DPA)로 통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법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이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소관부처의 관리·감독까지 중복규제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제 및 이중감독의 혼란을 피하고 규제기관 간 경쟁적 개입·간섭과 중복규제에 따른 인력 및 예산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들을 폐지·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유사 사안에 대하여 법률의 제정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과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차별화를 위한 차별에 불과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발전시켜온 유럽 국가들의 경험으로 볼 때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은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간 차별화가 필요 없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간에도 차별화가 필요 없으며, 의료·금융·통신 등 산업 간에도 차이가 존재해야 할 필요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따라서 개별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은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일반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불가

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존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⁴¹⁾

한편, 정부는 당초 각종 위원회 폐지 및 정부부처 통폐합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17대 국회 때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업자단체까지 합의한⁴²⁾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독립된 위원회가 설립된 이상 정부의 당초 주장은 근거를 상실했다고 본다. UN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1990)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운영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고(제8조), 1995년 EU지침 역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운영을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이에 따라 EU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들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행정을 전담해서 처리한다.

즉 EU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업무가 소관 분야에 따라 부처별로 나뉘어 있거나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기구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통일적인 법 집행원칙에 따라 개별법에 포함된 예외 규정들까지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관장한다.⁴³⁾ 따라서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 행정 및 법집행 체계를 통일해야 한다. 권한 및 업무의 분산·중복으로 인해 힘든 것은 기업과 국민이며 이로 인한 국가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또한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의 약 30%정도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온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 의결권만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조사권도 없어 사실상 독립기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성, 명확성, 일관성, 통일성, 전문성, 편의성, 저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EU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⁴⁾

41) 이창범(2012.5),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EU·일본을 중심으로—,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3권제2호, 한국인터넷진흥원

42) 국회 미래사회연구포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공청회 자료, 2006.11.21), pp.48-50. 통합안은 국회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사회연구포럼의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사업자단체·전문가그룹에서 16명이 참석하였고,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업저버로 참석하였다. 이창범, 앞의 논문 각주 10) 재인용.

43) 이창범, 앞의 논문

4. 주요 정보프라이버시 이슈

1)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이용 남용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산재예방, 매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CCTV를 포함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들이 광범위하게 설치·운영 중이다. 2012년 현재 국내에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최소 429만여 대로 추정되며, 전국 25만대 택시 중 10만대의 택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CCTV는 우리의 사생활 깊숙이 침투되어 있으며, 2007년 이래 보급 대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관찰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활동이 녹화됨으로써 사생활을 감시하게 되고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술진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 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⁴⁵⁾의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정보주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영상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처리·가공되는 지능화된 정보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6〉 국내 CCTV 카메라 설치 보급 대수 전망

(단위: 천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성장률
아날로그 CCTV 카메라	2,516	3,145	3,187	3,396	3,522	3,711	8.1%
네트워크 카메라	68	118	193	282	362	583	53.45%
합계	2,584	3,263	3,380	3,679	3,885	4,294	11.0%

출처: IDC Korea CCTV Market Study (2008)

44)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거는 마리 조르쥬, 『유럽의 독립적 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역사, 구조 및 기능』,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국제심포지엄, 200910.30),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45) 네트워크 카메라는 폐쇄망(Closed Circuit)이 아닌 개방망인 인터넷망을 통하여 영상 및 음향 등을 전송하는 영상장치이다. 일명 웹 카메라라고도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을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 목욕실, 공중화장실, 발한실(사우나), 탈의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큰 장소에서 그 내부를 직접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교도소·구치소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보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구금·보호시설 내 자해·자살, 방화, 폭력, 탈출 등을 예방하고 구금자와 관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정신보건시설에서의 환자의 치료·관리 및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카메라감시의 범죄예방 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명분으로 CCTV의 설치·운영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의 CCTV 종합관제센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CCTV 종합대책(2011.5)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종합관제 센터’의 구축을 지원하여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용 CCTV 10만여대를 통합·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군부대와 MOU를 체결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군사훈련 목적으로까지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CCTV가 통합·연계되면 수사기관, 군부대 등이 언제든지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CCTV가 범죄예방 등과 같은 범죄예방적 효과를 내세워 단지 수사편의를 위

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고, 2) 개인영상정보의 공유를 최소화 하고 공유·제공의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3) 개별 CCTV별로 운영결과를 매년 투명하게 지역주민과 언론에 공개하고, 4) 설치·운영 목표의 설정, 관리·운영 지침 제정·운영 등에 있어서 지역주민·인권단체·지역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이제라도 인권단체, 개인정보전문가, 인권위원회, 보호위원회, 관련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검토·협의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문·DNA 등 생체정보의 수집·이용 확대

지문, 얼굴, 홍채, 성문,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에 고유한 정보이고 수정·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식별성이 매우 높다. 본인 식별성이 높은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높다. 본인이 그 정보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거나 도용되면 평생 동안 회복하기 어렵고 고통에 시달려야 하고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생체정보에는 그 사람의 인종적 특성, 질병, 건강상태, 유전적 질환 등 다양한 생물학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그 문제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문, 홍채,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가 범죄수사, 실종아동찾기, 노숙자가족찾기, 신원확인(출입통제), 본인식별(신용카드), 친자확인, 생명공학연구, 의료연구 등 다양한 용도로 수집·이용되고 있고, 각종 용도로 인간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계획 중이거나 시도되고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과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살인·방화·성폭행·강도·마약·상습폭력·조직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⁴⁶⁾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디엔에이(DNA) 정보를 경찰

46) 방화·실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상습폭력, 조직폭력, 상습 강·절도, 성폭력, 마약,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균형법상 상관살인 등이다.

과 검찰이 수집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1회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디엔에이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들 법률은 DNA정보의 이용과 활용에 치우쳐 있어 DNA시료의 채취·취급 방법, DNA정보의 보호·보관 방법, DNA 시료 및 정보의 폐기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한 규정과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유전자정보의 수집·이용시 별도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 이외에 암호화의무 등 아무런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없다. DNA 시료 및 정보가 제3자의 손에 들어가거나 해킹·도난을 당할 우려가 없지 않은 현실이다. 앞으로 DNA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가 광범위하게 이용될 것에 대비하여 조속히 인간유전자정보(또는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입각해 인간유전자정보(또는 생체정보) 보호지침을 제정해 유전자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가 남용되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수집·관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DNA신원정보법은 당초 법의 제정 목적과는 달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행위인 노동쟁의와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이 법을 적용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시위 등의 참가자들의 인권을 가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년 5월 11일에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어 정당한 노동쟁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8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DNA정보가 민주시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개별법 상 DNA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행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일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의 차이도 문제이다. 실종아동법은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 목적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에, DNA신원정보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7조제4항),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제17조제3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일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대해 처벌 수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현저히 낮다. DNA정보를 다루는 공직자, 의료인, 일반인들의 부주의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3) 성범죄자,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전력자의 신상공개 및 이웃주민(지역사회)에 대한 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 메간법(Megan's Law 1994) 등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의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2002년 7월 19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상 보장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한 재판권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의심이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26일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다수의견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인격에 모욕을 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치형과 그 기능이 매우 유사하며,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차별, 멸시, 냉대의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판 연좌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로 범죄자보다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은 범죄자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성범죄 전력자가 가족과 직장 등에 노출되어 가족이 해체되거나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 민원 및 상담이 170여 건 이상 접수되었고,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가족이 이사를 다니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성범죄자를 둔 가정은 지역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성범죄전력자의 신상공개보다 더 심각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수반하는 것이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신상정보노출과 피의사실 공표이다. 이 때문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2005년 경찰청에 피의자 호송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여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 유괴살인, 부녀자 연쇄 강간살인 등 흉악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유사 모방범죄 예방,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보상 등을 이유로 언론과 수사기관이 앞 다퉈 피의자의 얼굴, 이름, 사진, 피의사실 등을 공개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7월 21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개정안이 2010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검사·사법경찰관)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수사단계에서 임의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수단이 잔인해야 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살인, 강도강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이어야 하며, 피의자의 자백이 있거나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지만, 잘못된 수사나 강요·자포자기에 의한 자백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른바 가문의 내력, 가정교육 잘못 등으로 취급하며 가족의 문제로 확대해서 보려는 전통이 강하며 부모형제간 연대책임 의식이 강하다.⁴⁷⁾ 이 때문에 범죄인 가족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하고 아직도 보이지 않는 연좌제의 풍습이 뿌리 깊다. 특히 언론들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행위보다는 피의자의 사생활과 주변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자세⁴⁸⁾를 보이고 있어 범죄자 본인보다는 주변 인물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고통 또한 크다. 이에

47) 잔혹 강력범 159명 성장사 추적 '충격'(수원지법 강력범 159명 성장사(成長史) 추적)
- 방치된 어린 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다(중앙일보, 2012.5.29자 기사)

48) 안양초등생 피살 - 누가 ‘악마’가 되는가(일요신문, 2008.3.28자 기사)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9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제정한바 있다.⁴⁹⁾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나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악행, 피해자의 심리적 만족, 국민의 알권리 등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친지들의 사생활 자유와 기본권 보호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유죄 증거가 충분한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까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피의자의 가족과 친척의 프라이버시권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강력범죄 피의자나 성범죄전력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그 가족, 친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률에 가족, 친지 등 주변인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언론들도 보도지침에 가족의 명예가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강력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불안 및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생활이 유지되도록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4) 통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무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tegrated Criminal System) 구축 사업이 2009년 8월 완료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이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로써 모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은 조서, 영장, 공소장, 판결문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안에는 경찰의 각종 조사 및 수사기록, 검찰의 기소·불기소 내용, 법원의 판결문 내용, 교정기관의 형집

49) 10가지 실천요강에는 △피해자와 가족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 △피해자 책임론을 강화하는 보도 금지 △가해자 중심적 용어 사용 자제 △범죄 수법과 수사 상황 상세 보도 금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원칙적 금지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적절한지 판단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 △사진·영상 사용 때 2차 피해 주의 △성범죄 인식 제고 사항 적극 보도 등을 담고 있다.

행 기록 등 모든 형사사법관련 정보가 전자화되어 기록·저장된다. 경찰청·검찰청·법무부·법원 등과 같은 주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뿐만 아니라 교도소·소년원 등의 교정기관,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 등의 정보기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관세청 등과 같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집·처리되는 모든 형태의 형사사법관련 정보가 이 시스템에 저장되고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법무부는 하나의 형사사법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경찰·검찰·법무부·법원 등이 수집·처리하는 모든 형사사법 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형사사법통합망 구축 사업은 처음부터 빅브라더의 출현과 정보인권 침해할 우려하는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야 했고, 사업 막판에는 검찰과 법무부의 정보 독점 강화, 사법권 독립침해 등을 우려하는 경찰과 법원의 반대로 시스템 ‘통합’에서 시스템 ‘연계’로 후퇴하였다.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사법정보의 오남용 사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개인의 모든 형사사법기록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관리되기 때문에 수사단계, 기소단계, 재판단계, 교정단계마다 사건 처리자들이 해당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건의 기록까지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선입견을 심어줌으로써 수사는 물론 기소·불기소 처분, 형량의 구형 및 선고, 보호관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단 한번의 해킹이나 불법 열람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기술적·관리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범위를 제한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무단계에서 벌어지는 오남용을 막기는 힘들다. 법원도 “법무부가 재판 과정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여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사법부 감시를 우려하였다.⁵⁰⁾ 따라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통합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우려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의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인 심스(CIMS,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포함해서 검찰·법무부·법원 등이 각기 구축·운영 중인 정보망을 하나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50)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0#>

들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해서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서, 영장, 공소장, 판결문, 교정기록 등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시스템에서 정하는 유통표준을 따라야 한다. 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를 동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별로 각자 시스템은 별도로 관리·운영하지만 정보는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의 공유 및 유통이 아니더라도 형사사법정보의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화만으로도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위험과 오남용은 피할 수 없다. 즉 기존에 전산화되어 있지 않던 많은 기록과 정보들이 전산화되면 그 만큼 사용 편의성이 증대되어 활용 빈도가 높아지겠지만 해킹 등에 의한 유출 위험이 커지고 오남용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이 구축·운영 중인 심스를 살펴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위험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심스는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관이 받은 신문조서는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서 받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의견서 등이 모두 들어 있으며 이와 같은 서식의 종류가 무려 301가지에 이른다.⁵¹⁾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든, 검찰로 송치한 뒤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든,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든 상관없이 경찰단계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저장한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도 누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심스는 또 앞서 말한 수사정보 말고도 주민정보와 전과정보까지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여, 경찰이 각종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저장되는 정보의 종류, 범위, 보존기간 등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저장된 정보에 대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열람 권한 및 범위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근거 마련을 위해 뒤늦게 2009년 5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법안」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두 개의 법안은 2009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51) 민주당 최규식 의원 국정감사 자료(2009.9)

법률 어디에도 저장될 형사사법정보의 종류·범위, 정보의 보존기간, 수집·저장이 금지되는 정보의 유형,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제한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이 이처럼 아무런 투명성 보장장치도 안전성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다익선이라는 생각보다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에 수집·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필수정보로 최소화 하고, 법률에 수집·저장되어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저장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접근권한과 보관기간을 차별화 하는 등 정보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5) 잦은 해킹사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최근 1회 1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정유회사인 GS칼텍스의 1,100만명 고객정보 유출사건, 같은 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의 1,800만명 고객정보 유출사건, 2010년 신세계백화점 등 소매유통회사들의 2,000만명 고객정보 유출사건 그리고 2011년에는 3,500만명에 이르는 SK닷컴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IT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수집·활용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결부되어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같은 고객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활용가치와 위험성은 외국 기업들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예금 부정인출, 대포통장 개설, 대포폰 가입, 전화사기(피싱), 신분도용 등 각종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개인정보들이 전세계에 팔려나가고 있어 그 유출로 인한 위험성이 글로벌한 규모라는 점이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극히 제한적으로 이탈주민들, 성전환자들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일반주민들의 식별번호로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장이라는 특정 목적의 번호인 SSN(Social Security Number)이 임의적으로 발급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누군가 SSN을 훔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같은 불법적 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사회보장국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3회, 평생동안 최대 10회까지 SSN의 교체가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최근까지도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법령의 미비로 주민등록번호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⁵²⁾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과 함께 성명변경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통해 간단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기술의 활용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무제한적인 생성과 중복체크가 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데 따른 어려움은 사라졌고,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시에는 변경 표시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최초 발급한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신분세탁의 위험도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임을 전원일치로 판단한 바 있으며⁵³⁾, 최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사업자들이 임의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집·이용이 허용되며, 오프라인을 통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방만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들을 일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고객이 익명 기반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실명기반의 거래관행에 대한 대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익명처리의 원칙을 개인정보보호원칙 중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제3조제7항).

52)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37633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53)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 확인 사건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한 이렇듯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단순히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일소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위험한 발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에 취약해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일신전속성·종신불변성 등의 특수성이 곧바로 특정 개인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여 그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향해야 할 전체적인 방향은, 이를 전자화해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에 대한 식별자를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신상털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라는 용어로 우리들에게 더 친숙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동료·친구·선후배 등 지인과의 인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인맥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인맥관리 서비스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또는 1인 커뮤니티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최근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 집에 따라 SNS의 이용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SNS로는 싸이월드,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페이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인터넷상에서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이면 모두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카페,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SNS는 인맥관리, 친목도모, 소통촉진 등 초기의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 광고, 홍보, 마케팅 등과 같은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남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자살을 유도할 만큼 무차별적인 악성 루머의 유포, 신상털기, 성희롱 및 성폭력, 그 밖의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정보들을 공급해 주는 개인정보 생산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을 홍보

하고 인맥을 쌓으려다가 신상노출로 ‘범죄의 덩어리’에 걸리고 만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SNS에서 사생활 보호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그 서비스의 특성이 노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SN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에 가입하고 일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예컨대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 맺기를 하고 싶다면 성(姓)과 이름, 비밀번호,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하고 회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SNS에 올린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나 휴대폰 이용자도 검색엔진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물론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공개로 설정해 놓은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의 공개범위를 조정하지 아니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구분해 놓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특히 이름, 프로필 사진 등 일부 정보는 필수 공개정보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 일단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고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이용자가 공개의 범위를 다시 설정해라’ 하는 식의 개인정보 공개 또는 공유 정책은 사실상 OPT-OUT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 공개정책은 OPT-OUT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또는 일본과는 달리 OPT-IN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법⁵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헌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54)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③ 생략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⁵⁵⁾ 이용자 자신이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항목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와 서비스 발전을 조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공유 이외에, 불특정 다수 및 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공유 원칙을 명확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

7) 인터넷 패킷감청(DPI) 등 통신감청의 급증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청협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수사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통신사실확인자료 포함)은 83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감청 1,081건⁵⁶⁾,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238,869건⁵⁷⁾, 통

55)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략

56)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감청대상은 통화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이다. 일반감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감청 협조를 제공하고, 긴급감청은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을 협조하되 36시간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7)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제공 대상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가 이에 해당된다.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신자료 제공 591,049건⁵⁸⁾ 등이다. 이는 2006년에 비하여 5년만에 170%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감청의 경우 5년간(2006~2010) 국가정보원에 의한 감청은 5,099건으로 전체 감청건수의 86.0%를 차지하고 있어 국정원이 일반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국가안보·군사기밀 등과 관련한 특수 사건만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통신감청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및 통신자료 등 제공현황

구분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합계
2006	1,033	150,743	323,566	475,342
2007	1,149	183,659	426,408	611,216
2008	1,152	212,745	474,568	688,465
2009	1,516	248,552	561,467	811,535
2010	1,081	238,869	591,049	830,999
합계	5,931	1,034,568	2,377,058	3,417,557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07~2011년 보도자료

〈표 8〉 수사기관별 감청협조 제공 자료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2006	35	99	870	29	1,033
2007	24	81	1,010	34	1,149
2008	18	75	1,043	16	1,152
2009	9	145	1,320	42	1,516
2010	2	186	856	37	1,081
합계	88	586	5,099	158	5,931
비율	1.5	9.9	86.0	2.7	100.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07~2011년 보도자료

58)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하는 제도로써,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공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되, 제공 후 법원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인터넷 및 전자우편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감청의 형태도 유선전화 감청에서 인터넷 및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과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9년 9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국정원의 인터넷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은 인터넷회선을 오가는 패킷을 필터링해 패킷 내용을 감청하는 방법으로 인터넷회선 장비에 감청설비를 연결해 감청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내역과 내용을 복원하는 것이다.⁵⁹⁾ 2008년 이후 2011년 8월까지 판매 인가된 감청 장비는 57대로, 그 중 46대가 패킷 감청 장비였으며,⁶⁰⁾ 2009년 현재 국정원은 31대의 패킷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¹⁾

DPI를 이용하면 전자우편, 메신저, 웹 서핑, 게시판, P2P 등 모든 인터넷의 이용 내역과 그 파일의 내용까지 정보·수사기관이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가리지 않으며, 정보가 지나가는 국내 인터넷 회선의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해외 포털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해도 전자우편 감청을 피할 수 없다. 패킷감청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우편, 인터넷서핑, 전자상거래, P2P 등 개인의 인터넷 활동 모두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통신까지 모두 감청의 대상이 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유추하고 제멋대로 구성할 수 있는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하나의 컴퓨터를 함께 쓰는 가족이나 동료의 인터넷 이용 활동은 물론 하나의 인터넷 교환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의 컴퓨터 사용 내역까지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용역보고서⁶²⁾도 패킷 감청은 국민의 사생활이 통째로 실시간 감시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포괄 영장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1년 3월 29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가 헌법재

59) “국정원,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 31대 보유”, 한겨레(2009.11.17자 기사), “시민단체, ‘국정원 패킷감청’ 헌법소원심판 청구”, 통일뉴스(2011.3.29자 기사)

60)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감청설비 인가 현황자료 분석 발표(2009년 국정감사 자료, 민주당 김재윤 의원)

61) 국정원 인터넷 감청장비 31대 보유(mbn, 2009.11.17 방송)

62) 국회사무처(2009.12.31),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 관련 의견’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판소에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감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는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동시에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⁶³⁾, 제5조제2항⁶⁴⁾, 제6조⁶⁵⁾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⁶⁶⁾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보인권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실질적 운용은 합법화된 도청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통신감청의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넓고, 이른바 긴급감청제도를 도입해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도 감청할 수 있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최후의 보충수단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감청이 최근 5년간 6,000여건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법원이 감청을 허가할 때 감청의 필요성과 감청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확인절차 없이 감청을 허가해 줌으로써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감청기간을 13회에 걸쳐 연장해 총 28개월 동안 감청을 허용한 사례⁶⁷⁾가 있을 정도로 감청 허가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통신감청 특히 인터넷 패킷감청의 무분별한 허가를 막고 패킷감청의 범위,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제어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포괄적 압수·수색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 수집은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요구되어지고 있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서 수사절차상 정보

63)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64)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65)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66) 2011헌마165 통신제한조치 허가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심사청구 사건

67) 범민련 사건의 경우 최초 영장발급번호 2004-8287-1에서 최종 발급번호 2004-8287-14로 총 13회가 연장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109헌가30 결정.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사당국의 노력과 법률적 대책은 미흡하여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정보인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압수수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일을 열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 수 없는 디지털 증거의 불가시성과 불가독성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사 편의상 저장매체가 통째로 압수되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009년 4월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간부 등 100여명의 전자우편을 일부 7년 치까지 확보해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수사기관이 PD 수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작가가 사적으로 주고받은 전자우편의 내용까지 공개하여 전자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실 공간에서의 증거는 유체물이나 사람의 진술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및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대형 서버시스템에 수많은 다른 정보와 함께 저장되어 있는데다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디지털증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헌법상 강제처분 법정주의 및 영장주의 요청에 합치되도록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⁶⁸⁾

한편, 컴퓨터검색수사(온라인 수색)⁶⁹⁾은 압수·수색의 전단계의 수사이지만 특별히 은밀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명령과 강제에 의해 수행되는 강제처분과는 다르며, 침해강도와 중요성이 압수·수색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별한 법률적 수권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⁷⁰⁾도 있지만 시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국가의 침해형태가 공개적인가 은밀한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동의 없는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색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68) 강동욱(201.12.), ‘디지털증거 수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69) 온라인 수색(컴퓨터검색수사)이란 국가기관이 인터넷접속을 통해서 사용자 모르게 사용자의 IT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0) 이원상, ‘온라인 수색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새로운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8년 겨울

수 있으며, 특별한 수권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단순한 범죄 혐의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게 컴퓨터검색수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디지털증거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한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즉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빅브라더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압수된 디지털 매체 중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환부되거나 가환부하도록 이미 형사소송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신속히 환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 환부 제도는 영업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점에서도 필요하지만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복제되어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환부도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불필요한 정보의 폐기의무 또한 반드시 법률로서 명시하여 피압수자의 정보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⁷¹⁾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서버에 저장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작성기간 등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며, 전자우편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집행절차 참여,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 환부권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할 때는 기존의 필요한 때에 더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기통신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청구서에 그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 현장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받도록 하여 정보인권 침해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또 통지의무를 명시해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으며, 전기통신을 압수했을 때에도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분에 대한 정보추출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 달성이 현저히

71)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246호, 2009.6.23) 등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 또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결정⁷²⁾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시하였다. 또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되므로, 이때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 복사 대상 또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선명한 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9) 빅데이터의 활용과 잊혀질 권리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사람이 정보의 소비자면서 동시에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대량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기가 추가되고 TV 매체가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되면서 정보 내지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⁷³⁾ 이러한 데

72) 대법원 2011.5.26.자 2009모1190 결정

73) 이만재(2011.11),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활용”,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2권 제2호

〈표 9〉 1986년 이후 정보 증가

(단위: EB = 10¹⁸바이트)

구분	1986	1993	2000	2007
인터넷데이터	2.64	15.7	54.5	295
통신데이터	0.28	0.47	2.24	65.3
방송데이터	432	71.5	1,150	1,890
방송 데이터의 디지털 비율	0%	0%	7.2%	24.8%

출처: Hilbert & Lopez(2011) The world's technological capacity to store, communicate, and compute information. Science, 332(6025)

이터의 증가는 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어 개별적인 데이터의 보관 대신 클라우드 컴퓨팅⁷⁴⁾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⁷⁵⁾ 전 세계적으로 최근 주목할 만한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을 발표하고 범정부적 데이터 연계·분석체계를 구축하며, 기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확대하여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연계·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기업이나 기관이 소비자의 수요를 적시에 발견할 수 있어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부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포기라는 커다란 희생이 따른다. 즉 빅데이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가공·결합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간 통합·연동을 허용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의 “최소처리원칙”이라는 전통적인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이용 촉진 정책에 있어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라 사회·경제적 이익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화가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제현상이나 질병을 예측한다거나 소비자 또는 국민의 선호도를 분석한다거나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과 같이 데이터를 통계분석, 연구개발, 서비스개선, 신상품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위험이 거의 없고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단지 맞춤형 서비스나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별 정보주체들의 행동패턴, 소비성향, 취미·취향, 관심사, 재산정보, 사상·신조 등을 분석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민의 사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간 통합·연동의 요건·기준 및 절차, 추적차단기능

74)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모든 정보가 구름과도 같은 인터넷에 흡수되어 하드웨어의 본체 장비 없이 인터넷 서비스만으로도 기존 컴퓨팅 작업을 통해 이용했던 문서작업, 이메일 서비스, 서버관리 등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75) 빅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용량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세트라 한다.(Manyika, 2011,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Do-Not-Track)⁷⁶⁾ 제공 의무화, Privacy by Default 및 Privacy by Design 원칙⁷⁷⁾의 채택, 개인정보 영향평가⁷⁸⁾의 의무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⁷⁹⁾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Meinungsäusserungsfreiheit)는 개인의 내심의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자유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추구되는 사회적 가치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킨다는 개인적인 자기실현의 가치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활동에 의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가한다는 자기통치의 민주적 가치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인권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디어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정부는 새로운 미디어 출현에 대하여 부정적 이었고, 규제를 통하여 여론의 형성을 통제하였다. 그렇지만 현대 법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을 통하여 보장되고, 국가권력이 헌법의 규범력에 기속되면서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합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의 시대에도 동일하다.

76) 통신단말기의 추적을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이용자가 임의로 차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77)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공개되도록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7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공공부문에 대해만 영향평가제가 도입되어 있다.

79) EU법상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청권,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청 통지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청권은 도입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요청 통지의무 등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정부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고 헌법의 규범력이 점차 실질적으로 구축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도 확대되었다. 더구나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인터넷은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종래의 미디어를 뛰어 넘어 국민여론과 현실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동안 선거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포털사이트 토론광장의 영향력은 그 내용의 찬반여부를 떠나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였다.

그런데 인터넷이 댓글문화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킨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⁸⁰⁾ 다른 한편에서는 타인의 인격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명예훼손, 모욕, 프라이버시침해 등)를 양산하면서 부정적인 면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는 인터넷에서 정보유통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러한 관여는 자칫 잘못하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갖는 진정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후견적 간섭주의가 남아있다고 평가된다.

2. 국제 동향 및 기준

표현의 자유는 역사상 모든 인권선언과 헌장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는 인권이다. 1789년의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1791년 미국 연방헌법의 권리장전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 명문화하였다.⁸¹⁾ 표현의 자유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국제인권규범에서 중요한 인권으로 선언되었다. 1948년 「세계

80) 댓글이란 인터넷공간에서 어떤 기사거리나 게시물에 대하여 그 글을 읽은 인터넷 이용자(네티즌)가 간단한 의견을 짧게 달아 놓는 것을 말하는데, 이슈가 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는 특별히 댓글이 달리지 않지만, 이슈가 되는 글에 대하여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이 보통이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81)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정헌법이라 불리는 1791년 미국의 연방권리장전은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였다.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제19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선언하였고,⁸²⁾ 1966년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도 제19조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⁸³⁾ 또한 1950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채택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⁸⁴⁾ 제10조도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⁸⁵⁾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보장을 받는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는 2003년 5월 28일 위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근거해서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⁸⁶⁾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7개 원칙을 선언하였다.

82) 동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형성할 자유 및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고, 그리고 나누어가질 자유가 포함된다.”

8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a) 타인의 권리나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84) 정식명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이다.

85)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경을 불문하고 공권력에 의한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및 정보와 사상을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본 조는 회원국이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의 허가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② 이들 자유는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 행사는 국가안전보장, 지역통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무질서나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비밀스럽게 받은 정보의 공개를 막기 위하여,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절차, 조건, 제한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86) <https://wcd.coe.int/ViewDoc.jsp?id=37031>

〈표 10〉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한 7원칙 (유럽평의회)

제1원칙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 : 회원국들은 인터넷에서의 정보내용(content)에 대하여 다른 정보전달수단에 적용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원칙 (자율규제 혹은 상호적 규제) : 회원국들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내용에 관하여 자율규제(self-regulation) 혹은 상호적 규제(co-regulation)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3원칙 (사전국가통제의 부재) : 공권력은, 포괄적인 차단조치나 여과조치를 통하여, 일반대중이 국경을 불문하고 인터넷에서의 정보 및 기타의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이 원칙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학교나 도서관과 같이 그들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의 안전조건이 존중된다는 전제 위에서, 만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인터넷 정보내용의 불법성(illegality)에 대하여 잠정적이거나 종국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명백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내용을 삭제하거나 또는 그 대안으로 그것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원칙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참여를 억제하는 장애의 제거) : 회원국들은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으로 차별 없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일반대중이 예컨대 개인 웹사이트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허가제도 허용되지 않으며 또는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요건을 설정해서도 아니 된다.

제5원칙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자유)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된 전송수단을 유일한 이유로 하는 특별인가제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회원국들은 이용자 및 사회집단들의 여러 요구(needs)에 부응하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들은 국가적 및 국제적 통신네트워크에의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하는 규제체계 속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6원칙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회원국들은 서비스제공자들에게 그들이 액세스를 제공하거나 전송 또는 저장하는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서는 아니 되며 또는 불법적인 행위(illegal activity)를 가리키는 사실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의무를 부과해서도 아니 된다.

회원국들은 서비스제공자들이 국내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터넷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데에 그들의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 때에는 인터넷에서의 정보내용(content)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들의 기능이 그보다 더 넓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당사자에게서 나온 정보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 만일 서비스제공자들이 문제의 정보나 서비스가 국내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으로부터, 또는 손배배상청구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행위나 정보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한 시점으로부터, 신속하게 그 정보나 서비스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들은 그들에게 공동 책임을 지을 수 있다.

위의 항이 규정하는 바의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국내법에서 구체화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정보를 유통시킨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나아가 이용자들이

그 정보에 응답하는 권리(the corresponding right of users to the information)를 존중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모든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책임의 제한은, 범위반상태를 가능한 한 종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강제명령(injunctions)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원칙 (익명성) : 온라인감시(online surveillance)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신원(identity)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회원국들이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국내법과 유럽인권협약 그리고 기타 사법(司法)과 경찰 분야의 국제협정에 따라, 추적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협력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표 11〉 표현의 자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의사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일본 헌법 제3장 제21조	(제1항)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제2항)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검열을 해서는 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0조, 제11조	(제10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누구든지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금지된다. (제2항) 이 권리들은 일반법률의 조항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EU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고안	타인의 권리와 자유, 민주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정보주체의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제규범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똑같이 중요한 인권으로서 보장받고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인권은 아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범죄의 방지, 그리고 타인의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

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인터넷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시장론이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시장의 자율규제처럼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사회의 자율조절 기능에 맡겨야 한다. 이는 유럽평의회가 2003년 선언에서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익명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쟁점사건

(1) 제도적 논쟁

1) 인터넷에서 불법정보심의제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심의하여 사후적으로 걸러내는 규제적 수단을 사용해 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1983년에 제정되었던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부 개정한 1991년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제53조에서 소위 ‘불온통신단속제도’를 두었다. 동조에 의하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은 불온통신으로 금지되고,⁸⁷⁾ 주무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불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규정은 직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 불온통신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조악한 규정이었다.

이 불온통신단속제도는 1995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심의라는 포괄적인 집행체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불온통신심의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주무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 제도를 내용으로 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에서 불온통신을 상시로 추적해서 걸러내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심의제도를 추가하였다. 이 제도는 인터넷 이전의 이른바 “PC통신”에서 불건전한 정보를 걸러냄으로써 건전한 온라인문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후 PC통신을 넘어 인터넷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포괄적이고 과

87) 불온통신의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제2항), 대통령령은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불온통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도하게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불온통신심의제도는 2002년 6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 되었다.⁸⁸⁾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하면서, 불온통신의 개념, 즉 법 제53조 제1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 개념이 불명확하고 애매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러한 불온통신의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개념의 모호성·추상성·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기성질서에 단순히 유해하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금지시킨다면,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은 차단되어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가능성은 봉쇄될 우려가 있다. 특히 기성의 질서와 내재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창조성·혁신성·고도의 주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표현은 심각하게 규제될 수 있다.

불온통신심의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2002년 12월 26일의 개정법률(제6822호)은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의견진술기회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불온통신심의제도가 규제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불법통신심의제도”로 그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내용만 바뀐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2007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로 옮겨 오면서 소위 ‘불법정보심의제도’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8년 2

88) 현재 2002. 6. 27. 99헌마480(불온통신 금지 사건). 이 사건의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9. 6. 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월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기존의 거부·정지·제한명령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하고 심의기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현행법상 불법정보심의제도에서 불법정보는 음란물,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불법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으로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다. 그런데 이 규제체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규제되는 표현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정보내용의 ‘불법성’ 판단이 법원의 사법절차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행정기관의 성격을 지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심의하여 불법성 판단을 한 다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해당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시킨다는 점에 있다.

물론 건전한 사이버문화의 달성과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수행하였던 정보통신윤리교육, e-Clean Korea 캠페인, 음란스팸차단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Internet 119)의 운영, 청소년권장사이트 지정,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의 운영 등은 타당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지만 행정청(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사이버공간에서 일방적인 규제기관이자 검열관으로 기능한다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사이버공간의 자율적 정화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2002년의 불온통신 금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불법성 판단에 의한 강제적인 삭제·이용정지·이용해지의 불법정보심의제도는 적법절차원칙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그런데 헌법이 보호하지 않는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시켜야 할 긴급한 상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차단하는 이유가 이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며,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를 다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 12〉 표현규제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칙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화에 대한 검열 자체가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검열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그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절차적 보장의 내용으로서, ① 당해 필름이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검열관에게 주어지고, ② 사전제출을 명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허가여부가 법령에 정해진 신속한 기간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③ 검열위원회는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금지를 구하는 제소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검열위원회가 상영을 직접적이고 최종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서는 아니되며, ④ 그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Freedman v. Maryland, 380 U.S. 51 (1965)).

이 판결 이후 Maryland 주는, 영화필름제출 후 5일 이내에 검열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상영불허가결정을 할 경우 3일 이내에 검열위원회가 상영금지를 구하는 injunction을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법부의 결정이 나고, 불허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검열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법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다시 심리한 결과 4 : 4(Douglas 대법관 불참)로 팽팽히 의견이 갈렸고 결과적으로 합헌으로 종결된 셈이 되었다(Grove Press, Inc. v. Maryland State Board of Censors, 401 U.S. 480 (1971)).

현행의 불법정보심의제도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요청이다. 여기서 ‘절차의 공정성’은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제한을 받은 자에게는 실효적인 항변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공정성이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에 헌법상 요구되는 ‘절차의 공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현행의 심의제도가 이러한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떤 문제된 정보가 유통이 금지되는 9가지 유형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표현이 음란에 해당하는지, 또는 국가보안법상의 금지되는 찬양고무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도양단으로 쉽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음란이나 찬양고무의 판단기준은 판례에서도 애매하고 불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청에게 일방적인 판단

권한을 주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그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1항 제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포섭범위가 매우 넓어 보호되는 표현에 대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에 있는 이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규제적인 공적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내부에 조사권과 심판권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셋째, 법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원칙적으로 주고 있으나, 이런 의견 제출의 기회만으로는 “실효적인 항변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견 제출의 기회만 주고 있을 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공방을 직접적으로 펼칠 수 있는 청문(hearing)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

2)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고 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명예보호를 이유로 진실을 적시하여 비판할 자유가 부당하게 억압되어서도 안 된다. 여기서 진실을 표현할 자유와 명예보호 간에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성립된다. 다만 형법 제310조가 그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실을 말할 자유가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 동안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명예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대법원은 형·민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②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③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다.⁸⁹⁾ 이 이후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진실 혹은 진실증명의 상당성’을 위법성조각요건으로 제시하면서 민·형사명예훼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표현행위자에게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⁹⁰⁾

그런데 이 같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대법원의 해석은 외적 명예의 보호에 치우쳐 진실을 말할 자유의 이익을 경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적 명예”를 의미하며, 사회적 평가란 실제와는 다르게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의 규정은 표현행위의 시점에 주어졌던 사회적 평가가 설령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보호하고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어서, 그 만큼 진실을 말할 자유는 제약을 받게 된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법적 보호는 그가 받아야 할 만큼의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만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실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재조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만약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실을 말할 자유는 상당히 위축되는 반면 왜곡된 사회적 평가만 보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호가치와 사회적 평가의 재조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간에 비교형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진실의 공표로 인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그러한 공익은 사회적 평가의 저하 내지 정당한 재조정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상쇄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인 경우에는 비교형량을 통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할 수 있다.⁹¹⁾ 특

89) 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90)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1993. 6. 22. 92도3160; 1996. 5. 28. 94다33828 등 참조),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91) 다만, 여기서 진실을 말할 자유가 타인의 인격보호보다 언제나 앞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타인의 고유한 사적 영역에 관한 사실이나 공표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비밀과 같이 그 속성상 타인의 평가 자체로부터 절연되어야 할 사적인 사실을

히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자유가 쉽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 현실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형사명예훼손 사건이 폭주하고 있으며 형사고소가 남발되고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규정은 인터넷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001년 1월 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신설하였다.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표현은 그 전파력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인터넷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과는 달리 명예훼손의 피해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진실공방을 상호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이버모욕죄 도입논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이어 최근 몇 년 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 ‘사이버모욕죄’의 도입문제이다. 이 문제는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악플)로 인하여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현행 형법 제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다.

그런데 현실공간과 달리 인터넷 공간은 전파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악성댓글이 뜨면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2008년 정부와 여당은 날로 심각해지는 악성댓글에 대처하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마련했었다.⁹²⁾ 그러나 사이버모욕

폭로함으로써 인간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요구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허용될 수는 없다. 이때에는 프라이버시의 이익과 진실을 통해 얻어질 공공의 이익을 개별적으로衡量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92) 장운석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2008. 10. 30. 의안번호 제1637호)과 나경원 의원이

죄는 상습적인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사이버공간의 공익성 제고 등을 이유로 찬성론에도 불구하고,⁹³⁾ 사이버범죄의 경미한 가벌성과 수사기관의 무차별한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 비범죄화를 추구하는 형사정책에 역행하거나 소수자만 보호하게 되는 이유 등으로 한 반대론도 강하게 제시되었다.⁹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론이 뜨거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2월 5일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친고죄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⁹⁵⁾ 아무튼 향후 사이버모욕죄의 도입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제도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역기능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2001년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였다. 몇 차례의 부분적 개정을 거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2에 정보의 삭제요청 및 제44조의3에 임의의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당해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시자에게 통지하며 나아가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법률안(2008. 11. 3. 의안번호 1683호)이 제출되었으나,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

93) 정완,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8, 82면 이하.

94) 양동철, “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법조 제55권 제9호 (법조협회, 2006. 9), 158면 이하.

95)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2009. 2. 5. 결정.

나아가 동 법 제4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4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삭제조치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동 법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터넷에서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는 악성댓글 등을 신속하게 차단시킨다는 정당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자칫 정치인 등의 공인이나 기업의 업무행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정당한 표현이나 평가마저도 그 비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삭제시킴으로써 정당한 비판이나 평가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인격권의 침해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익형량을 통하여 엄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원치 않는 권리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차단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정보유통의 매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격권침해판단의 부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감면이나 면제를 위하여 권리자의 요청에 쉽게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악성댓글의 신속한 차단이라는 정당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정당한 비판이 비판대상자의 임의에 따라 너무 쉽게 차단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5)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게시판의 본인확인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초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시험적으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국민은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한 후에야 게시판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실명확인에는 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03년 4월 초 청와대는 게시판에 욕설과 비방 글을 3회 올린 실명 네티즌에 대해 1주일간 로그인을 막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운영원칙을 공지하였다. 또 익명으로 운영되는 자유게시판에는 하루 한 IP주소 당 10회로 글쓰기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게시판정책에 대하여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자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본인확인제 도입은 역효과는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인확인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네티즌에게 자기검열을 요구해 건전한 토론문화를 유도하기는커녕 토론문화 자체를 없애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성하는 입장은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촉발된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에 관한 논쟁은 이후 법률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면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법률에 의해 제도화된 것은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행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선거게시판 본인확인제’이다. 그 후 2007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도입된 소위 ‘일반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있으며, 2009년 6월에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입된 이른바 ‘도메인이름 실명제’도 있다.

우선 ‘선거게시판 본인확인제’는 2004년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하면 인터넷이용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⁹⁶⁾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받아야만 게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에게는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96) “인터넷언론사”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

조치의무와 실명인증이 없는 게시정보의 삭제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요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이용자는 실명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만 되면 별명이나 가상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이나 정보를 게시하고자 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표현행위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물론 그 표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관리자인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실명인증이 되지 않은 정보는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의 본인확인제는 이용자가 밝힌 신원을 정부가 관리하면서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는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지지·반대의 게시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는데,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수많은 게시정보들 중에 가려내어야 하는 커다란 부담으로 인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게시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인터넷이용자들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으면 지지·반대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보도 게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제 하에서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2월 국회에서 제도도입의 논의 때,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⁹⁷⁾ 그런데 2010년 2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⁹⁸⁾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였다.

한편, 2007년의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일반게시판 본인확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제도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⁹⁹⁾과 대형 정보통신서비스제공

97) 국가인권위원회(제1소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2004. 2. 16. 결정.

98)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99) 여기서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자¹⁰⁰⁾가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의무가 있으며, 대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과태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직접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게시판을 이용하는 국민은 정책이나 구성원의 행태를 비판하려면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후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비판을 자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년 11월에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자를 대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자)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¹⁰¹⁾

그런데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¹⁰²⁾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명예훼손 분쟁처리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¹⁰³⁾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 지방공단”을 가리킨다(법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100) 여기서 “대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가리킨다(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101)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9. 11. 19. 결정.

102)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댓글을 올리려 했으나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한 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었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103) 2012. 8. 23일자 보도자료(헌법재판소 위원 판결에 대한 방통위 입장).

미 합헌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도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¹⁰⁴⁾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를 말한다.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익명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자 보호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¹⁰⁵⁾

(2) 쟁점사건

1) 미네르바 허위통신죄 사건

이 사건은 인터넷논객 박대성(필명 미네르바)씨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외화 예산 환전 업무 전면 중단’(2008. 7. 30.)과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2008. 12. 29.)의 2건의 허위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2009년 1월 7일 박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허위통신죄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허위표현이 보장될 수 있는지, 보장된다면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미네르바에 대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의 경제토론방을

104) 2012. 8. 24일자 보도자료(중앙선관위, 선거관련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추진). 현재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대형 포털사이트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제23조의3, 제23조의4에 대한 개선 권고를 요청한 정책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민원 12-0008226).

105) 이미 2003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통하여 회원국들이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7개 원칙 중 제7원칙으로 익명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용하여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수만 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가 허위표현 유포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익보호를 위하여 특정상황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위표현 유포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허위의 통신이라는 용어는 모호하여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 허위표시의 금지라는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법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¹⁰⁶⁾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¹⁰⁷⁾

그런데 1심 법원의 무죄판결은 인터넷 토론방의 표현행위가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을 뿐, 대상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니었다. 오히려 1심 법원은 법률조항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피고인이 1심 재판 중에 대상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¹⁰⁸⁾

허위통신죄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단지 동 조항의 내용 중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표

106)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제출(2009. 6. 8 결정)

107) 서울지방법원 2009. 4. 20. 선고 2009고단304 판결.

108)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현이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뿐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터넷상의 모든 허위표현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처벌이나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나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허위표현이나 공정한 선거방해 등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는 악의의 허위표현까지 헌법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이 결정의 의미는 허위의 통신이나 허위사실의 표현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헌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2) 인터넷포털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사건

이 사건은 인터넷포털이 뉴스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에 의하여 발생한 명예훼손과 댓글 등의 게시공간에 실린 이용자의 게시물에 의하여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대법원이 인터넷포털의 불법행위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례이다.¹⁰⁹⁾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자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가 2005. 5. 5.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운영의 싸이월드 내에 있는 망인의 미니홈피에 「원고(남자 △△△)가 망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망인이 첫 유산 이후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하면서 폭언을 하였으며,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망인의 합의 간청을 매정하게 거절하여 망인이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망인의 미니홈피에 접속자수가 폭주하고, 그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또한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응징하자는 취지의 카페가 개설되고, 서명 운동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2005. 5. 8.부터 피고들(NHN, 다음커뮤니케이션)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의 뉴스서비스란에서 위와 같이 네티즌

109)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인터넷포털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사건).

들이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현상을 전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에는 망인의 실명을 밝히거나 망인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포함한 것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도 있었다. 또한 기사들에 달린 수많은 댓글 등을 통하여 원고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편집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에 개설된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서비스 영역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물이 게시된 것을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이 위와 같은 표현물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포털사이트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터넷포털이 뉴스서비스를 통해 다른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된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12명의 대법관은 인터넷포털이 제공하는 게시공간(댓글 창, 블로그나 카페 등의 커뮤니티)에 게시된 이용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하여 포털이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시킬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렸는데, 다수의견은 ①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 ②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요구가 있거나 또는 요구가 없더라도 인터넷포털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것, ③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①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을 것, ③ 삭제요구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질 것, ④ 기술적·경제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3) 성형시술의 부정적 평가 댓글 사건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

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¹¹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다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2007년 5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이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즉,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 다른 요건인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라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문화방송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 사건

2008년 4월 17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4월 29일 문화방송(MBC)의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발생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은 2008년 2월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면서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판단하게 하는 가늠자가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방송 PD수첩 광우병 위험성 보도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가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11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제1부) (성형시술 부정적 평가 댓글 사건).

사건'이다. 여기서는 전자에 대해 살피고, 후자는 바로 이어 살피기로 한다.

MBC는 2008년 4월 29일 'PD수첩'에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내었고, 이 방송이 계기가 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 등이 촉발되었다.

방송 직후 쇠고기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위 방송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5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5월 15일 이 조정신청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에 대해 문화방송은 5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7월 31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¹¹¹⁾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09년 6월 17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¹¹²⁾ 그러나 대법원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¹¹³⁾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부분¹¹⁴⁾은 단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들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¹¹⁵⁾

한편, 우리나라 협상단의 대표를 맡았던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과 그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6월 20일 PD수첩의 책임프로듀서, 방송진행자, 취재·편집에 참여하고 직접 출연하여 설명을 한 2인의 프로듀서, 그리고 방송작가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검찰은 7월 2일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테이프 870분 분량 등 자료제출을 MBC측에 요청하였으나, MBC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9년 4월에 MBC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하였으나 모두

111)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112)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80595 판결.

113)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 부분.

114)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보도 부분.

115)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무산되자, 위 피의자들을 체포하였고 6월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과 방송사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던 위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1월 20일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¹¹⁶⁾ 검찰은 방송프로그램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위 5가지 부분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각 보도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시청자에게 비추어지는 전체적인 인상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그 의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각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¹¹⁷⁾

1심 법원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약간의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 법원은 ① 다운너 소 관련 보도 부분 ②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③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부분 등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보도내용이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고 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사적 영역의 사안의 경우보다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법원과 같은 무죄의 결론을 내렸다.¹¹⁸⁾

이후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¹¹⁹⁾ 대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이를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 즉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

1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

117)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1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119)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국세청 내부직원 온라인 게시판 비판 글에 대한 파면결정 사건

2009년 5월 28일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인 ○○○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나는 지난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새로운 정부의 지시에 의해 전 정부의 후원자였던 태광실업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 대해 국세청 게시물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6월 4일 이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바로 삭제하였으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을 조사한 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6월 12일 광주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는 ○○○이 전직 청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국세 활동을 폄훼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의 품위유지조항 위반 등을 근거로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9월 16일 ○○○의 글이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서는 무혐의의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했고, 검찰도 국세청이 고소한 ‘국세청 소속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국세청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의 파면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행정안전부 소청심

사위원회는 2010년 1월 15일 ○○○의 게시글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한편 징계 종류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경감하는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대해 즉각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은 ○○○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1심에서는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 ○○○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난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다.¹²⁰⁾

하지만 2심에서는 비방의 할 목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① 국세청장이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이라는 점, ② 내부게시판이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점, ③ A씨의 글이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내부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은 점, ④ 특히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소지를 스스로 자초한 사실이 큰 반면에 ⑤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각종 언론기관에 구체적 사실들이 상세히 보도되어 피고인의 게시행위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그의 명예가 새롭게 침해되었다거나 추가로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작고, ⑥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다.¹²¹⁾

그 이후 대법원은 2011년 11월 2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 대해서도 해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 다수인의

120) 광주지방법원 2010.5.12. 선고 2009고단4255

121) 광주지방법원 2010.8.10. 선고 2010노1068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였다.¹²²⁾

이 사건은 공무원이 자신의 상관을 비판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집단명예훼손이 어떤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의 여러 쟁점을 안고 있는 사건으로서 공직자의 품위유지 공익과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이익형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¹²³⁾

(3)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

1)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격적 존재로서 그 자신을 구체화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인권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외부적 표현으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자유이며, 표현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개별적 기본권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법리가 구축되어 있다.¹²⁴⁾

122) 대법원 2011. 11. 24. 2010도10864.

123) 대법원 2012. 01. 27. 2010다100919.

124) 성낙인(1995) “표현의 자유”,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6권)』, 헌법재판소.

그런데 오늘날은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상적 공간이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대면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상호간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즉 현실사회에서와 같이 수많은 감각정보가 동시에 전달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일부분의 감각 정보만이 코드로 변환되어 상호 전달되는 디지털의 방식에 의하여 상호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과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가상적이라는 수식어가 이 공간에서 지배하는 관념으로 제기되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은 지금까지 사람들 간의 교류방식과는 달리 탈공간성과 탈시간성에 더하여 탈인격성과 탈형식성의 속성을 겸비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구조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회적 행위양상들을 창출해 내는 현실세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구가하는 공간이기도 하다¹²⁵⁾.

더구나 인터넷의 보편화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접근과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의 자유를 만끽하게 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출현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장이 무한적으로 확장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의 자유에 편승하는 정보의 오·남용 내지 악용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 유출되고 있으며, 유명연예인 자살사건과 같이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동의 없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¹²⁶⁾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은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성과 비대면성,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이란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면서 인권의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 제4항과 같이 표현에도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침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 등의 부작용 또

125) 한상희(1998), “사이버민주주의- 그 의미와 헌법적 전망”, 『성신법학 창간호』

126) 김상겸(2012), “프라이버시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정보화시대에서의 인권보호』, 국가인권위원회·한국인터넷법학회.

한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로 인하여 익명성과 전파성에 기초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손쉽게 접근하여 여과 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가상공간에 올리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있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며, 이를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방법들은 다른 한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지만, 양자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어느 한 쪽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는 양자가 기본권이란 점에서 어느 한 쪽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의 보호법익을 판단하고 이익형량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사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은 헌법적 평가의 문제라고 판시하였다.¹²⁷⁾

2)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리 중 ‘사전억제금지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사후적으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준에 비추어 제한될 수 있고, 미국의 대부분의 판례들도 제한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결코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공익적 요청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이익형량원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부 소수 의견이 절대성을 주장하나 표현의 자유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있다.¹²⁸⁾ 이는 내심의 자유가 아닌 외부로 표출된 권리의 경우에는 자유 못지않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결론이다. 다만 이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이론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127)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128) *Konigsberg v. STATE Bar of California* 366 u.s. 36, 56, 81 S.Ct. 997, 1010, 6 L.ED. 2d 106, 1961 참조

가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여 공익에 기여하기에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공익이나 사익에 해가 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고, 양 측면은 결코 모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¹²⁹⁾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또한 그 외 해외 법률이나 국제 규약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였고, 독일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는 일반 법률의 조항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에서도 표현의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의 목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2011년 7월 제102차 회기에서 채택하여 9월 12일에 배포한 일반지침(CCPR/C/GC/34)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서, 제19조 제3항에 의해 국가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법이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약의 규정, 목적, 목표와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한 근거의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들¹³⁰⁾의 권리와 평판을 존중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위압에 해당하는 표현 형태로부터 투표자를 보호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제한이 정치적 토론, 예를 들어 비의무 투표에 대해 투표 거부를 촉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 등을 방해해서

129) 한국인터넷진흥원(2010.12).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

130) 다른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이거나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성에 의해 정의되는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들을 지칭할 수 있다(일반논평(CCPR/C/GC/34) 제28항)

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정당한 사유로는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또는 공중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유사한 조항들이 법을 적용하려는 목적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정당한 공익에 대한 정보를 억압하려 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일반 대중으로부터 차단하려는 것이라면, 또는 그러한 정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언론인, 연구자, 환경활동가, 인권활동가 기타의 사람들을 기소하려는데 있다면 제3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적 파업을 소집하는 등 노동쟁의를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를 제한한 것이 국가 보안이라는 사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를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위협의 정확한 성질과 특정하게 취하는 그 행위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하며, 특히 그 표현과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논평³⁴에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나 검색엔진과 같이 통신을 지원하는 체계를 포함하여, 웹사이트, 블로그, 기타 인터넷 기반 전자적, 혹은 기타 유사 정보보급체계의 운영에 대한 규제는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허용되는 규제는 일반적으로 특정 내용에 한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어떤 사이트나 체계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동 조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에 대해 또는 정부가 채택한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적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이트나 정보보급체계가 자료를 발간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 역시 동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명예훼손법은 제19조 제3항을 준수하고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안되어야 하며, 형사적 명예훼손법에는 진실증명과 같은 면책요건을 정해야 하고 그 성질상 증명이 불가능한 표현 형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적어도 공인에 대한 논평¹³¹⁾에 대해서는 실수로 공개되었으나 악의는 없었던 허위발언

131) 일반논평(CCPR/C/GC/34) 제38항

정치영역과 공공기관에 있는 공인에 관한 공개적 토론 상황에서 규약상 간섭없는 표현가치가 특히 높다는 견해를 제시해 왔다. 따라서 공인도 마찬가지로 그 규약상 조항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 형태가 공인을 모욕한 것으로 여겨진

을 처벌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불법화하지 않을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할 것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형사법 적용은 가장 심각한 사건에서만 용인되어야 하며, 감금은 절대로 적합한 처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표현의 자유는 한 인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므로 그 제한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지적하고 있다.

제3절 정보접근권

1.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내용

(1) 정보접근권의 의의

정보통신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거의 주관하다시피 한 오늘날, 우리가 일순간이라도 정보로부터 단절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 혈류가 막힌 육신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는 활력을 잃고 마침내 붕괴되고 말 것이다. 또한 정보가 구조적으로 편재(偏在)된 곳에서는 정보를 매개로 한 권력의 독점이 나타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힘으로 억누르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모두 존엄한 인격체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주권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외부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수집, 전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¹³²⁾

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되기에 충분치 않다. 더욱이 국가나 정부의 수장과 같은 최고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포함, 모든 공인들은 비판과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한 이유로 불경죄(*les majeste*)나 관권모독죄(*desacato*), 권위에 대한 모욕, 국기나 상징에 대한 모욕,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공무원의 명예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시하며, 비난을 받은 당사자의 신분만을 이유로 법에서 처벌의 강도를 높여서는 안된다. 당사국은 군대나 행정부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Informationsquelle)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정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는 나치스 시대의 광범위한 언론통제의 비극적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유”로 정의되고 있다.¹³³⁾ 한편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유통에 관한 권리를 알 권리(right to know)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학설은 알 권리를 대체로 정보의 자유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소극적 자유),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적극적 자유)로 파악하고 있다.¹³⁴⁾ 헌법재판소도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라고 하여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¹³⁵⁾

정보의 수집·처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전제로 한다.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접근권(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은 정보의 자유 또는 알 권리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수용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상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원리의 실질화에 기여하며, 정보사회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도 이바지한다.¹³⁶⁾ 나아가 국가에게 정보의 편재로 인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소외의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된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정보접근권은 정보의 자유나 알 권리를 뛰어넘어,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13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8, 739면 참조.

133) W. Hoffmann-Riem, Art. 5(Recht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in: GG-AK, 2. Aufl. 1989, Rdnr. 82.

13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542면.

135) 현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136)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384면 참조.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2) 정보접근권의 내용

정보접근권(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은 우선 소극적 측면에서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제도나 조치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방해제거청구권)를 내용으로 하며, 나아가 적극적 측면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격차해소청구권) 등도 포함한다. 여기서 정보방해제거청구권은 일반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정보의 자유가 내포하는 방어권의 일부로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후자의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격차해소청구권은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을 넘어서는 적극적 성격의 것으로, 그 법적 근거나 보장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내의 학설¹³⁷⁾과 판례¹³⁸⁾에 따르면 알 권리의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6년에 개통된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예: 도시 대 농어촌)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현상은 일차적으로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나아가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정보접근의 차단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의 결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참여의 기회 박탈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격차로 인한

137) 성낙인, “정보공개와 알 권리 - 정부 정보공개법(시안)을 중심으로 -”, 『고시연구』, 1995. 2. 67면 참조.

138)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다양한 문제는 단순히 차별금지나 복지정책의 관점을 넘어서 정보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헌법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격차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차별을 야기할 때, 국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게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6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아무튼 정보소외계층에 속하는 자는 국가에 대해 정보격차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의 권리는 정보접근권의 한 유형인 정보방해제거청구권이 확장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종합할 때 광의의 정보접근권은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방해제거청구권(정보격차시정에 관한 권리 포함)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를 제도화한 법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우선 정보접근권의 법제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고찰하고, 이어서 정보공개와 정보격차에 관한 국내의 제도적 현황과 관련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국제 동향 및 기준

(1) 정보접근권의 역사

164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자유헌장’이라는 비망록에 따르면 식민지의 모든 남성은 어떤 법원이나 관청의 기록을 검토하고 서류의 복사본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고 한다.¹³⁹⁾ 그리고 1766년 스웨덴의 출판자유법은 공문서를 자유로이 인쇄해 배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그를 위하여 공문서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¹⁴⁰⁾

‘알 권리’라는 말은 1945년에 미국의 언론인 쿠퍼(Kent Cooper)에 의해 처음

139) 허버트 알철, 양승목 역, 현대언론사상사, 나남, 2001, 461면.

140) 경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일반 행정법이론체계와의 관련에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35면.

사용되었으며, 크로스(Harold L. Cross)의 『인민의 알 권리 및 공적 기록과 절차에 대한 법적 접근권(The People's Right to Know, Legal Access to Public Records and Proceedings)』(1953년), 쿠퍼(Kent Cooper)의 『알 권리(The Right to Know)』(1956년) 등의 저서를 통해 이의 제도화가 강력하게 주장되었다.¹⁴¹⁾

(2) 정보공개청구의 법제화 동향

1) 국제규범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1979년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고 제854호를 결의하였다. 이 원칙은 1981년 11월 25일과 2002년 2월 21일의 유럽 각료회의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이 정보자유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정보접근권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부속 선언(제17조)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화가 기관의 민주적 성격과 행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1993년까지 유럽연합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정보공개제도를 연구하여 1993년 6월 정보공개기준에 관한 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1994년 2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정한 ‘행동규범’(OJ 1994 L 46/58)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정보공개청구가 관련 기관에서 거부된 경우 청구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집행위원회 앞으로 확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이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141) 김옥조, 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316면.

는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에 불복하는 자는 유럽법원 또는 옴부즈맨에 소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1997년에 조인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규정과 그에 근거해 2001년 5월에 정보공개규정(OJ L145, 31/5/2001)¹⁴²⁾이 채택되었다. 정보공개규정에서는 정보의 입수를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등 3대 기관 이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의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종전의 ‘행동규범’의 결함을 몇 가지 수정하고 있다. 가령 정보공개청구가 수리되고 15일째의 근무일까지 답변하도록 하고(제7조),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비공개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자는 15일 이내에 확인청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에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문서도 포함시켰으며(제2조 제3항), 회원국이 보유한 EU의 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공개 필요의 유무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EU의 관련 기관에 자문한 후에 행하도록 하였다(제5조). 아울러 정보공개예외로서 9개의 유형이 열거하면서도, 이것이 전면적으로 공개를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는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이외는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공개의 기한도 최대 30년으로 정하였다(제4조).¹⁴³⁾

2) 국제적 법제화 동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알 권리 내지 액세스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51년 핀란드의 ‘공문서의 공개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하여, 1966년 미국의 ‘정보자유법’, 1970년에는 덴마크의 ‘행정문서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법률’과 노르웨이의 ‘행정에서의 공개성에 관한 법률’, 1978년 프랑스의 ‘행정문서에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과 네덜란드의 ‘행정정보에 액세스하는 권리에 관한 법률’, 1982년에는 호주의 ‘정보자유법’과 캐나다의 ‘정보의 액세스법’, 및 뉴질랜드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 1987년 오스트리아의 ‘연방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4년 벨기에의 ‘행정의 공개에 관한

142) Regulation (EC) No104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01 regarding public access to European Parliament, Council and Commission document.

143) 이상 장경원, “EU 행정법상 정보공개제도”, 『행정법연구』 제21호, 한국행정법연구소, 2008, 75-96면 참조.

법률', 1999년 일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2000년 영국의 '정보자유법', 그리고 2005년에는 독일의 '정보자유법' 등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초기에 정보자유법을 제정한 미국과 최근에 정보공개법을 제정된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입법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미국

미국은 코먼로(Common Law)에 의하여 공적 기록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가 대중에게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접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46년의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3조에서 행정정보 접근권이 규정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66년에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제정하여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방의 기본적 법률을 갖추게 되었다. 동법에서는 이해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적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래 13개나 되던 적용제외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공개의 원칙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비공개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실과 법률문제 양쪽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자유법에서는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기록의 공개와 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내용은 정보공표의무제도와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정보공표의 대상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기능, 절차, 실체적 규칙, 일반적 정책선언 등 현방공보로 공표해야 할 기록(5 U.S.C. 552(a)(1))과 재결에서의 최종의견, 개별적 정책선언,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직원매뉴얼 등 행정기관이 스스로 대중에게 열람복사에 제공해야 할 기록(5 U.S.C. 552(a)(2))이 있다. 그 밖의 기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공개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5 U.S.C. 552(a)(3)). 하지만 (1) 국방 또는 대외정책을 위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대통령령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고 적절하게 분류된 국가비밀정보, (2) 오로지 행정기관의 내부적 인사규칙과 관행에 관계되는 행정기관 내부규칙, (3) 제정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공개가 면제된 사항, (4) 영업비밀

또는 비밀에 속하는 상업상 또는 금융상의 정보, (5) 행정기관과의 소송에서 행정기관 이외의 당사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각서와 서신, (6)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사적 정보, (7) 법집행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기록 또는 정보, (8) 금융기관의 규제 또는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금융제도 정보, (9) 지도 등을 포함하여 油井에 관한 지질학 및 지구과학상의 정보 및 데이터 등 9가지의 비공개사유(Exemption)가 인정되고 있다(5 U.S.C. 552(b)(1)-(9)). 또한 특히 민감한 기록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Exclusion)도 두고 있다(5 U.S.C. 552(c)).¹⁴⁴⁾

이 법률은 1970년대 초 워터게이트사건을 계기로 1974년에 개정되었는데, 정보공개절차상 공개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과 감독장치를 강화하고, 그 동안 판례를 통하여 논란이 되었던 상기 (1), (7), (8)의 적용배제사유를 특히 엄격히 한정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하였다. 그 후에도 동법은 1976년, 1978년, 1986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날 정보공개제도에 관하여 가장 선진적인 입법으로서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 입법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¹⁴⁵⁾

한편 1976년에 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을 제정하여 정부 회의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의 전자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하여 이메일로 정보공개를 신청,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 2007년에는 ‘열린 정부법’(Openness Promotes Effectiveness in our National Government Act of 2007)으로 개정이 있었다.¹⁴⁶⁾

나. 일본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매스미디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생활 침해의 구체 및 보호대책, 프라이버시권이 주장되었으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적정보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권리의 구체적 제도화를 모색하던 중 록히드 사건으로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지방자치단체

144) <http://www.nih.gov/icd/od/foia/efoia.htm>. (접속일: 2009. 10. 5)

145) 이관기,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1993, 98-100면 참조.

146) 배병호, “미국의정보공개제도와의견론”,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3호, 한국언론재단, 2008, 228-233면 참조.

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실현 및 그 전제로서 자치단체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첫 성과가 가나가와(神奈川)縣에서 이루어져 1979년부터 정보공개에 관해 논의가 시작되어 1982년 10월 14일에 ‘가나가와현 기관의 공문서공개에 관한 조례’를 공포,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¹⁴⁷⁾ 이를 시발로 하여 이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1999년 5월 14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行政機關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2001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청구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준하는 조직인 독립행정법인의 경우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獨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이 적용된다. 그리고 재판소의 경우는 ‘형사확정소송기록법’, ‘최고재판소가 보유하는 사법행정문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의 취급요강’ 등에 따르며, 국회의 경우는 본회의, 위원회의 공개와 의사록의 공표에 대해 정하고 있는 헌법 제57조, 국회법 제62조 및 제63조, ‘중의원사무국이 보유하는 의원행정문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등에 의한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법 제5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개시청구가 있는 경우 개시청구에 관한 행정문서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불개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시청구권자에 대해 당해 행정문서를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는 정보공개예외로서 불개시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둘째, 법인 기타 단체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을 행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셋째,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해할 우려 또는 타국 혹은 국가기관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우려,

147)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경과에 대해 자세한 것은 한영학,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의의”,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3호, 한국언론재단, 2008, 285-292면 참조.

국제기관 혹은 타국과의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넷째, 공개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또는 수사,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섯째, 국가기관독립행정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내부 또는 상호간에 있어서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히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여섯째,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개시정보에 대해서 불개시정보의 개시가 금지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정보개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논란이 있는데, 불개시정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일본국 헌법 제21조와 관계에서 개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¹⁴⁸⁾가 유력하다.

다. 영국

영국은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의 제정으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 총선거에서 노동당의 공약을 이행하는 입법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동법은 2005년 1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정부, 학교, 위원회 등 10만의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동법상 정보공개는 법무부장관의 책임으로 되어 있으나, 정보공개업무의 실무는 정보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2000년 정보자유법 이외에도 영국에는 2002년 스코틀랜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Scotland) Act 2002)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자유법에 의거하여 영국에서는 매년 약 12만명 정도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약 60%가 시민들이고, 사업가가 20%, 언론종사자가 10%를 각각 차지한다.¹⁴⁹⁾

148) 松井茂記, “情報公開法五條”, 『ジュリスト』 No 1156(1999年6月1日號), 1999, 45-46면 참조.

149) “Every expense spared”, The Economist, 23 December 2006, Number 8532, p. 46.

영국의 정보자유법은 제1조에서 누구든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장차 공간될 정보, 보안을 요하는 정부기관의 정보,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 수사과 소추를 위한 정보, 법집행을 위한 정보, 법원의 기록, 감사기능에 관한 정보, 건강정보, 환경정보, 개인정보 등 수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제21조 내지 제44조).¹⁵⁰⁾ 이 가운데 일부는 절대적인 비공개사유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의 형량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 비공개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비공개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청구자는 정보공개를 명할 권한을 가진 정보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에게 진정할 수 있다(제50조). 하지만 그의 명령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보공개명령에 대해 정보심판원(Information Tribunal)에 항소할 수 있다(제57조).

한편 공공기관에게는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위한 출간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19조). 이러한 출간계획은 정보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20일의 근무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10조).¹⁵¹⁾

라. 독일

독일은 2000년대 중반까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일반적 공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록에 대한 열람청구권이나 절차법상의 참여권 등과 같은 개별적인 규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행정절차에 있어 공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독일연방행정절차법(VwVfG)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당사자의 법적 이해와 관련한 주장과 방어를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등에게만 행정절차와 관련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다. 1994년에 제정된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에서는 누구라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환경정보에 국한되었다.

150) http://www.opsi.gov.uk/acts/acts2000/pdf/ukpga_20000036_en.pdf. (접속일: 2009. 10. 5)

151) http://en.wikipedia.org/wiki/Freedom_of_Information_Act_2000.

그러다가 1998년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가 정보자유법을 제정한 후 1999년에는 베를린(Berlin), 2000년 슐레스비히 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2002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주 등이 정보자유법을 시행하였고, 2005년에 ‘연방정보접근법(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일명 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 IFG)이 제정되면서, 연방차원에서 일반적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었다.¹⁵²⁾

2006년부터 시행된 정보자유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관청에 대해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공개대상의 공적 정보는 제2조 제1호에 따라 모든 공적 목적에 이용되는 기록물이다. 연방관청 및 연방기관과 시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적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행정과정상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초안과 메모 등은 정보접근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보자유법은 실체적 기능상의 권력분립원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연방기관 및 시설들은 공법상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한도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기관 등은 자신의 입법적 혹은 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정보들의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인(私人), 특히 행정정보조자(Verwaltungshelfer)는 공법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청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연방행정청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그런데 정보자유법은 정보공개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공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4조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7조 제2항 제1문에 의하여 공개청구권은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¹⁵³⁾

그 다음 동법 제5조와 제6조는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접근청구권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가 개인관련정보의 보호를 통해 무엇보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는 반면, 제6조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의 실현을 위하여 지적 재산권과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고 있다.¹⁵⁴⁾

152) <http://www.informationsfreiheitsgesetz.net/blog/informationsfreiheitsgesetz>

153) Matthias Rossi, 장경원 역, “독일에서의 공공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행정절차”,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2007, 243-260면 참조.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제화 동향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한 법적 기준의 정립은 주로 웹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1998년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은 제4조에서 “장애인은…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12월 13일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제21조에서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 및 본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정보검색, 정보 수집 및 배포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수화, 점자, 대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 등이 열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에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8조를 신설하여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연방정부의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정보나 서비스를 구하는 장애를 가진 일반 대중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국제표준화기구(W3C)의 지침을 기초로 하여 16개 항목에 대한 웹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DA) 제정후 2002년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의 실행을 위해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장애인이 인터넷상의 상품, 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이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1999년 W3C의 WCAG 1.0을 기준으로 ‘영국 정부의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DDA에 의해 2004년 10월부터는 모든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¹⁵⁵⁾ 그 밖에도 일본의 경우 2003년에 웹 접근성 표준(JIS X 8341-3)을 제정한 바 있으며, 호주에서는 1992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DDA)에 의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154) 장영수, “독일의 정보공개제도”,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3호, 한국언론재단, 2008, 190면 이하 참조.

155) 현근식 외, 『공공기관 웹 사이트 장애인 사용성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11. 16쪽.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⁶⁾

아셈국가들을 위한 일반권고¹⁵⁷⁾는 디지털 통합(Digital Inclusion)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적으로 인간 및 사회적 발전의 모든 면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능력과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광범위하게 인권을 현실화시키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은 정부에게 디지털 통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투자하는 것, 독과점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 대상이 확실한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 온라인 서비스의 대안을 보장하는 것, 솔선수범하고 개방적인 정부 원칙을 유지해야 하며, 이 모든 조치들은 디지털 소외(Digital exclusion)의 위험에 처해 있는 집단들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정보 격차를 좁히고 새로운 정보격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구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이슈

(1) 제도적 논쟁

1) 정보공개청구

가.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우리 헌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행정권이 보유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인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열린 정부에 의한 행정의 공정화·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¹⁵⁸⁾ 그리고 정보공개는 밀실행정의 관행을 타파하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부정부패의 방지와 국민의 행정감시기능, 행정운영에 시민의 참여확대, 나아가 공적 자산인 행정정보의 사회환원을 통한 공공성의 증

156)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웹 접근성 현황 및 정책방향”, 2009. 4. 9-10면 참조.

157) 제12차 ASEM 인권세미나: 정보통신 기술과 인권(2012.6.27~29, 서울)

158)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1, 374-375면.

진에 기여하게 된다.¹⁵⁹⁾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주로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주관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객관적 법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¹⁶⁰⁾ 한편,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청구권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자기정보통제권은 부분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과 중첩될 수 있다.¹⁶¹⁾

나.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개정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알권리가 보장됨을 인정하였으며,¹⁶²⁾ 대법원도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⁶³⁾ 1991년에는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고, 1994년 3월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6년 12월 31일에 마침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동 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 행정정보 사전공표 및 정보목록 작성·비치 의무화,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단축, 추상적인 비공개 요건 삭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민간위원을 과반수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이 추가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규정되었다.

15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24면 이하 참조.

160)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29집 3호, 2001. 5, 172면.

161) 이에 관해서는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171-172면을 참조할 것.

162) 현재 1989. 9. 4 88헌마22; 현재 1991. 5. 31 90헌마133 등.

16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다.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

정부는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마련 등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선진화하였다. 2006년 4월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개통하여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2009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정보목록 검색,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납부, 공개자료 열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시스템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청구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8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9년에는 장애인·노약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웹 접근성 개선과 웹 표준을 적용하였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청구 화면 등 220개 화면의 메뉴와 기능에 대해 음성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색약자·저시력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글자 크기의 확대, 글자·화면의 색상 변경을 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위하여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 조작으로 메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정보공개시스템을 윈도우, 매킨토시, 리눅스 OS(Operating System)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는 정책연구용역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www.prism.go.kr)’,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www.laiis.go.kr)’,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클린아이(www.cleaneye.go.kr)’,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등이 있다.

그동안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면서 나타난 주요변화를 보면, 청구건수의 경우 1998년 26,33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398,16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2003년에 실시되기 시작한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제도는 「정부업

무평가기본법』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로 실시하여 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 관련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2004년 8월부터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제도 개선, 정보공개 기준 수립,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⁶⁴⁾

하지만 정보공개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제도의 정착과 서비스 향상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비공개 근거를 추상적으로 제시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일부 청구인들 중에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목적 및 취지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¹⁶⁵⁾ 이러한 경우는 다른 개인이나 공익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행정비용을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라. 현행 정보공개법상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에 포함된다. 외국인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정보공개법시행령 제3조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에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따라 정보공개의무를 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법

164) 이상 행정안전부, 2009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2010. 9. 4-6면 참조.

165) 위 2009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8-9면 참조.

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관도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한다.

정보공개 목적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널리 공문서의 성격을 갖는 일체의 기록물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문서가 지칭하는 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서 서류, 보고서, 연구서, 합의서, 의견서, 통계자료, 예측서, 결정서, 회람, 지시 및 법률의 해석과 행정절차의 기술을 담고 있는 관계부처의 답변서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보사회의 진전이라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목적의 정보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공개에서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때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사회의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은 제3조와 제9조 본문에서 정보의 공개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비공개대상정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헌법상의 다른 가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공개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정에서는 제9조 본문을 통해 공개의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며, 비공개대상정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보다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비공개대상정보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였다.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현행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다.

하지만 실제 비공개되는 정보의 40% 이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이

외의 사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2008년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그 활동은 그 전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마.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속하는 것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원래 이 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나, 2006년 법령을 변경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조). 그리고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제3조). 그러므로 동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기록물과 기록정보자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 객체인 정보와 일치하게 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관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상당 부문 중첩된다.¹⁶⁶⁾

2) 정보격차의 해소

가. 서설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하지만 「국가정보화 기본법」¹⁶⁷⁾은 제3조 제9호에서 “사회적,

166)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박진우,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43호, 동아법학연구소, 49-50면을 참조할 것.

167) 법률 제9705호, 2009. 5. 22 전부개정, 2009. 8. 23 시행.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정보선진국인 미국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선진국 90%의 국민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의 전화보급률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전화보급률보다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언어의 80%가 전 세계 인구의 20~30%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해소가 앞으로의 미국 경제에서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1993년에서 1999년까지 부통령 앨 고어가 중심이 되어 교육·기술 혁신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0년 2월 2일 대통령 클린턴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모든 국민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전화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장비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촉진시킨다. 또한 민간기업이 컴퓨터 기부 등을 통해 이 계획의 후원자가 될 경우 새로운 조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2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교 도서관·지역정보센터 등을 후원하는 기업도 세금을 공제받는다. 그리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보기술훈련을 실시해도 세금을 공제받는다. 저소득 지역에 1,000개의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빈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인터넷 개발을 촉진한다. 모든 어린이들이 21세기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교사 훈련을 확대하는 것도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용이한 고소득층과 이것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사이의 정보격차가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0년 기준 일반 국민의 평균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82.2%,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78.3%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의 평균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67.2%,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44.3%로 일반 국민에 비하여 상당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반국민 및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4대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정보격차 종합지수가 2004년 55.0, 2005년 46.7, 2006년 38.0, 2007년 34.1, 2008년 32.0, 2009년 30.3, 2010년 28.9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부문별 정보격차 지수는 접근 부문 8.2점, 역량 부문 49.2, 양적 활용 부문 42.5, 질적 활용 부문 45.9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10년도 취약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을 보면 장애인 81.3%, 저소득층 80.5%, 장노년층이 67.5%, 농어민 61.8%로 각각 나타났다.¹⁶⁸⁾ 해마다 정보소외계층과 일반국민 사이의 격차가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스마트폰의 경우 그 이용률은 1.3%로 전체 국민 15.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급격한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 추세에 따라 취약계층의 모바일 격차 확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정보소외계층이 인터넷 등 웹에 보다 용이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정보격차 해소정책

우리나라에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1999년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이 수립되면서 정보격차해소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위한 세부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2000년 4월 제4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 따라 우체국, 사회복지관, 지역도서관 등을 통한 인터넷교육 실시,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게 PC 무상보급 및 5년간 인터넷 사용료 지원, 주부 인터넷교육 확대, 장애인 종합정보사이트 구축 등이 추진되었으며, 그 해 6월에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계획인 「1,000만명 정보화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소외계층 및 일반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화 교육이 실시되었다.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1월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저소득층·농어민·장애인·노령자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

168) 이상 이재웅, 2010 정보격차 현황 분석 및 제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3. 4-18면 참조.

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매 5년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매년 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과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2002년 12월에 개정된 동법은 제7조의2에서 정부가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였고, 제11조의2에 의하여 정보격차 해소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의 실시, 제16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두었다.¹⁶⁹⁾

한편 2001년 9월에 범정부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2001-2005)」이 수립되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접근 환경 조성, 정보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기반 조성 및 인식 개선 등 6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정부는 정보접근격차 해소와 아울러 정보이용능력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일반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모토로 2000년에 10개 부처 공동으로 「1,000만명 정보화교육계획(2000-2002)」을 수립·추진하여 2002년 6월까지 1,380만명을 교육하였다. 이어서 2002년 7월부터 실용위주의 교육을 강화한 「2단계 국민정보화 교육계획(2002.7-2004)」을 수립하였으며, 농·어업인 근로자, 장애인, 노인 등 총 500만명에 대한 정보화 기초 및 중급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정부가 2000년 1월에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지식정보자원 관리기본계획(2000-2004)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동 기본계획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하나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계획기간 중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디지털화 등의 기반조성을 제외하면 산업적 활용

169) 최두진·김지희,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 방안”,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vol.1. no.2. 2004, 5-6면.

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eKorea Vision 2002에 이어 Broadband IT Korea 2007의 수립을 통해 ‘지식사회의 전면화’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디지털북이 e-life 등에 정보평 등에 대한 정책논리가 형성되면서 지식정보자원 관리는 보다 넓은 정책영역,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이고 다소 확장된 정책영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¹⁷⁰⁾

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내용

2001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제31조부터 제36조에 걸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련 시책,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보장,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과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동법은 특히 제34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표준’을 제정하여 웹사이트 설계자, 운영자 및 개발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정·배포된 표준은 국가표준 1종 및 단체표준 9종에 이르고 있다.

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정보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0조)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1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0) 심민석, “정보격차해소정책과 정보접근권 - 사회경제적 지식순환구조의 매개체 도서관-”, 2007년도 추계공동학술발표논집, 53-56면 참조.

우선 개인·법인·공공기관에게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의 이용·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제20조 제1항),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2항).

그리고 행위자 등은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 해설, 확대프로그램,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하고(제23조 제1항),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2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 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 제3항).

2011년 중앙지상파방송의 자막방송,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방송 비율은 각각 96.5%, 5.2% 및 6.2%로 조사되었다. 자막방송의 경우 2006년의 58.0%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은 2006년의 3.6%와 4.7%에 비추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¹⁷¹⁾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171)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지상파방송의 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 제공현황, 2011 참조.

개선조치가 요망된다.

마. 도서관법의 내용

2006년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별도의 장(제8장)을 두고 도서관의 책무,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도서관의 책무와 관련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도서관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¹⁷²⁾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제43조).

다음으로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관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4조).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두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17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등의 제작·배포,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제45조).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의 제작 지원은 일반도서에 비하여 2%에 불과하여 선진국(스웨덴10%, 네덜란드 10%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원문DB구축, 특수 언어 표준화 작업은 고작 PDF자료 299건(2009년), VBF자료 731건(2008년)에 그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점자도서에 치우쳐 있는 대체자료 제작지원을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¹⁷³⁾

(2) 정보접근권 관련 이슈

1) 웹 접근성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말한다.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망의 이용 증대에 따라 오늘날 웹(web)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따라 정보접근권의 보장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웹은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행정업무,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교육 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10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도 기준 전체 국민의 인터넷이용률은 78.3%인 데 비하여 장애인의 인터넷이용률은 53.3%로 나타났다.¹⁷⁴⁾ 이는 장애인과 일반 국민 사이에 25.0%의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느끼는 애로사항은 주로 이미지 등 시각 정보에 대한 설명 부재, 동영상에서의 음성정보에 대한 설명 부재, 키보드만으로 콘텐츠 접근 불가, 글자 확대 불가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키보드 이용 보장, 글자를 배율로 제공 등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령으로는 2001년에 제정되었던 「정

173) 박은수의원실,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08-'12) 중간평가 자료, 25-26쪽.

174) 이재웅, 2010 정보격차 현황 분석 및 제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3. 14면.

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로, 이 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2002년 1월에 마련되었다. 하지만 2009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그 대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시행 등이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국가표준으로 승인되었고, 2009년 3월에는 국가 표준 준수 기술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행위자에게 장애인이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수단으로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호).

우리나라 웹 접근성 수준은 2005년 표준 제정 이후 향상되고 있다. 2009년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헌법기관, 광역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대부분 9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체 평균 91.8점으로 전년대비 8.5점이 향상되어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공기업(각종 공사 등), 준정부기관(각종 공단, 출연·연구기관 등)의 경우는 평균 83.2점으로 전년대비 8.6점 향상 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등에 비교하면 여전히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9년부터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국·공립대학,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문화예술단체,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중 일부 기관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76.6점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⁷⁵⁾ 한편 행정안전부의 ‘2010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94.6점, 입법·사법·행정기관 94.7점, 광역지방자치단체 97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기관은 78.7점, 의료기관은 77.9점, 복지시설은 80.4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이

175)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09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2010. 3. 참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들에 있어서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날로그방송 송출중단과 디지털 방송의 전환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7조). 이에 따르면 2012년에 아날로그 방송이 끝나고 2013년부터는 디지털 방송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TV수상기를 마련하지 못한 일부 계층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은 지상파 TV방송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정보접근권 의 침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정부의 방침대로 아날로그 방송만이라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여도,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는 자는 디지털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비하여 화질이 떨어지는 방송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는 점에서 질적인 측면의 정보격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한 가구도 빠짐없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¹⁷⁶⁾ 케이블TV를 통해 디지털방송을 서비스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고화질 디지털방송(HD) 프로그램의 편성과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09년 9월 10일 개정된 동 시행령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조치로서 시정조치,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를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시행령은 지상

176) 연합뉴스 2009. 6. 4.자, 길종섭 “모든 국민에 디지털혜택 보장” 기사 참조.

파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 부과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의무와 조건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폐지에 따른 정보접근의 차단 혹은 정보격차의 야기와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인위적인 교육기회의 확대와 경제적 지원만으로 정보격차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TV나 셋톱박스 구입과 같은 비용의 문제, 설치시의 기술적 어려움,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적응의 문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요 방송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접근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보편적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시청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전환의 시행시기를 당초의 계획보다 2년간 늦추고, 75세 이상의 노인, 장애연금 수령자, 산업재해 연금자, 시각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특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외에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그룹을 위한 부가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의 매체선택권이나 정보접근권은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적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방송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¹⁷⁷⁾

3) 공인인증서 판결

인터넷뱅킹은 은행과 사용자간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PC뱅킹에 비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보다 발전한 금융시스템이다. 인터넷뱅킹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아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용고객이 상대적으로 젊고 중산층 이상이므로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시큐리티퍼

177) 김광호, “디지털방송전환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방송기술저널』 제80호, 2009. 7. 참조.

스트 네트워크뱅크(SFNB)가 세계 최초의 인터넷은행으로 1995년 10월 영업을 시작한 이래 오늘날 대부분의 은행은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 고객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 뱅킹에 필수적인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는 MS의 IE에서만 구동되는 ‘액티브 엑스’를 통해서만 발급되어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뱅킹은 오로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 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 때만 접속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인터넷 뱅킹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윈도우의 대안 운영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리눅스 사용자도 5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출판과 멀티미디어 작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매킨토시 사용자들도 무려 15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인터넷 뱅킹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비 윈도우 사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을 차별하게 된다.

2007년 웹표준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이외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이용환경에서도 인증서 재발급, 인증서 갱신 등 기타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2008년 7월 24일 “현행법상 가입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영무를 제공하여야 할 보편적 공인인증영무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다.¹⁷⁸⁾ 오픈웹 측은 이에 곧바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3월 25일 항소를 기각하였고,¹⁷⁹⁾ 상고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웹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 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1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114739 판결.

179) 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나82294 판결.

맡겨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법원은 “실제로 가입자들은 대부분 대행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특히 은행들은 자사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에 최적화된 설비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¹⁸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비 윈도우 사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10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전체 98%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서 인터넷뱅킹, 온라인 쇼핑 등의 경우 액티브X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한하므로, 액티브X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액티브X 프로그램 과다 이용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이용제한 및 보안 취약성 문제 등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2012년 1월 표준기술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검증하는 웹사이트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기관과 대형 은행, 게임회사, 온라인쇼핑몰, 포털사이트 등 주요 100대 사이트의 액티브X 기술사용 실태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공공기관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인터넷 접속의 기본권 논의와 망중립성

인터넷은 미디어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인터넷은 다른 통신수단과 달리 쌍방향 매체로써 방송통신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웹2.0 서비스의 출현으로 개인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신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생성자가 되었다. 개인은 적은 비용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인터넷은 과거 불가능했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¹⁸¹⁾

하지만 인터넷 접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인간 사회에서 새로운

18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28998 판결, 손해배상(기).

181) 인권이사회 제17차 회기(A/HRC/17/27) 제19항

차별을 만들고 있다.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100명 중 71.7명이, 개발도상국에서는 100명 중 21.1명만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한다.¹⁸²⁾ 이러한 격차는 우리 사회에서도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는 ‘공개접속 운동(open access)’을 통하여 정보소외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인터넷으로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¹⁸³⁾

정보통신기기에 접근 여부가 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면서 인터넷 접속은 중요한 권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핀란드는 2010년 7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Mbps로 브로드밴드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화하면서 세계 최초로 브로드밴드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법제화하였다.¹⁸⁴⁾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도 정보접근성에 따라 계급 간 격차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⁸⁵⁾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세계 여론조사¹⁸⁶⁾에서 26개국 76%는 인터넷 접근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사국 대상 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¹⁸⁷⁾이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도 96%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네티즌이 인터넷의 가장 큰 효용가치를 정보검색 기능에서 찾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능, 엔터테인먼트, 인터넷구매, 콘텐츠생산과 공유 순으로 나타났다.

EU 의회는 2009년 전자 커뮤니케이션 공통규제 프레임워크 디렉티브(EU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를 개정하여 인터넷 접속권을 표현의 자유와 동등한 기본권으로 규정하였고, 인터넷에 대한 개방성과 망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⁸⁸⁾, 2011년 네덜란드는 유

182) “Key Global Telecom Indicators for the World Telecommunication Service Sect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0. 10. 21.

183) A/HRC/17/27.

184) Communications Market Act,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concerning network service(Section 60d)”.

185) BBC, “Finland makes broadband a ‘legal right’(2010. 7. 1.).

186) BBC, GlobeScan, 매일경제, 동아시아연구원 공동으로 조사한 BBC Goba Poll 2010 Research 는 2010년 전세계 26개국 27,97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10년 3월에 발표하였다.

187) 인구대비 인터넷 보급률 77%(Internet World Stat 자료, 2009. 9. 30.기준).

럽 국가 중 최초로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여 망중립성을 법제화하였다. EU 이외 세계 각국에서도 망중립성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망중립성 유사 개념인 차별금지원칙(카터폰원칙)은 회선교환 전화시대¹⁸⁹⁾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패킷망인 인터넷의 ‘End-to-End’ 디자인 원칙(design principle)¹⁹⁰⁾은 자유, 개방, 혁신을 더욱 촉진하게 되면서 망사업자들에 의하여 훼손될 우려에 처한 인터넷 개방성은 더욱 규범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미국은 2010년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오픈인터넷규칙을 제정하여 망사업자에 의한 차별, 차단을 금지하고 특히 무선 광대역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쟁사업자(예시 mVoIP¹⁹¹⁾) 차단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다. FCC에서 예시한 내용을 보면 기업이나 개인은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네트워크 통제권을 보유한 사업자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도 망중립성과 관련한 사항에서 IP 기반 네트워크는 이용자가 접근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단말기를 통해서라도 이용 가능해야 하고, End-to-End 통신을 지원해야 하며, 이용자는 통신 및 플랫폼 계층에 접근 동등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¹⁹²⁾

188) Europa Press release(2009.11.5.), “Agreement on EU Telecoms Reform paves way for stronger consumer rights, an open internet, a single European telecoms market and high-speed internet connections for all citizen”(MEMO/09/491).

189) ‘No Harm to Public Network’ 와 ‘Open Network’ : 1950년 Hush-a Phone 사건, 1968년 카터폰(Caterfone) 사건에서 촉발되어 공중망의 전화장비 또는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떠한 단말기에 차별적인 접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정책이다. Open Network는 1986년 ‘Computer Inquiry III’에서 제시된 것으로 기간망은 사회적 필수설비이므로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라도 상호접속, 번호 이동, 가입자회선 분리 등이 가능하도록 공평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190) 1981년 Jerome H. Saltzer, David P. Reed, David D. Clark 등이 주창한 이론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지능적인 기능은 통신의 단말장치에 의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네트워크는 단순한 전송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라는 이론이다.

191)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란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를 통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실어나르는 기술로 기존 회선교환 방식의 일반 전화와 달리 IP(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패킷 형태로 전송하는 기술로, VoIP란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되어 온 인터넷 또는 IP 네트워크에 음성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기술과 관련한 솔루션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192) Internet Freedom Coalition, WC Docket No.07-52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인터넷망 사업자와 스마트 TV 제조업체 사이의 논쟁, 인터넷 메신저,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제공 업자와의 논쟁 등이 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동통신사가 mVoIP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의 음성통화를 제한하기 위하여 DPI(Deep Packet Inspection, 패킷감청)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선별작업을 행하여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¹⁹³⁾

에스토니아 국회는 2000년도에 인터넷 접속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¹⁹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09년 인터넷 접속이 기본권이라고 실질적 선언을 하였으며,¹⁹⁵⁾ 2010년 코스타리카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도 정보강국¹⁹⁶⁾으로서 국민 96%가 인터넷의 접속을 보편적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제사회나 UN 역시 차별 없는 인터넷의 접속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인터넷 접속과 망중립성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

1. 정보문화향유권의 의미

정보문화향유권은 형성 과정에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정보문화 향유권이 포섭하려는 권리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는 아니다. 1966. 12.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nve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규약 ; 이하 ‘사회권 규약’이라 한다) 제15조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1948년 세계인

193) 11-진정-0652000

194) Colin Woodard, “Estonia, where being wired is human right”, Christian Science Monitor, 2003.7.1

195) A.HRC/17/27,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법제동향 제25호(2009-10).

196)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년(2010년, 2011년) 연속 1위, ITU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1위(2011) 등.

권선언도 제27조에서도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는 문구는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들은 정보문화 향유권의 핵심 내용을 이룬다. 정보문화 향유권은 크게 2개의 권리 즉,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및 제3항의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에 따른 국가의 ‘과학·문화의 보존, 발전, 보급 의무’, ‘연구와 창작의 자유 존중 의무’도 정보문화 향유권에 포함된다. 그러나 ‘문화’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다의적이고 가변적인 성격 때문에 정보문화향유권을 구체화하여 입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권리이기도 했다.

그간 큰 주목을 못 받던 정보문화향유권의 논의가 구체화된 계기는 지적재산권의 확대 및 획일성을 상징하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인 트립스(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때문이었다. 트립스 협정에 따른 개도국의 의무이행 유예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00년경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인도, 남미, 동남아시아등에서는 HIV/AIDS 의약품 가격과 관련하여 의약품 접근권, 의약품 특허, 건강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다. 이렇듯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보문화향유권은 과도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인권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정보문화향유권은 저작권의 강화로 구체적인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 국제동향 및 기준

(1) 문화향유권의 개념구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

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2008년 5월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a)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2009년 12월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1호를 발표했다. 일반논평 21호에 따르면, “문화생활”에서 말하는 문

화는 “개인이나 집단,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와 행복 가치를 정립하고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사회권 이사회는 일반논평 21호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세 개의 핵심 요소, (1) 문화생활에 대한 참가(participation), (2)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access), (3) 문화생활에 기여(contribution)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평등과 비차별을 기준으로 할 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반논평 21호 단락 16)으로는, (a) 모든 사람이 누리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방된 문화자산과 서비스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 (b) 개인과 공동체가 도시나 농촌 지역이든 물리적 및 재정적 한도 내에서 문화를 차별없이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기회가 주어줘야 한다는 접근성(Accessibility), (c)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위해 국가가 채택하는 조치나 프로그램, 전략, 정책, 법률이 관련된 개인이나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택되고 집행되어 있다는 수용성(Acceptability), (d) 문화생활 영역에서 국가가 채택하는 조치나 프로그램, 전략, 정책, 법률의 유연성과 관련성을 의미하는 적응성(Adaptability), (e) 특정 문화 양식이나 맥락에 알맞고 적절한 방식, 다시 말해 소수자나 토착민을 포함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문화와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적절성(Appropriateness)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인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respect, protect, fulfill) 의무를 나누어 살펴보면, 존중 의무는 인권의 향유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제할 의무를 말하고, 보호 의무는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실현 의무는 국가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를 말한다.

2)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유네스코는 이 권리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2009년 베니스 선언문(Unesco,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2009)을 발표하였다. 베니스 선언문은 지식 생산의 가속화는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며 특

히 국가들간의 불평등과 세대간 불평등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교육, 표현의 자유, 무역의 기회를 확대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디지털 격차”를 심화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검열을 조장하는 문제를 낳는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자원은 국가들 사이에 심각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 진보의 가속화는 과학 기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를 더 벌려놓았다.

베니스 선언문은 과학이 오늘날 인권에 대한 심각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5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진보의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하고, 학문의 자유와 다른 인권의 보호간의 충돌을 누가 판단하고 관련 정책과 자원 배분을 누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혜택을 볼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혜택을 공유할 공동체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과학은 단순히 특정 주제에 관한 지식을 늘리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가정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자유는 과학의 발달에서 핵심 요소이다. 셋째, 국가와 기업 그리고 과학 공동체는 연구의 자유와 과학적 지식의 확산을 보장해야 하고, 전세계적 관점에서 과학이 활발하지 않은 국가의 역량 배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과학권은 지재권 제도와 갈등을 낳을 수 있는데, 지재권은 가치있는 사회적 기능을 갖는 일시적 독점권으로서 일부의 이윤을 모두를 위한 혜택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규약 제15조1(b)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서 말하는 “참여”는 과학권에서 말하는 “향유”와 구별해야 한다. “향유”는 과학적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실제로 누린다는 의미이다.

베니스 선언문에 따르면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는 과학권 “존중”을 위해, (a) 과학 연구와 창작 행위에 필수불가결한 자유, 가령 사상의 자유, 의견을 표명할 자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상과 정보를 추구하고 수용하면 전달한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b) 과학자들이 전문 학회나 연구단체를 결성하고 여기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c) 국경을 넘어서 과학자들이 공동체를 통해 협력하고 정보와 연구 성과를 자유롭게 교환할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d) 과학과 기술의 사용이 인권이나 다른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권 “보호”

를 위해 (a) 제3자가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는 데에 과학과 기술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b) 공적 주체나 사적 주체의 연구 활동에 관한 인권 특히, 정보에 대한 권리와 자유의지에 따른 합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권 “실현”을 위해 (a) 기본적 인권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법률 체계와 정책 체계를 채택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확산을 촉진할 제도를 설립해야 하며, (b) 소외계층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과학과 그 응용의 혜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고, (c) 과학과 기술의 유해한 영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중에게 알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d)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학 기술 분야의 국제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e) 과학 기술과 그 발전에 관한 정책결정에 공중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f) 교육 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특히 공립 학교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술 계발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교과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2)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충돌의 발생

웹 2.0에서 문화의 생산, 소비가 쌍방향으로 나타나고 개방, 공유의 정신이 가시화되어 실현됨에 따라, 이를 이유로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의 흐름과 이를 제한하려는 인권으로서의 정보문화향유권의 충돌문제는 본격화되고 있다.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개발의제

WIPO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는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반발하여 2004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개발의제 제안은 12개국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들을 합쳐 “Friends of Development (FoD)”라고 한다. FoD의 개발 제안은 크게 2가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재권의 보호는 개별 국가의 개발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므로 지적재산의 보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큰 개도국이나 최빈국에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정보 사회에서 혁신과 창작을 촉진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접근인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재권의 보호를 추가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방해가 되

고, Creative Commons 운동 등을 통해 혁신과 창작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재권 관련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은 소비자(consumers)의 이익과 일반 공중 전체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등의 산업선진국은 개발 의제 제안에 대하여 현행 지재권 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반대를 하였다.

이러한 논란끝에 위와 같은 FoD의 개발제안에 대하여, WIPO는 2007년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2007년에는 ‘개발과 지재권에 관한 상설 위원회(CDIP: 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 의제를 위한 111개의 제안이 제출되었는데 2007년 WIPO 총회에서 이를 6개 군으로 나눈 45개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6개의 군은, (1)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2) 규범 설정, 융통성, 공공정책, 공공영역, (3) 기술 이전, 정보통신기술 및 지식 접근권, (4) 평가 및 영향 연구, (5) 권한과 거버넌스를 포함한 제도 문제, (6) 기타 쟁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분류에 따른 45개의 제안 권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WIPO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작권 및 특허권과 공공영역에 대한 연구, 지재권과 경쟁정책, 디지털 격차와 지식접근권, 사회경제적 발전과 지재권, 개방형 협력 연구와 지재권 기반 모델 연구, 지재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2) 지식접근권 운동의 확산

지식접근권 운동은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전 세계적 운동을 통칭하는 의미로, 앞에서 WIPO 개발 의제가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동력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식접근권 운동은 인권을 포함한 여러 개념들을 아울러는 포괄적 대항 담론을 제시하는 시도라 할 수 있는데, 지식접근권 운동의 키워드로 공공영역(public domain), 공유지(common), 개방성, 공공의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논의되는 ‘의약품 연구개발조약(Medical R&D Treaty)’,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정보공유라이선스,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특허풀제도를 대표적인 지식접근권 운동사례로 꼽을 수 있다.

2011. 8. 지식접근권 운동을 지지하는 35개국의 180명 이상의 전문가, 학자, 활동가들이 모여 무역 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확대 강화하는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도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워싱턴 선언문을 통해 2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첫째, 지적재산권 정책과 제도는 권리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지적재산권 제도가 수립되어야 하고, 둘째, 정보재의 공평한 배분은 시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인권법과 같은 확립된 법 원칙에 따라 지재권의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해야 하고, 정보·지식에 대한 개방식 접근을 촉진하고, 좀 더 다양한 방식의 혁신 유인을 위해 특허 제도를 개혁할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정보 공유의 가능성을 확대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에 역행하지 않도록 저자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시도함으로써 문화적 창작을 지원해야 하고, 법정이나 국경,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집행이 과도하여 비례성의 원칙,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모든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을 고려한 WIPO 개발 의제를 실현해야 하고, 모든 지적재산권 정책은 단순한 이념 또는 신념이 아닌 실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3)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과 범세계적인 반대

2006년 미국과 일본이 위조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품의 국제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새로운 무역 협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여 논의가 시작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 협정(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11차례의 협상을 벌여 2010년 10월 협정문에 잠정 타결하였고, 2010년 12월 최종 협정문이 발표되었으며, 2011년 10월 12일 동경에서 8개국(한국,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모로코)이 서명을 했다.

ACTA는 협정문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지재권의 효과적인 집행이 전 세계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상표 위조와 저작권 해적질이 급증하면서 합법적인 무역과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며, 지적재산권리자와 합법적인 사업에 심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의 수입원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공중에게

위험을 야기한다고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과 좀 더 효과적인 국제적인 지재권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히 미국무역대표부는 ACTA가 상업적 규모의 해적질·위조행위와 싸우는 효과적인 모델을 제공하는 최신의 국제공조틀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ACTA는, 조직적인 지재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자는 애초 목표와는 달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두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들을 감시하도록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사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무죄추정원칙’을 부정하고 지재권 침해의 의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죄’를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건강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충돌하고, 기존의 국제조약과 상충하며, 오히려 정상적인 무역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멕시코 상원은 2011년 6월 22일 멕시코 행정부가 ACTA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을 위해 멕시코 상원은 2010년 11월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협상이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멕시코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과 ACTA가 충돌하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작업반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권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조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멕시코 상원은 ACTA가 문서나 서적 또는 노래의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따라서 젊은이들이 정보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을 우려했다. 멕시코 상원뿐만 아니라, 멕시코 연방 통신위원회와 통신업체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AC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U내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ACTA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컸고,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2012. 7. 4. ACTA를 부결시켰다.

3.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의 현황과 이슈

(1) 정보문화향유권의 헌법적 근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문화향유권은 현재 생성되는 권리이므로 기존의 헌법적 권리와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는다. 다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관련되는 헌법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국내의 중요 이슈들은 국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대부분 저작권의 과도한 보호범위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된 이슈

1) 한-EU FTA 체결

2011년 7월부터 잠정 발효된 한-EU FTA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최소한 저작사후 70년간 보호해야 하며(10.6조),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텔레비전 신호의 인터넷을 통한 재전송을 전면 금지하면서, 콘텐츠뿐만 아니라 신호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다(10.7:2조). 저작권법은 창작의 결과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고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 형태의 하나로써 ‘방송’을 보호할 뿐이고 신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또한 한-EU FTA는 이른바 ‘상영권’을 신설하여 입장료를 낸 공중을 상대로 한 텔레비전 방송물을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10.9:5(c)조). 이 경우 공중전달은 음악만의 상영도 포함한다(10.9:1(b)조).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복제할 권리(제84조)와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제85조)만 인정하는 기존의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한편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판매용 음반을 공중전달하는 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연보상청구권’을 요구하였다. 한국 정부는 공연보상청구권 제도는 “음악과 관련된 지재권 보호 제도로, 음식점,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틀 경우 작사, 작곡가(저작권자) 뿐 아니

라 공연가수, 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협상단이 우려하는 것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영세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더 이상 음악을 듣기 힘들거나 심하면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 후 한국정부는 제6차 협상(2008년 1월 28일~2월 1일)에서 유럽연합이 ‘공연보상청구권’ 요구를 철회하고 다른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조치(국경조치)를 상표 및 저작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재권 전반으로 확대)를 받아냈다. 그런데 한·EU 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25일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다(이 개정안은 한류 보호를 이유로 의원입법 형태로 제안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한-EU FTA는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과 달리 우회 행위 자 체까지 금지하며(10.12:1조),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도 포함한다(10.12:3조).

유럽연합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 요구가 수용되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와 적용대상이 트립스 협정보다 더 확대되었다(10.18조~10.26조). 그래서 트립스 협정의 와인, 증류주 이외에도 농산물이나 식품 전체로 보호대상이 확대되었고, 보호범위도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사 상품에까지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고, 심지어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는 경우,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10.21:1(b)조). 이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이 생기지 않는 영역까지 보호하는 절대적 보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의 적용이 트립스 협정에 비해 좁아졌다. 트립스 협정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의 절대적 보호에 대해 3가지 예외(선사용(제24조 제4항), 선사용 또는 선등록 상표(제24조 제5항), 보통명칭(제24조 제6항))가 허용되는데, 한-EU FTA는 2개의 예외(소비자 오인이 없는 자기명칭 사용(10.21:2조), 선사용 또는 선등록 상표(10.21:5조))만 허용하고, 보통명칭에 대한 예외는 없다. 트립스 협정에서 보통명칭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은 “삼페이나 코냑과 같이 일반화된 경우까지 지리적 표시로서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10.36조)과 식물보호제품의 자료독점권(10.37조)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보호기간은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5년 이상, 식물보호제품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이다. 보호방식은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자료로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료는 다른 의약품/의료기기의 허가 신청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식물보호제품의 경우에는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시험, 연구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한편, 한·미 FTA와는 달리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에 대한 보호는 의무화되지 않다. 또한 한·미 FTA와는 달리 미공개정보에 대한 보호는 제외하고 있으며 자료의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경우에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지재권의 집행(enforcement) 분야는 유럽연합의 법이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다. 한-EU FTA에 포함되어 있는 지재권 집행 관련 조항들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제도의 기본이념을 무시한채 지재권자를 위한 온갖 예외들을 신설하였다. 지재권자로부터 침해자로 지목되기만 하면 피고는 모든 정보들을 다 제출해야 하고, 침해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침해와 관련되기만 하면 도구나 재료, 심지어 서류까지 몰수, 폐기당할 처지에 놓인다. 또한 우리 민법의 법리와 달리 손해액을 입증하지도 못한 지재권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법무부가 발행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민사본안 사건(1심 법원) 87건 중 지재권자가 이긴 사건은 원고승 2건, 원고일부승 17건으로 모두 19건인 반면, 지재권자 패소 사건은 21건으로 더 많다.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사건에서도 33%가 무죄로 판결나 특허 침해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거의 절반 가량이 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무효로 판정나기도 한다. 또한 특허 침해의 경우 피고는 특허를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침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관련 통계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에서 침해자가 특허를 모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1.76% 또는 약 4%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타인의 특허를 모방하거나 무임승차할 부정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EU FTA에서는 지재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중개자(intermediary)를 상대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중개자란 지재권 침해자가 침해 행위에 어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 서비스를 제공한 자를 말하며, 여기서 지재권은 특허권을 제외한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을 말한다(10.46:1조). 중개자의 범위는 각국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나, 침해품의 배달자나 배포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포함해야 한다(10.46:1조의 각주 20). 중개자에 배달자나 배포자까지 포함할 경우, 가령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회사나 우체부를 상대로 한 배달금지 가처분이 가능하게 되며, 지리적 표시 제도를 위반한 표시가 부착된 와인이나 치즈의 배송업체를 상대로 배송금지 가처분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9년 9월 17일자 판결에서 중국에서 생산한 엠피3 플레이어를 독일로 운반하는 항공택배 회사를 상대로 한 독일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엠피3 플레이어의 폐기(세관을 통한 폐기)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2) 한-미 FTA

한-EU FTA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한미 FTA는 의약품 허가 절차와 특허를 연계하고,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실시 발동 후 2년 동안 사용되지 않는 특허권의 취소 규정을 없애고(18.8:4조), 특허청의 심사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권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18.8:6조),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 보호하는 현행 상표법과 달리 소리 상표나 냄새 상표도 보호해야 하고,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누군가 무단 해독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수신하여 사용한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18.7:1조),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복제권)의 통제 대상으로 하고(18.4:1조),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교재의 무단 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강화를 약속하고(부속서한), 지재권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와, 저작권·상표권 침해 혐의 상품 등과 증거 서류의 압수 제도를 도입하고, 저작권 침해품이나 상표 침해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 또는 도구는 이것이 침해에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폐기하도록 정하며, 침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자의 주장만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했으며,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을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국경조치에서는 역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저작권·상표권 침해 혐의 상품의 통관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권과 사법부의 재량권을 침해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영상 저작물의 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 뿐만 아니라, 녹화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예비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 가운데,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한국 정부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특허권의 합리적 보호가 아니라 사권의 보호를 위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값싼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어떤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의약품 이외에도 많다. 가령 자동차는 일정한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을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과 무관한 특허침해 여부를 이유로 자동차의 판매나 운행을 막을 수 없는데,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허가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이상한 제도가 탄생한 것은 미국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 때문이었다. 지구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며, 나머지 일부 국가는 모두 미국과의 FTA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은 무려 73%나 되고, 이 가운데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56%,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이 46%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2008년까지 유효약리성분의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제네릭 의약품 발매 14개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발매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총 48건 중 37건으로 승소율이 77.1%이다. 다시 말하면,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의약품 특허의 약 80%가 결국에는 무효로 판명난다. 만약 특허권을 침해하는 의약품이 시판되어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송에 든 비용도 승소하면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약 80%에 가까운 무효율을 보이는 의약품 특허의 허가 연계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결국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국민건강보험료는 내는 전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이유로 한 사이트 폐쇄를 가능하게 한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된 어떠한 FTA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무지막지한 내용으로 의무이행이 한국에만 부여되는 불평등 조항이기도 하다. 부속서한에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란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즉,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폐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P2P나 웹 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물론 포털 사이트, 검색 서비스 사이트 심지어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까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부속 서한은 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형식이 아니므로(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경우 협상문에는 보통 “사법 당국은 …을 명령한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함), 행정명령을 통한 사이트 폐쇄까지 포함할 수 있다.

3) P2P 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

우리나라에서 P2P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다툼은 소리바다 사건을 통하여 정리된 바 있다.

대법원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MP3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하드 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상의 복제행위라고 보고, 다운로드를 받을 때 소리바다 프로그램상 ‘디폴트’로 설정한(프로그램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다운로드 폴더를 변경할 수는 있다) ‘공유폴더’에 다운로드받아 그냥 방치한 행위를 MP3파일을 다른 P2P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내 공유폴더에 담아둔 행위를 평가한 다음 이를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복제’가 아니라고 보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에 대하여는 침해방조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였다.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되는 파일은 단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창작한 저작물이나 기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법원은 서비스운영자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요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용이하게 해 주는 경우에도 방조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간통죄와 여관주인의 책임을 거론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여관에서 간통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을 그 여관주인이 예상할 수 있다고 하여 여관주인에게 부부관계를 확인할 의무나 각 방을 수색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으며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여관을 폐쇄하라고 할 수도 없다는 비유를 제기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5 가처분 사건에서는 소리바다5 서비스운영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소리바다5 서비스운영자가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취한 것은 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적극적 필터링 의무’를 요구하였다. 적극적 필터링을 강제한다면, 저작권자가 그 유통을 허용한 음원파일만이 P2P서비스를 통해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음원의 공유를 원하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의 유통까지도 억제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4)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하여 특히 가.항으로 접근통제조치를 신설하고 있고, 제104조의 2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하여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화에 대하여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저작권자가 계속 해당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공정이용 등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데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가되면 이러한 공정이

용 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한계를 넘어서는 기본권충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5) 저작권 침해 삼진아웃제

2009. 4. 22.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소위 ‘삼진아웃제’를 규정한 제133조의 2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불법복제물 등)가 전송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 제133조의 3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등의 시정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삼진아웃제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위헌판결의 요지는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삼진아웃제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 기본권의 범주에 인터넷 접속권이 포함된다. 둘째, 행정기관이 형사처벌의 성격을 띤 제재를 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의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넷째, 삼진아웃제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프랑스 인권선언 조항에 위배된다. 의회가 형사사건에서 유죄추정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삼진아웃을 면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가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입증책임이 뒤바뀐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견해는 우리 법상의 저작권 침해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판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거들이다.

6)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범법자가 양산되고, ‘저작권 자살’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형사 처벌은 한국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만 저작권 침해와 형사처벌이 문제로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 제도가 저작권자의 새로운 영업모델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는데, 저작권자나 일부 법률사무소가 형식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다음, 고소 취하의 대가로 합의금을 받아 내는 데에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악용이 가능한 이유는 경미한 침해 행위이든 중대한 침해 행위이든 형식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일단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저작권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건수가 200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고소된 사건 중 실제로 기소된 사건은 5%도 채 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2007년 0.1%, 2008년 0.0088%, 2009년 0.075%로 극히 미미하다.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처분되는데 절반 이상이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한 후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아래 표의 ‘공소권 없음’). 이 통계는 저작권 침해죄가 범죄자의 처벌보다는 저작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이로 인해 저작권 제도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저작권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접수			14,838 (290)	18,227 (611)	25,027 (2,832)	90,979 (21,953)	89,410 (22,169)
처 리	기소	구공판	19 (0)	23 (0)	26 (0)	8 (0)	67 (0)
		구약식	1,486 (19)	1,473 (31)	1,637 (76)	3,975 (118)	3,956 (17)
	불기소	각하	1,013 (19)	1,445 (20)	3,836 (313)	12,446 (1,575)	24,702 (13,707)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공소권 없음	9,481 (155)	11,426 (389)	15,195 (1,865)	51,255 (11,855)	27,150 (2,936)
		기소유예	215 (33)	1,865 (118)	1,986 (379)	16,520 (6,056)	24,676 (4,243)
		기타	2,624 (64)	1,995 (53)	2,347 (199)	6,775 (2,349)	8,859 (1,266)

그리고 이러한 무분별한 고소의 피해를 청소년이 입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09년 검찰 발표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전체 청소년 중 15%가 저작권법 위반 때문이었다. 또한 전체 범죄 중 청소년 피의자율은 6%인데,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무려 23%에 이른다. 이 문제를 인식하여 검찰은 2008년 7월부터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실시하였고(2009년 3월부터 성인으로 확대), 2009년부터는 우발적인 저작권 침해인 경우 1회에 한해 고소장을 각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 인해 2010년에는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09년에 비해 약 1/10로 줄기도 했다.

7) 과도한 저작권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2009. 2. 2. 다섯살 된 어린아이가 의자에 앉아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이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 및 위 노래의 가사중 후렴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용자의 네이버 블로그가 네이버 비디오 사이트에 링크되었다. 이에 대하여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송 중단을 네이버에 요청하여 해당 블로그 글은 임시조치로 게시가 중단되었다. 이후 이용자는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의거, 저작권자가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위자료 20만원을 인정하여 주었다.¹⁹⁷⁾

이 판결은 정당한 이용자의 권리행사에 대해서도 과도한 저작권 주장을 하여 온 관행이 위법하였음을 명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19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사건

8) 게임 셧다운제

2011. 5. 19. 공포된 「청소년보호법」(2011. 5. 19. 개정법률 제10659호)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6의 2호에서 게임셧다운제를 신설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규정하였다. 게임셧다운제는 한국 이외에 중국과 태국에서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모두 폐기된 제도로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¹⁹⁸⁾ 우리나라에서도여성가족부가셧다운제시행평가를위탁조사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이용감소효과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난 바 있다.¹⁹⁹⁾

게임셧다운제의 주된 입법목적은 온라인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에 헌법상의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가족의 자율성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양육권침해,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팽팽하게 존재하였다.²⁰⁰⁾ 게임셧다운제의 위헌적인 논의가분분한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청소년과 청소년의 학부모가 2011년 10월 28일에, 또 비슷한 시기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요 게임사를 중심으로 하여 해당 조항에 대하여 각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앞에서 본 여러 저작권 이슈와 달리 게임셧다운제도는 세계적 흐름과 관계없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이슈의 특성은 다르지만 문화형성에 참여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본 제도들과 유사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198) 중국-태국, 셧다운제 실효성 없어 폐기, 한국경제 2012. 11. 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02833v>

199) 전병헌 의원실 보도자료 “실태조사 셧다운후 청소년 심야게임감소 0.3%에 불과”, <http://blog.daum.net/bhjun/5509059>

200)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황성기, 한림법학포럼 2005. 11. 139-156



제3장 |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제1절 진정 · 상담 · 민원 현황	139
제2절 권고 · 의견표명 및 진정 · 상담 내용	146

제1절 진정·상담·민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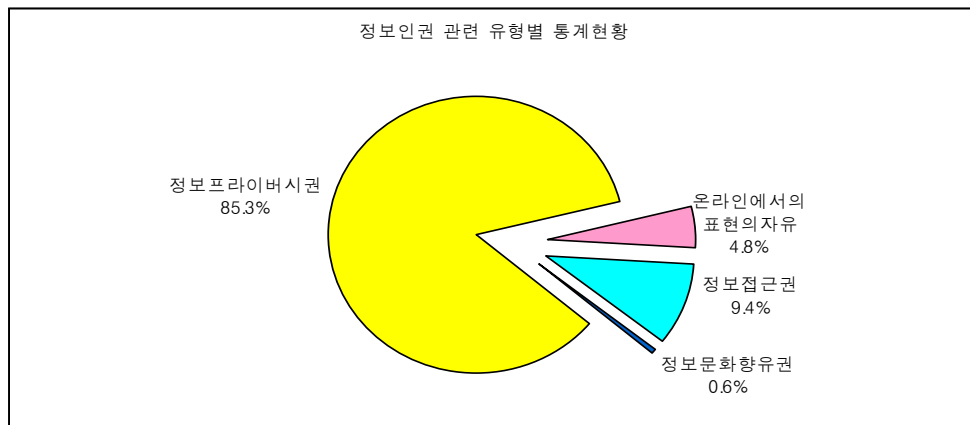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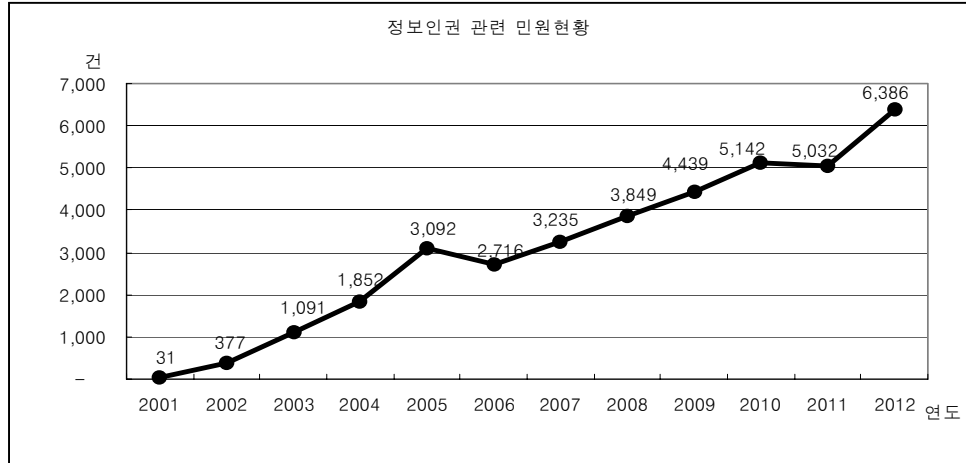
1. 정보인권 관련 전체적 민원 현황

정보인권 관련 진정·민원·상담·안내는 2001년 31건 이후 2012년말 6,38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최근 7년간 민원현황도 2006년 2,716건에서 2008년 3,849건, 2010년 5,142건, 2012년 6,8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 비하여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정보인권 관련 전체 누적통계는 약 3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처리가 31,749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접근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유형별 정보인권 관련 민원 현황

2012.12.31. 기준(건, %)

연도	정보프라이버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합계
2001	30	-	-	1	31
2002	315	20	42	0	377
2003	904	55	129	3	1,091
2004	1,518	99	229	6	1,852
2005	2,665	139	271	17	3,092
2006	2,332	140	237	7	2,716
2007	2,719	191	312	13	3,235
2008	3,261	182	374	32	3,849
2009	3,854	187	371	27	4,439
2010	4,357	266	482	37	5,142
2011	4,235	220	545	32	5,032
2012	5,559	279	512	36	6,386
합계	31,749	1,778	3,504	211	37,242
비율	85.3	4.8	9.4	0.6	100.0



〈표 15〉 민원 종류별 정보인권 관련 민원 현황

구분	진정	상담	민원	안내	합계
정보프라이버시권	4,703	10,105	9,579	7,092	31,479
온라인에서의 표현의자유	178	510	1,052	38	1,778
정보접근권	983	704	1,139	678	3,504
정보문화향유권	22	62	119	8	211
합계	5,886	11,381	11,889	7,816	36,972
비율	15.9	30.8	32.2	21.1	100.0

2. 정보프라이버시권

정보프라이버시권은 감시나 감청, 피해 사실이나 피의 사실의 유포,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출 등으로 인권침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한 사례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CCTV’, ‘위치정보’, ‘감시’, ‘감청’, ‘공표’, ‘신상공개’, ‘유출’, ‘지문’, ‘초상권’을 검색어로 정보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민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1년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진정/사건이 4,703건, 상담이 10,105건, 민원이 9,579건, 안내가 7,092건으로 총 31,479건의 민원이 있었다.

연도별로는 2001년에 31건, 2002년 315건, 2004년 1,518건, 2006년 1,695건, 2008년 3,261건, 2010년 4,357건, 2012년 5,55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하여 30%이상 민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비하여 3.7배, 2006년에 비하여 약 2.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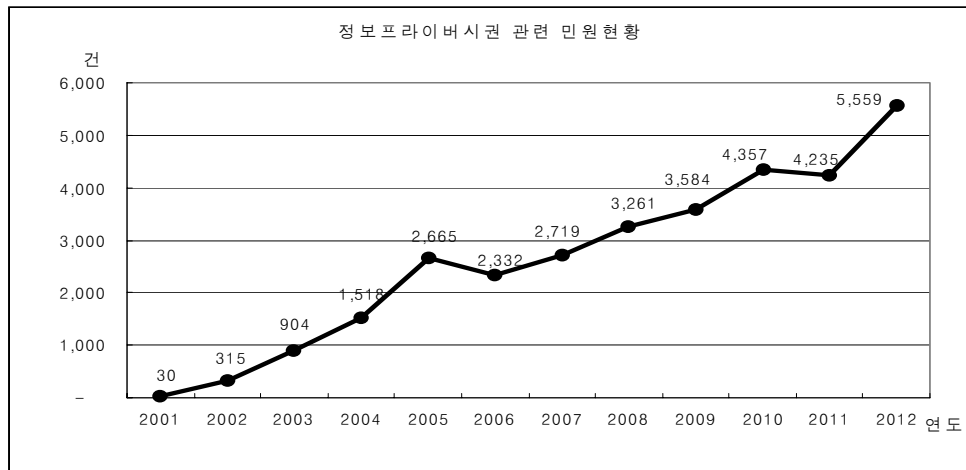
특히, 2001년부터 2012년 말까지 CCTV 관련한 민원현황은 전체 6,120건으로, 진정 1,485건, 상담 3,010건, 민원 1,434건, 안내 19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현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현황

2012.12.31. 기준 (건)

연도	진정	상담	민원	안내	합계
2001	19	10	1	0	30
2002	114	196	5	0	315
2003	131	445	70	258	904
2004	195	521	273	529	1,518
2005	337	791	869	668	2,665
2006	235	655	637	805	2,332
2007	449	680	829	761	2,719
2008	518	953	823	967	3,261
2009	628	1,096	915	945	3,584
2010	823	1,442	1,167	925	4,357
2011	567	1,416	1,469	783	4,235
2012	687	1,900	2,521	451	5,559

연도	진정	상담	민원	안내	합계
합계	4,703	10,105	9,579	7,092	31,479
비율	14.9	32.1	30.4	22.5	100.0



3.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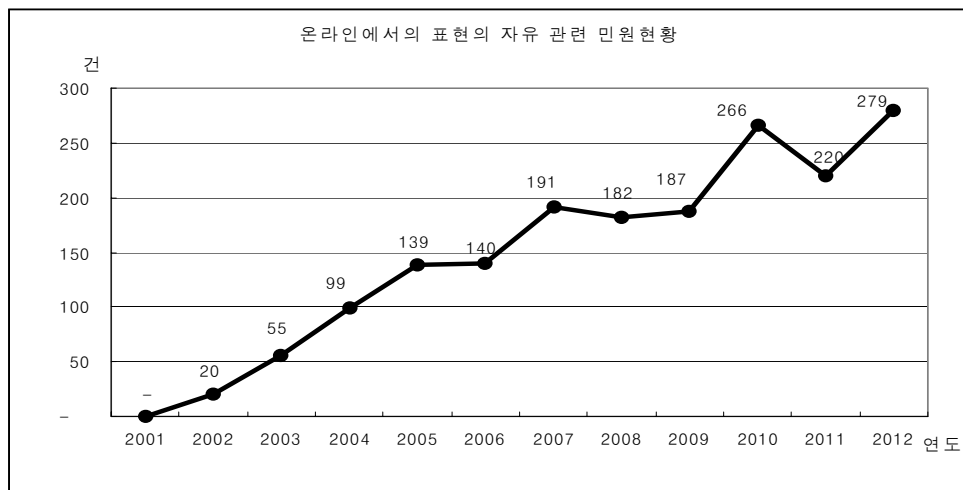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게시판 및 댓글을 이용함에 있어, 혹은 작성한 글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한 사례를 포함한다. ‘게시판’, ‘댓글’, ‘글쓰기’를 검색어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민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1년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진정/사건이 178건, 상담이 510건, 민원이 1,052건, 안내가 38건으로 총 1,778건의 민원이 있었다.

연도별로는 2002년에 20건, 2004년 55건, 2006년 140건, 2008년 182건, 2010년 266건, 2012년 279건으로 2012년은 2006년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7〉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민원 현황

2012.12.31.기준(건)

연도	진정	상답	민원	안내	합계
2001	-	-	-	0	-
2002	3	17	-	0	20
2003	3	36	13	3	55
2004	9	37	49	4	99
2005	8	34	94	3	139
2006	14	28	96	2	140
2007	25	35	128	3	191
2008	19	45	108	10	182
2009	26	53	105	3	187
2010	22	65	174	5	266
2011	15	67	136	2	220
2012	34	93	149	3	279
합계	178	510	1,052	38	1,778
비율	10.0	28.7	59.2	2.1	100.0



4. 정보접근권 및 정보문화향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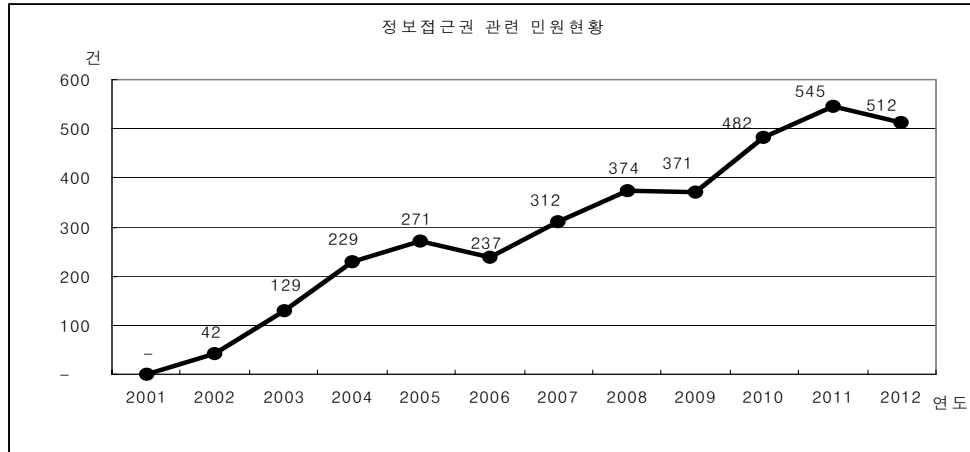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진정사건은 정보공개 및 청구 등에서 인권 침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한 사례를 포함하여 ‘정보공개’, ‘웹접근’, ‘정보격차’, ‘인터넷 접속’을 검색어로 정보접근권에 관한 민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1년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진정/사건이 983건, 상담 704건, 민원 1,139건, 안내 678건으로 전체적으로는 3,50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2년 42건, 2004년 229건, 2006년 237건, 2008년 374건, 2010년 482건, 2012년 512건으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은 2006년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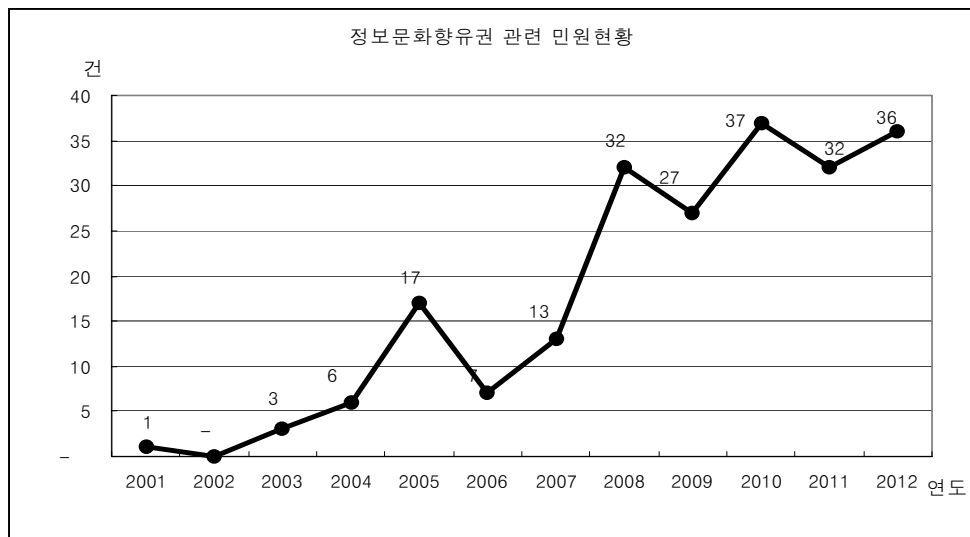
〈표 18〉 정보접근권 관련 민원 현황

2012.12.31.기준(건)

연도	진정	상담	민원	안내	합계
2001	-	-	-	0	-
2002	26	15	1	0	42
2003	57	36	29	7	129
2004	84	47	44	54	229
2005	83	60	84	44	271
2006	67	35	90	45	237
2007	119	33	114	46	312
2008	112	58	158	46	374
2009	109	82	120	60	371
2010	107	100	143	132	482
2011	137	97	187	124	545
2012	82	141	169	120	512
합계	983	704	1,139	678	3,504
비율	28.1	20.1	32.5	19.3	100.0



또한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한 민원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셋다운’ 등으로 검색한 결과 2001년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진정 22건, 상담이 62건, 민원이 119건, 안내 8건으로 총 211건의 민원이 있었다. 연도별로는 2004년 6건, 2005년 17건, 2006년 7건, 2007년 13건, 2008년 32건, 2009년 27건, 2010년 37건, 2011년 32건, 2012년 36건으로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하여서는 민원이 전체의 56%로 가장 많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권고 · 의견표명 및 진정 · 상담 내용

1. 정보인권 각 영역별 주요 권고 및 상담 사례

(1) 정보프라이버시권

1) CCTV 촬영에 의한 인권 침해 권고(화상정보)

사무실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TV 설치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의 CCTV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2009.8.24.자 09진인545)

2) 전신스캐너에 의한 인권 침해 권고 (신체정보)

국토해양부의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은 명백하고,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의 운용에 있어서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반면에 전신검색장비의 설치 및 운용으로 기존의 검색장비로 탐색할 수 없는 물질을 검색할 수는 있겠으나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도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도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잉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많으므로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2010.6.10.자)

3)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개인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안티 국민연금 활동을 벌여온 네티즌들과 언론 매체 등에서 국민연금을 비판한 사람들과 그 배우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다수 직원들이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가입자들의 개인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무분별한 가입자 개인정보 열람 및 특정 가입자의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인해 다수 국민들의 자기

정보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2006.2.27자 05진인1055)

4)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생체정보)

국립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람실 좌석 이용 시 학생들의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운영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 국립대학교 총장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2005.7.25자 04진인3372)

5) 사업장 전자감시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전자감시)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GP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시가 행해지고, 이로 인해 감시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누구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과 개별 사업장 단위의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전자감시가 허용되는 명확한 범위, 전자감시의 도입과 운영에서 필수적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장치, 전자감시로 수집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내용, 사용자의 전자감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사이버모욕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대한 의견표명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형법상의 모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려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위원회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의 명예감정의 훼손

손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형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떠한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삼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국적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친고죄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인권위 2009.2.5.자)

2)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한 개선 권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허용되지만 단순한 의사표시도 계속 유포시킬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계속이 몇 회를 말하는 것인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으며,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풍자하여 웃음을 이끌어 내는 표현형식인 패러디물을 창작하여 게시하거나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금지함에 있어서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운용기준은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커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UCC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 2009.10.29.자)

3)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대한 법원 의견 제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는 본 규정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본 규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광범위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재판소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담당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규정의 위헌성과 유죄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출을 결정하였다.(인권위 2009.10.29.자)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터넷논객인 일명 ‘미네르바’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토론방에 게시한 글이 허위통신이라는 이유로 형사기소된 사안에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9.4.20. 선고 2009고단304판결)

4) 미니홈피에 올린 의견 때문에 퇴학처분 상담사례

OO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싸이월드 개인 미니홈피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이 좌파성향이라며 2008년 8월 퇴교조치를 당했습니다. 퇴교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2주 만에 퇴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퇴교조치 후 OO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 사건 때문에 입학 불허 조치를 받았습니다. 3개월 과정을 남기고 퇴교를 당해, 다음주 월요일에 일반 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명예회복을 시켜 줄 수 있는지 알고자 방문했습니다.

5) 블로그 글에 대한 삭제 요청 상담사례

평소 병역비리에 대한 분노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바 있습니다. 보충역 4급 사유가 없는데 사위행위 등을 동원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부류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병무청은 해당 글에 소개된 사위행위(이미 언론을 통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수법)를 통한 병역감면 수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글의 삭제요청 공문을 포털 측에 발송했습니다.

병무청은 제 글이 불법적인 글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제목이 적절치 않으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제 글을 보고 병역기피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군대를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제목이 적절치 못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겁먹은 포털 측은 병무청 요구를 들어주면 복원시켜 주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국가기관과 기업의 횡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받는 셈입니다.

(3) 정보접근권

1) 사내게시판 이용 차별 시정 권고

한국방송공사 관현악단원은 업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달리 사내 인트라넷의 게시판 열람 및 게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사내 인트라넷은 전자결재부터 게시판까지 모든 정보를 집약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서 많은 직원들이 자유 의견을 수시로 게시하고, 원활하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면서 소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자유로운 의사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서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였다.(인권위 2009.6.3. 08진차564)

2) 정보 공개거부에 의한 알권리 침해 권고

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정보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OO군수에게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인 행정장치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원장에게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2005.5.9.자 05진인191)

3) 정보폐기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교원임용지원자들의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심사총괄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여,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공개결정정보 중 교원임용지원자들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등의 서류들을 자체 폐기하고 이 자료들에 대하여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것에 대하여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OO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할 것

을 권고하였으며, OO대학 총장에게 정보를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잡이 대책 수립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 2008.7.17.자 07진인4983)

4)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웹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2009.11.) 결과 여전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고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맹 시각장애인들의 웹 사이트 접근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보인권 관련 정책 권고 현황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관련, 그간 인권위에서 실시한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출은 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표명이 많았으며, 통신비밀, CCTV, QR Code, 전신스캐너 등에 대한 정책 권고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및 범위에 관한 권고 등이 있었다.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그간 인권위에서 실시한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출의 대표적 사례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도입 반대, UCC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지양,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삭제, 국가보안법의 폐지,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재고 등이 있었다.

〈표 19〉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관련 정책권고 현황

(2011.12.31. 기준)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1	02.06.10.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의	사법경찰관의 최장 12시간 긴급감청부분 삭제
2	02.07.30.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따른 정책 권고	•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을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정 •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사유 재검토 • 관계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권고
3	02.08.1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정보통신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에 전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규정 내용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권고
4	02.09.25.	보험업법개정법률(안)제165조에 대한 의견 제출	보험사기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 삭제 요청
5	03.03.10.	경찰청 주민별 얼굴사진 자료 수신에 관한 의견 표명	소년의 보호관찰 등에 대한 조희와 회보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6	03.03.10.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소년의 보호관찰 등에 대한 조희와 회보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7	03.05.12.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	NEIS의 개발영역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영역, 교원인사기록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
8	03.10.22.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 규칙중개정규칙(안)안에 대한 의견 표명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사무처리규칙(안)의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5개 항목(신체사항 중 혈액형, 가족사항 중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표명
9	03.10.22.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 •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 •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 • 상당수 조항들에 헌법,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빈약하므로 입법 반대
10	03.11.10.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 위원회의 의견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에서 보장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이 이루어져야 함.
11	04.02.16.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인터넷 언론 선거개시관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
12	04.04.19.	공공기관의 방범CCTV 설치·운영 관련 정책권고	방범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방범CCTV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출 것을 권고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13	04.07.05.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 관한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정안 제2조제1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 기관 등 공공기관의 직무를 회망하는 자”를 모법인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1호의 범위로 축소하여 규정할 것과 제정안 제12조 제1항 인물정보의 타 기관 제공 시 정보제공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정보 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활용 후 폐기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
14	04.09.06.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제11조제1항의 유전자검사 대상을 좀 더 명확히 명시하여 실시 대상 아동의 범주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제11조제2항의 유전자검사 결과 관리, 유전자 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항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15	04.10.11.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등에 대한 의견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3 및 제25조,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를 위원회의 NEIS 관련 권고에 부합하도록 개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료 작성, 관리에 대한 사전고지 조항 도입 등
16	05.02.14.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	•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 • 국가안보 상 필요한 자에 한해 신원조사 실시 • 배후사상관계 등 연좌제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 • 신원조사 대상자의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을 보장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17	05.02.28.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세부정보등록제도는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침해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청소년과 그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가해자의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는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개정안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규정은 범죄의 경중에 대한 차이, 제한되는 직업과 범죄와의 관련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할 것을 의견 표명
18	05.08.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검토의견 표명	경미한 행정의무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단, 법률안의 내용 중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규정, 과태료 미납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의 명령을 가능토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있어, 동 법률안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19	06.04.10.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정보의 제공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음.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0	07.01.0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아동성폭력의 객체에 남자아동을 포함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규정하며, 일반적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적 열람제도를 도입하는 전부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고, 법관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 금지 조항 및 유전자정보등록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함
21	07.02.15.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의료권 및 생존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일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도 존재하며,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 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위반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히 추진할 것을 권고함
22	07.04.12.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여권정보를 구체화하고, 여권발급을 위한 생체정보 수집 시 지문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여권발급에 필요 최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수집한 생체 정보는 저장관리 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여권법 시행령 상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고 하며, 여권발급관련 여권 기재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여권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
23	07.07.19.	5대강 유역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에서 개인위치정보 침해 관련 의견표명	환경지킴이 위치정보 수집·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단계에서의 보완, 위치정보 사용·처리의 관리 및 보안조치 및 정보제공사실 통지 및 열람·정정요구 등의 권리보장 조치 마련을 권고함
24	07.08.16.	징병검사 자료의 복무기관 제공에 대한 의견	복무기관에서는 병역법상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병종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받으면 족하며, 공익근무요원의 질병이나 수형사실은 원칙적으로 복무기관에서 업무상 필요하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이 정보수집 및 수집정보의 관리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표명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25	07.09.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등에 대한 과제자료,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신설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26	07.11.01.	행정정보 공동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견 표명	행정정보의 이용기관 중 금융기관 배제, 이용기관의 범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 정보 이용 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절차,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27	07.11.12.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	사업장에서 확산되는 전자감시로 인한 근로자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권고
28	07.12.1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영장주의 위반의 문제가 있어 해당 부분의 삭제하도록 의견표명
29	08.04.03.	국방자격법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방자격제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국방자격 정보체계의 운영에 있어 국방자격취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여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30	08.05.15.	카이어링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과 과태료 체납사실이 기재된 비닐류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의 카이어링제도는 행정법상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차량소유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비닐류스티커의 임의적 제거 금지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써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31	08.07.31.	국가정보원의 신원진술서 서식에 대한 의견 표명	국가정보원장에게 약식 신원진술서 항목 중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명 및 직위'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32	08.11.06.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부착사업에 대한 의견표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보급 사업은 치매노인의 각종 안전사고 및 실종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제도임이 인정되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신상 정보의 노출시 범죄의 대상이 되어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책임 하에 개인신상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 하거나 총괄하는 등 개인 정보보호 방안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의 『2008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합치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33	08.12.24.	국세청의 개인정보이용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	병무청의 현역병 복무기록(복무기간, 성명, 주민 번호)은 개인정보이므로, 공익상 정보제공 요청이라도 대상범위를 최대한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4	09.01.22.	통신비밀보호법(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한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지하도록 하고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영업의 자유, 국민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위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구비토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 하는 것이므로 삭제
35	09.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하고, 도입하더라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36	09.02.05.	형법(장윤석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통망법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바람직, 사이버모욕죄도 국회 문방위에 제출되어 있는 정통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과 중복 되므로 삭제가 바람직함.
37	09.03.19.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질병관리본부장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권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표명
38	09.06.04.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김소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지문채취 규정의 도입 이외에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지문채취대상 치매노인의 선정기준 및 적용절차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39	09.06.0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의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할 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인터넷 공간의 특성, 그리고 본 규정이 초래하는 위와 같은 위축효과를 고려하여 본 규정의 인권침해성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40	09.08.27.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사전 예방 대책 의견표명	노숙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보다 심화 시키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서울시 노숙인 명의도용 사전 예방 대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표명
41	09.10.29.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거 UCC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운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권고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42	09.11.0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법률안은公安사범에 대한 정의규정 및 법무부장관에게 公安사범관련자료를 별도로 관리 활용 공조 권한을 부여하는 바 그 표현이 막연하고 중요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과잉 제한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표명
43	09.1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부안)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표명	현행 법에 정해진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기준(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서 “유형별”, “10만 명 이상”을 삭제하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44	09.12.0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정부입법 발의) 중 CCTV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 표명	•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4조의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항의 광범위한 위임 규정은 CCTV에 대한 실질적 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 • 제7항 설치·운영에 관한 위탁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방법용 CCTV의 경우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 • CCTV의 설치·운영이 보편화되면서 사생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통합관리 시 사후적 관리보다 등록제·허가제 등과 같은 예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45	09.12.24.	개인정보보호법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표명건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성 요소를 흡결하여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이혜훈안과 변재일안을 중심으로 하여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 개인소송 저장권 규정과 위원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도를 제고하는 방안 및 조직상 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46	10.03.25.	병적 증명서 발급시 과거의 병역면탈 범죄사실의 기재, 발급 방안에 대한 의견	병무청의 병역면탈 범죄 방지를 위해서 병적증명서에 병역법 위반 사실의 기재, 발급하는 방안의 인권침해 여부 질의에 대하여 동 방안은 공개인의 일반적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47	10.05.1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불심검문(직무질문) 규정 등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차량 등 적재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의2)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진술 거부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불소지가 크므로 위 규정들이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 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48	10.06.10.	국내공항 전신검색장치 설치 금지 권고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신검색장비의 설치에 과잉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어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
49	10.06.17.	공개수배제도에 대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	•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인터넷 공개수배의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 • 경찰청장에게 공개수배와 관련하여, • 가. 공개수배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과, •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수배자의 사진을 피의자 검거 후 즉시 삭제할 것과, •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수배자의 사진을 복제·유포할 수 없도록 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할 것과, • 라. 공개수배 대상자 선정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
50	10.08.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자우편의 압수·수색 및 통신제한조치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 규정 마련,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도의 획득을 피할 것,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할 것 등을 의견표명
51	10.09.0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관련 개정권고	법무부장관에게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기소유예처분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52	10.9.30.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가 게시자에 대한 사전 고지, 청문절차를 결여하고 심의대상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행정권력의 자의적인 표현게시물 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검열의 위험성이 있어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
53	10.11.25.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개선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점검계획을 포함한 공중위생 시설의 CCTV 설치·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목욕장내 시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하며, 중요 부위나 전부 노출 장소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 행안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사전등록제와 같은 민간부문 CCTV에 대한 사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음성녹음 기능이 탑재된 CCTV 설치를 금지하며, 보안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
54	10.12.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 8806호 법률안에서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사진 및 거주지역 인근에 대한 정보 등이 자료 첨부 규정은 당사자와 가족 및 인근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음 • 고지정보에 있어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공개정보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55	11.04.28.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침해관련의견표명	• QRCode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시간만을 확인하는 위치정보사용에 대한 것은 전자감시에 의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움 • 요양보호사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활용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동의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가서비스수급권자의 RFID태그 부착시에는 수급권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명시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부동의 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것 • 태그카드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요양보호사의 개인휴대폰을 강제하는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방법을 고려할 것을 의견표명함.
56	11.07.14.	시립도서관 열람실내 CCTV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하여 CCTV가 설치된 열람실과 그렇지 않은 열람실을 분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연번	의결일	권고(의견표명)제목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CCTV로 인하여 열람실을 사용하는 동안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및 지속적 감시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만큼 CCTV 이외의 대체수단을 통하여 분실 및 도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할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
57	11.07.25.	2011헌마28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견제출 건(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등의 사건이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수형자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함.
58	11.10.27.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제도 개선 권고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과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입각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59	11.10.27.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학생들의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3. 정보인권 관련 진정 사건 결정 사례

1) 정보프라이버시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하였던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해 발생했던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혹은 전과기록과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 과도한 개인정보 및 신체정보의 수집,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피해사실 및 피의사실의 공표 및 노출 등에 의해 발생한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차별과 관련한 사건으로는 전과를 이유로 교원임용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차별 사례와 성적 지향 사실 유출로 인한 차별 피해사례들이 있었다.

〈표 20〉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진정사례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04직인37	2004.12.27.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과 피해자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속기관장에게 당해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할 것과 경고조치, 징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숙지시키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인1379	2006.5.18.	전과기록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1] 검사인 피진정인이 고소사건 처리 시 조사의 편의상 진정 외 ○○○에게 진정인의 송치의견서를 복사하여 주었는데 이에 진정인의 전과기록 부분도 같이 복사되어 교부되어 결과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었는데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1]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의 전과가 기록된 송치의견서가 수사 중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		
06진인82	2006.3.23.	전과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1]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범죄혐의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범죄혐의 유무나 과거 범죄경력 등을 설명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1]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05진인3507	2006.8.10.	사생활 침해
[1]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피의자의 학력, 경력, 가족상황, 재산상황, 종교 등을 신문하는 것이 적법 절차 위배 및 사생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1]의 내용이 적법절차 위배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7조를 개정할 것, 검찰총장에게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하는 ‘피의자통계원표’의 관련 항목을 삭제할 것,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4조 간이피의자신문조서 서식(제65호)의 내용 및 그 사용을 홍보하고, 「범죄수사규칙」 제17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05진인730	2006.10.13.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의 건
[1] 경찰서의 피의사실공표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 [1]의 내용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의 감독기관인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서(기관)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실의 기소 전 공표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수사단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06진인1070	2006.10.13.	사생활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의 건
[1] 피진정인이 신분확인과 동행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진정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도 무시하고 지문조화를 실시한 것은 피진정인 등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피진정인의 사촌형에게 진정인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토록 한 것은 진정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진정인들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사례		
05진인1819	2006.4.26.	결정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진정인들이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자 진정인의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손가락을 펴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팔을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되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한 사례		
06진인49	2006.9.25.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1] 수사자료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행위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2] 개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한 전기통신사에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의 발신내역만을 제공하는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 허가 하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수사목적상 제공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진술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한 것은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고치를 권고		
06진인1689	2006.11.10.	함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컴퓨터 3대 등을 압수해 간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사례		
05진인1913	2005.9.26.	수용자 사망사건관련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교정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극히 높은 수용자에 대해 CCTV 거실수용 또는 대면거호 등 교정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수용자자살사고방지대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인2503	2005.11.28.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1] ○○교도소장에게 교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상황발생시 유기적 대응체제 및 CCTV 모니터 감시 근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당직교감에게는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CCTV근무자에게는 CCTV모니터 감시 근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2]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 등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		
04진인3782	2005.6.27.	구치소의 인격권 침해 등
구치소 소장이 수용자의 신상정보를 다른 수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방치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보장 및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구치소 소장에게는 관련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인2712	2006.4.10.	영치금 사용 시 지문날인에 의한 인권침해
영치금품 사용 또는 수령에 있어 손도장 날인만을 강요하고 수용자가 손도장 날인을 거부한다고 하여 영치금품 사용 또는 수령을 불허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피진정인들에게 제도 및 관행전반에 대한 개선과 손도장날인 이외의 방법을 통해 영치금품 사용 및 수령을 허용해줄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인3581	2006.5.8.	군인의 의료접근권 침해
피해자들이 만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하는 등 군복무중 의료접근권 침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진료기록 성실작성 및 보관의무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를 구축하고,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하고 군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04진인4529	2005.3.14.	○○○병원 신체의 자유침해
피진정인이 진정함의 운용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을 위반하였고, 병원 내 CCTV를 설치·운용함에 있어 환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인619	2005.8.16.	수용환경과 관련한 인권침해
의료원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편지를 열람한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원장에게 당해 의사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04작인2외21건 병합결정	2005.2.28.	공공도서관 무인좌석발급기 관련 인권침해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운영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요구 등 운영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공공도서관 이용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04진인4414	2005.3.28.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의 진정인 계좌 거래내역 조회 및 지급정지 조치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되어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사례		
05진인0046,05진인004 7병합결정	2005.4.6.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입영신청 시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부모 등 타인이 재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인터넷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한 사례		
04진인4270	2005.5.9.	스마트카드 학생증 강제발급에 따른 인권 침해
대학교 총장에게 스마트카드 겸 학생증의 발급은 희망자에 한하여 발급하고, 이의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례		
05진인546	2005.5.9.	정보공개청구 비밀번호와 관련한 인권침해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 청구인이 최초 입력한 비밀번호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사례		
04진인4195	2005.6.7.	인격권 침해 등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이 조리종사원들의 대화나 행동을 촬영·녹취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기관장인 학장에게 당해 공무원을 서면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04진인3372	2005.7.25.	대학도서관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국립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람실 좌석 이용 시 학생들의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 국립대학교 총장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04진인2622	2005.8.31.	사회복지시설내 CCTV 설치, 운영 등 인권침해
[1] 사회복지시설 내에 복도와 방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그 운용과정에서 인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2]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을 분리 배치한 행위는 차별행위이고, 대기발령,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무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무기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당해 시설에 모든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시설에 대하여 경고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인185	2005.9.12.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지방자치단체 징계위원회 개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징계대상자의 실명으로 공개사과문을 게시하게 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인146,05진인162, 05진인1826병합	2006.2.2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과도한 개인정보 열람 등 인권침해
안티 국민연금활동을 벌여온 네티즌들과 언론 매체 등에서 국민연금을 비판한 사람들과 그 배우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단의 다수 직원들이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가입자들의 개인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공단 이사장에게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가입자 정보열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인2066	2006.2.27.	개인정보 불법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정보보유기관에 정식 공문절차 없이 얼굴 확인 목적으로 사진을 입수하여 사진전단지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진정인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사례		
05진인3547	2006.6.7.	CCTV 설치에 의한 인권침해
○○천의 CCTV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그 설치에 대한 사전·사후 고지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사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사례		
05진인2880	2006.10.13.	은행제휴 학생증 발급에 의한 인권침해
[1] 피진정인이 학생증 발급 시 은행계좌개설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의 개인정보도 일괄적으로 은행에 제공해 온 것은 사생활 자유의 침해로 판단 됨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계좌를 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안내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은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과 학생증을 스마트카드 형태로 변경할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할 시에 반드시 학생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한 사례		
06진인1671	2006.10.13.	사생활의 비밀침해
피진정인이 학교 ○○교사의 학생 강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실명을 기재한 유인물을 전교생에게 배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같은 유인물 내용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진정기관의 상급기관에게,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사례		
05진인3716	2006.11.10.	사생활의 비밀 침해
피진정인이 진정내용 약식사건의 진정인 등 피고인들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진정인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07진인683	2007.6.5.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경찰의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하여 동의 없이 밤샘조사 및 DNA의 검사용으로 타액을 재취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사례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06진인2221	2007.1.15.	결정 피의사실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검)
○○경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이 관계인에게 피의사실을 설명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므로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04진인851	2007.2.21.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이메일 주소로 타인 및 공공기관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체포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직·간접적인 연고 관계를 넘어서 제3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추적 조사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08진인1739	2008.7.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08진인1442	2008.8.12.	호송과정에서의 수용자 신변노출에 의한 인격권침해
수용자 호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안면을 가릴 수 있는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수용자 호송업무를 개선하고 호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06진인2621	2007.10.8.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97명의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키고,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11명의 행려 환자들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모든 환자 및 가족들을 기망하여 이불 및 환의 세탁비 등의 제물을 편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2] 김○○외 11명의 환자들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입원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3]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입·퇴원 관련사실을 허위 기재한 사실과 의료비 부당청구 및 부당징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감사 등을 통해 환수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서 경고조치를 취하고 감독 관청에서는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령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당한 강제입원, 서면통지의무 위반, 환자 권리 미고지, 계속 인원심사청구 누락, 과도한 CCTV 설치, 부당한 전화제한, 부당한 작업치료, 부당한 소모품비 징수, 환자에 의한 감시 등의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실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07진인3026	2008.5.29.	인격권 침해 등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관련 방송을 함으로써 진정인이 부적절한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한 사항을 주변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알게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행정지도 시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06진인1740	2007.4.2.	행정처분 기록 기재에 의한 인권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의사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과, 약사법시행 규칙 제94조 제3항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		
07진인2270	2008.5.8.	개인정보요구에 의한 인권침해
노동부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진정인의 전화상담내용과 상관없이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바, 이는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입력을 강요하고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부장관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07진인3520	2008.5.29.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작업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 주소 란에 진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명기하여 고지서를 송부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에게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해당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8진인170	2008.5.29.	진정서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피신고회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류 유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해 민원서류 사본이 유출된 것은 민원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07진인3236・3239・08진인831	2008.5.29.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수령 시 지문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는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07진인3637	2008.7.17.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인권침해
학교관련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진단내용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누출함으로써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교육청 교육장에게 ○○초등학교에 대하여 기관주의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		
08진인910	2008.7.17.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행정기관 간 민원인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문건 취급 시 부주의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것은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 및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8진인3398	2008.11.13.	전화상담센터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국세청장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08진인0143	2008.11.13.	개인정보 열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		
02진인1869	2003-02-10	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
영창에 입감중이 수감자에 대해 입감주체인 공군 헌병대에서는 신입감 3일 동안 일체의 행동을 제한하여 수감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창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수감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공군규정 중 수감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영창관리규정의 개정 및 삭제를 권고		
03진인453	2004-06-28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수사과정에서 검증영장 없이 진정인의 지문을 강제채취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지문채취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특별교양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		
03진인833	2004-10-12	구금시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와 관련된 법규의 개정 등 적절한 개선조치를 권고		
03진인5104	2004-07-14	CCTV 감시 및 신상명세서 작성에 의한 인권침해
수감자들에게 신상명세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협박, 통제하는 등 인권을 침해, CCTV를 통해 표적감시 하고 관규위반을 적발하려는 등 편파단속을 행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 결과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의 중요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신상명세서의 작성을 강요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행위로 판단되어 관련서류 작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 수용자 사생활 보호에 관한 직원 교육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기타 진정에 대한 것은 증거부족으로 각하.		
03진인6416	2004-07-14	도서관 CCTV 및 게시물 삭제에 의한 인권침해
도서관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강요하였으며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고 게시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거론, 휴게공간에서도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홈페이지에 게시자의 실명을 거론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담당자에 대해 주의 및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기타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기각.		
04진인851	2007-02-21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진정인의 인터넷 ID, 이메일 위치추적, 전화감청 및 위장 메일 발송,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미행과 감시 등에 관한 진정은 피해자들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되어 관련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기타 진정내용에 대한 것은 기각, 각하.		
04진인2880	2005-03-14	개인정보보호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노트북 좌석운영시간, 직원 근무태도, 사물함 이용 등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등 98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러한 내용과 진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수정하여 피진정인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였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감안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지역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		
04진인4494	2005-04-06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
감금 및 퇴원 불허, 입퇴원 절차위반 및 불법행위, 과도한 약물투여, 무분별한 CCTV설치, 전화통화 및 면회금지, 재활치료 요구 불허, 허위진단서 발급, 쇠창살 설치 및 비상구 폐쇄 등에 관한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입원환자들의 퇴원심사 청구 불허, 입퇴원상의 불법행위 등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피진정인에게 퇴원 및 처우개선을 원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한 심사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		
05진인146	2006-02-27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안티 국민연금 활동을 벌여온 네티즌들과 언론 매체 등에서 국민연금을 비판한 사람들과 그 배우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다수 직원들이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가입자들의 개인정보통제권과 프라이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버시를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무분별한 가입자 개인정보 열람 및 특정 가입자의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인해 다수 국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제도적 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5진인1055	2005-08-31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 집적, 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05진인3340	2006-10-13	개인정보 열람에 의한 인권침해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가족이 열람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원한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예외적 비공개 규정은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특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판단되므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예외적 비공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주민등록법시행령」의 개정을 권고		
06진인3128	2007-12-18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와 폭행사건 관련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체포과정, 조사받는 과정을 임의로 촬영 하여 공중파 프로그램에 방송한 것은 경찰의 협조 및 동행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장애인인 진정인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한 것이란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결정하고 동행하도록 한 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과 같이 죄가 경미함에도 장애인간 다툼의 특이사건이라는 이유로 방송사측에 택일 되었다면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좀더 신중한 접근을 했어야 하는 점, 영장집행 사법경찰관 외 자가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소지를 임의로 출입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바 인천남동경찰서장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사 등의 촬영협조 요청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07진인387	2008-05-08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위 법이 계속 존치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 변호인 등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보안분실”을 설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조사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피의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행사, 수사를 하던 중 위 진정인들 및 그 배우자들의 전자메일 및 전화통화를 수 회 임의로 감청하여 각 사생활의 비밀 등을 각 침해, 진정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조선일보 등 언론 기관에 공표함으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진정인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진정인들이 각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여러 자료들 및 컴퓨터를 무차별적으로 압수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보안분실”에서 진정인들을 인치 시켜 조사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외부인과의 접견·교통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07진인454	2007-06-05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노상에서 주차단속요원과 불미스런 일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현장사진을 인터넷에 피해자의 얼굴과 자동차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등 진정인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에 관한 사진자료를 시청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하였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과 차량번호 등이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명예권 및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대전광역시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07진인658	2008-01-25	CCTV설치에 의한 인권침해
과도한 CCTV 설치, 부당한 강제입원 등으로 인해 진정인을 포함 피진정병원 입원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인권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도한 CCTV 설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피해자를 불법입원 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07진인3236	2008-05-29	인감증명서 수령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진정인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였으나 동사무소 관계자가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동사무소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발급을 거부.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무인을 반드시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도록 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관할 행정기관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는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고 있으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08진인2856	2008-10-28	개인정보 수집 및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교도관이 교정기관 전산망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수번, 사진, 죄명, 출소일)를 입수한 후 그 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알려주었고 그 수용자가 진정인에게 편지를 보내음. 진정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편지를 더 받게 되었음. 교도관 이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진정인은 원하지 않는 편지를 계속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상정보, 범죄경력 등에 관한 내용을 유출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바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의 신상정보가 다른 수용자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인 인천구치소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교도관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8진인3904	2009-08-24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대학졸업에 맞춰 사관후보생시험에 지원하려 관련 구비서류를 알아보니 신원진술서를 해군과 공군에서는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음. 신원진술서 양식에는 신장, 체중, 본인 및 배우자와 부모님재산, 사회단체 활동이력, 가족 및 친척의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직장명(직위)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내용과 범위가 광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장교임용예정자가 아닌 학사장교 후보생 지원자에 대하여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학사사관 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을 임용예정자에게 요구 하는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는 단계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		
08진인4280	2008-12-08	피의사실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자로 진정인의 애인이 진정인을 면회 신청할 때에 진정인의 범죄사실(집단총기 폭력사범)을 면회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누설하여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범죄사실을 진정인 애인에게 공개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관해서 피진정인이 조사관 앞에서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유의하겠다고 하자 진정인이 이를 이해하여 본 진정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		
09진인545	2009-08-24	CCTV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기관은 CCTV를 설치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진정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피진정기관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 및 조사관 등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CCTV설치 시 사전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 후에도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09진인1095	2009-06-08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의 수용생활 중 처남이 진정인에게 소포를 보내오자 피진정인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외부물품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마약관련 수용자에게는 규정상 지급되지 않음”이라고 적시된 반송안내문을 소포에 동봉하여 이를 반송. 이로 인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진정인의 처가식구들에게 노출됨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피진정인의 행위는 범죄경력 자료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영등포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하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9진인1865	2009-07-17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헤어 졌는데, 30분 후 피진정인은 교통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차적을 조회한 후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진정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보험사고 처리를 하라고 했으며, 남동생에게 진정인 남편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음성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07진인683	2007.6.5.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경찰의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하여 동의 없이 밤샘조사 및 DNA의 검사용으로 타액을 채취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사례		
06진인2221	2007.1.15.	결정 피의사실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검)
○○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이 관계인에게 피의사실을 설명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므로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04진인851	2007.2.21.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이메일 주소로 타인 및 공공기관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 수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적극) [2] 체포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직·간접적인 연고 관계를 넘어서 제3자에게 까지 과도하게 추적 조사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적극)		
08진인1739	2008.7.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06진인2832	2007.3.12.	알몸검신에 의한 인권침해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범위, 검사실시 인원,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소속 구금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이 설치된 시설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2] ○○교도소장에게 가림막 없는 조사실에서 알몸검사를 실시한 교감 조○○, 교위 정○○, 교위 박○○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		
08진인1442	2008.8.12.	호송과정에서의 수용자 신변노출에 의한 인격권침해
수용자 호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안면을 가릴 수 있는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수용자 호송업무를 개선하고 호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06진인2621	2007.10.8.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97명의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키고,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11명의 행려 환자들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모든 환자 및 가족들을 기망하여 이불 및 환의 세탁비 등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2] 김○○외 11명의 환자들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입원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3]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입·퇴원 관련사실을 허위기재한 사실과 의료비 부당 청구 및 부당 징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감사 등을 통해 환수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서 경고조치를 취하고 감독 관청에서는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령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당한 강제입원, 서면통지의무 위반, 환자 권리 미고지, 계속 입원심사청구 누락, 과도한 CCTV 설치, 부당한 전화제한, 부당한 작업치료, 부당한 소모품비 징수, 환자에 의한 감시 등의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07진인3026	2008. 5. 29.	인격권 침해 등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관련 방송을 함으로써 진정인이 부적절한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한 사항을 주변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알게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행정지도 시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07진인5047	2008. 7. 3.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 및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교무회의 석상에서 노조관련활동을 하려고 하는 진정인을 특별히 지명하여 진정인의 보수 내지 진정인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의 합계액을 밝히고 그러한 인건비의 부담이 높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권 및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07진인4677	2008. 9. 25.	부당한 학교폭력 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학교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할 긴급한 사정이나 최후의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이므로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06진인1740	2007.4.2.	행정처분 기록 기재에 의한 인권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의사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과,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		
07진인2270	2008.5.8.	개인정보요구에 의한 인권침해
노동부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진정인의 전화상담내용과 상관없이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바, 이는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입력을 강요하고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부장관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07진인3520	2008.5.29.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작업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 주소란에 진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명기하여 고지서를 송부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에게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해당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8진인170	2008.5.29.	진정서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피신고회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류 유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해 민원서류 사본이 유출된 것은 민원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07진인3236·3239· 08진인831	2008.5.29.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수령 시 지문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07진인3637	2008.7.17.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인권침해
학교관련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진단내용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누출함으로써 「헌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교육청 교육장에게 ○○초등학교에 대하여 기관주의조치를 취할 것과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		
07진인4983	2008.7.17.	정보 폐기에 의한 인권침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기록물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록물 및 이에 담겨진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위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할 것과 ○○대학교 총장에게 정보를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8진인910	2008.7.17.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행정기관 간 민원인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문건 취급 시 부주의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것은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사건번호	날짜	사례명
하는 행위이므로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 및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8진안3398	2008. 11.13.	전화상담센터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국세청장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08진인0143	2008. 11.13.	개인정보 열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		
02진차47	2003.1.27.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원임용차별
[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을 교원으로 임용제청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 사례 [2] 국정원장이 신원조사 회보를 함에 있어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위반 전역을 통보하여 진정인이 불이익을 받게 한 행위는 행복추구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 [3] 사면·복권된 범죄 전력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신원조사 회보를 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차87	2006.6.26.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1] 동성애자 사병인 진정인의 성적 지향 등의 개인 정보가 군부대 내에 유출되어 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2] 전역심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로서 진정인에게 동성애자와 키스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것이 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진정인에게 정신과 치료 및 HIV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것이 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4] 진정인이 부대원들에 의해 성희롱을 당하였는지 여부(적극) [5] 「군형법」, 「군인사법시행규칙」,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등의 관련 법규정들이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지 여부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발생했던 침해의 대표적 사례들로는 온라인 게시판 글에 대한 삭제, 자유게시판에 비판적 글 게시로 인한 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진정이 많았다.

〈표 21〉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 사례

10-진정-0395800	2010.07.05.	게시판 글 게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진정요지 : 인천계양도서관 공익근무요원의 팔에 문신이 있어서 진정인이 이를 도서관 게시판에 올렸는데, 공익요원이 화가 난다며 2010. 7. 3. 오후 5시경 1층 화장실앞 복도에서 자신의 팔을 잡아 끌었고, 7. 4.에는 책가방을 잡아 끌었음.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음.		
10-진정-0352300	2010.06.23.	내부 게시판 글에 의한 해임처분
진정요지 : 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경찰서장은 2010. 4. 2. 진정인을 2008년부터 2010. 2월까지 수화에 걸쳐 지시불이행 및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하였는바, 이는 진정인이 경찰 내부게시판에 민원성 글을 올린 것에 악의를 품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권리구제를 원함.		
10-진정-0107900	2010.03.19.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인은 2010. 3. 18. 15:00경 도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글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금지단어와 비방글이 있다는 이유로 글을 게재하지 못 하였음. 진정인이 도청 ○○과에 항의한 후 ○○과 직원의 메일로 파일을 보냈고 직원이 진정인의 글을 대신 올려 주었으나 글이 게재된 지 5분 후에 임의로 삭제가 되었음.		
10-진정-0090100	2010.03.11.	동의없는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 삭제
1.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시민참여 - 자유토론방에 이우고등학교 3학년 이룩 학생이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2리 골프장 건설에 반대합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많은 네티즌들이 올린 글에 공감을 하고 실명으로 댓글을 달았음. 그러나, 당초 올려진 글과 댓글이 같은 달 4. 19:00경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 달 5. 10:00경 피진정기관 (정보통신과-지역정보담당)으로 전화를 걸어, 작성자 동의 없이 삭제된 이유를 묻자, 피진정인은 “프로그램 오류로 제3자에 의하여 삭제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하여 삭제되었다.”는 답변임. 자유토론방이란 시민이 시정에 대하여 비판과 의견을 제시하는 자율적인 공간으로 선량한 시민의 의견이 외부의 제3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삭제되었다면 삭제된 글은 복구하고, 외부의 제3자를 색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임.		

3) 정보접근권

정보접근권과 관련해 발생했던 침해의 대표적 사례들로는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의 불응을 통한 알권리 침해, 정보의 접근 제한 및 규제, 정보의 관리부실 및 폐기로 인한 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정보접근권과 관련해 발생했던 차별의 대표적 사례는 장애 및 병력에 의한 정보접근의 제한 및 불편, 노조원의 인터넷과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 및 제한, 신분에 따른 정보 접근성 제한 등의 사례가 있었다.

〈표 22〉 정보접근권 관련 진정 사례

05진인2723	2006.1.23.	부당한 징벌처분 등
○○교도소 측이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에게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여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인59	2005.11.28.	부당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신문 열람 금지는 가능하나, 징벌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문열람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신문열람을 금지하여 진정인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05진인191	2005.5.9.	정보공개거부에 의한 알권리 침해
피진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여 진정인이 공개청구한 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폐기한 것은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적법절차 및 표현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한 사례		
07진인4983	2008.7.17.	정보 폐기에 의한 인권침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기록물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록물 및 이에 담겨진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위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 경고할 것과 ○○대학교 총장에게 정보를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04진차115	2004.10.25.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제도개선 의견표명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임의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06진차395,06 진차831병합결정	2007.4.30.	한국방송공사 자원관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차별
[1] 한국방송공사 사내 인트라넷 코비스 게시판 사용 권한을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면서 자원관리원에 대하여는 게시물 게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적극) [2] 자원관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차별인지 여부(소극)		
05진인112	2005-05-09	인터넷 접속 차단에 의한 인권침해
공무원노조파업과 관련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접속을 할 수 없도록 일괄 차단시킨것은 통신의 자유 및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노조 홈페이지에 실명이 거론된 글이 올라오면 관리자가 이것을 익명처리하게 하고 노조홈페이지 관리자가 판단하여 비방,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며 피진정인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고 접속제한조치를 해제할 것을 권고		
05진차285	2006-06-19	인터넷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군청 내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 본부 완도군 지부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차단조치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이며 공무원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출산을 앞둔 조합원을 완도군 내 섬인 노화읍으로 전보발령 하였던 바, 이는 차별행위라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군청 내 전산망을 통해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군청 내 전산망을 통해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 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을 시정하도록 권고, 기타 사항은 각하		

4. 정보인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1) 정보프라이버시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하였던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인권위에 상담을 요청했던 대표적 사례들이다. 상담사례 역시 결정사례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혹은 전과기록과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 과도한 개인정보 및 신체정보의 수집,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피해사실 및 피의사실의 공표 및 노출 등에 의한 피해를 상담한 사례들이 많았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권위에 상담을 요청했던 대표적 사례들은 인터넷 게시판, 댓글, 글쓰기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 상담이 많았다.

또한 정보접근권과 관련해 인권위에 상담을 요청했던 대표적 사례들이다. 수용시설의 의무기록 공개청구 거부, 수용자의 자살과 관련해 CCTV공개 요청 거부로 인한 유가족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표 23〉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담: 휴대폰 통화목록까지 확인하다니요. 얼마 전 친구와 약속시간에 늦어 통화하며 안영역 앞을 급히 지나는 중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요구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PDA로 제 신상정보를 확인하더군요. 그러고는 다시 “잠깐 휴대폰 좀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휴대폰의 통화목록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벌금 이력조차 없습니다. 불심검문이란 것이 애초에 범죄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불심검문에 걸린 것도 불쾌한데, 주민등록번호로 범죄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면 보내 주어야지 남의 휴대폰 목록을 확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불심검문에 대해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로 항의하니, 밖에서 만나서 얘기하자며 반말 투로 말하더군요.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담: 압수수색영장 없이 어린 딸과 부인의 DNA까지 조사했습니다. 제가 평소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그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난당한 차량이 금은방을 터는 데 이용됐으며 ○○경찰서에서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담당형사는 도난당한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게 CCTV에 촬영됐다면 밤 9시경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방으로 들어와 장롱 등을 수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DNA 조사를 해야 한다면 저와 부인 그리고 두 딸까지 4명의 타액을 채취하고 운동화를 가지고 갔습니다. 차량 도난당한 사람을 오히려 범인 취급하면서 위협적으로 조사하고, 영장도 없이 이와 같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합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마약범에 대한 소변 채취
상담: 강제로 소변을 보게 하고, 체모를 뽑아갔어요.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지난 7월 어느 날 저녁 9시 30분경 ○○경찰서 소속 경찰 3명이 제가 일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와서 소변과 체모를 채취하려고 하더군요. 영장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니 안 되면 강제로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약 전과가 있지만, 영장 없이는 못 하겠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저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소변을 보게 하고 체모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동의서를 받더군요. 일련의 과정은 제 동거인과 포장마차 맞은 편 노래방의 형님이 모두 봤습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직권남용
		상담: 형사가 주변에 피의사실을 유포하며 합의를 강요하고 있어요. 형사 처벌로 1년을 복역하고 2008년 9월 출소하였습니다. 지난 6월경 담당형사 P는 제 약혼녀에게 전화하여 이미 복역한 사건에 대해 합의중용을 하였습니다. 약혼녀의 아는 언니를 공범으로 모는 등 주변인들에게 피의사실을 알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약혼녀와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까지 합의를 중용해 어머니께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까지 한 사건인데, 합의를 중용하고 피의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직권남용을 한 P형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상담: 경찰이 혐의만으로 남편의 온 주변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2009년 5월, ○○경찰서 경찰관이 마약전과가 있는 남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 이름을 대며 마약 판매자나 사는 곳을 알려달라는 등 과거 전력을 전혀 모르는 회사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후, 또 경찰들이 남편 회사로 찾아왔고, 수사 의뢰서를 회사에 발송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퇴사 처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옆집을 찾아가 “이런 사람이 사느냐,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느냐?” 등 집안 환경에 대하여 묻고 ○○경찰서에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로 이웃들이 “남편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기에 경찰이 찾아오느냐?”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 처리된 점에 대해 항의하자 J경찰관은 “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라고 답변했습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1인 시위 방해
		상담: 1인 시위하는 이들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에 불만을 가진 철거민들의 대표 5명이 번갈아 가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청 직원들이 1인 시위를 방해하였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이 날마다 1인 시위자들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항의해도 계속 사진을 찍어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인권위에서 초상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상담: 수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 가족들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교사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를 모두 기록하여 엑셀파일로 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에 소속된 수천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가족들의 정보를 파일로 만들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인권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상담: 학교에서 매년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적어 내립니다. 국·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입학 대 가정통신문에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작성하도록 하더군요. 그런데 입학 때뿐만 아니라 학년이 바뀔 때마다 부모의 직업과 학력, 가정형편을 적어 내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열람
상담: 경찰이 학교에 학생들의 신상정보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학교가 학생들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하더군요. 경찰이 학교로 찾아와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신상정보와 학부모들의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회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들과 협조관계를 고려하다보니 처신이 어렵다고 합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며 피의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마약사범으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집을 방문했는데 저는 외출한 상황이었습니니다. 보호관찰관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보호관찰대상자라는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요즘 어떠하냐?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약사범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면서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위치정보 피해사례
장애인 활동하는 시간과 장소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1급 지체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을 수기로 기재 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전자바우처가 시행되면서 활동보조인의 정확한 서비스 시간과 장소가 곧바로 보건 복지가족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본인의 이동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청합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CCTV와 사생활 보호
상담: 어린이집은 ‘트루먼쇼’가 아닙니다! 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학부모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허브를 따서 학부모 들이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어린이집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 니다. CCTV인 만큼 저장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개방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방문하라고 하였으나 굳이 인터넷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조만간 학부모와 회사관계자, 교사가 참석해 회의를 하고 설치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
상담: 출근부를 없애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J지자체 ○○○의 노조지부장입니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지자체에서는 출근부를 없애는 방법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직이고 추과근무수당도 없는 상태인데 단지 출퇴근을 체크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생각되어 전화를 했습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장애인 복지카드의 개인정보 침해
상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입니다. 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 지하철을 탈 때 “무료입니다(우대권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공공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쾌하고,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지카드는 교통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도 구매할 수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뒷면에 장애의 사유(병명)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교복이름표 노출 피해
		상담 : 중·고등학생의 교복에 이름표를 꼭 달아야 하나? 자녀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의 교복에 이름표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측에 아이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이 싫다고 하면 학교에서만 이름표를 달고 집에 갈 때 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2008-2009	정보프라이버시	CCTV 설치 등 다양한 침해
		상담: CCTV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병동에 입원했다가 얼마 전 퇴원했는데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우선 제가 다른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병원의 방장이 다른 환자들을 내보내고 문을 잠근 다음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방에 CCTV가 있어 간호사가 폭행 사실을 볼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고, 그 뒤에도 전혀 제재나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끼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환자들에게 청소와 빨래 등을 시켰고, 감사가 나오면 환자 20%정도를 외부로 빼돌렸습니다. 의사 진료는 극히 형식적이었고, 병원 보호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독방에 환자를 가두고 24시간 이상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입원한지 2주 동안은 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정함 위에 CCTV를 설치해놓고 누가 진정함을 이용하면 보호사가 와서 왜 썼느냐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2008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전과기록 공개
		1. 2007년 2월경 벌점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결정이 나와 2007년 5월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와 운전면허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피정구인인 ○○경찰서에서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본인의 자택에 배달함. 본인의 답변서를 본 결과 본인의 전과기록이 상세히 나타나 있었으며 또한 배우자가 전과기록을 보고 심히 다투었으며 현재 가정파탄이 날 정도임. 2. ○○경찰서 답변서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이의 및 부당성을 제시하면 되지 본인의(신용정보) 전과 기록까지 출력하여 본인의 자택에 발송하여 본인 및 제3자에게 노출되어 본인은 현재 막대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
2008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내담자는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28일) ○○지방경찰청에서 중국유학생 모두를 상담하겠다고 공문을 가지고 왔음. 상담 이유는 입국 경로와 유학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챙기고 있는 업체를 발굴하기 위함이라고 했음. 중국 유학생은 모두 강제로 상담에 응해야 하고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강제로 심지문을 강요당했음. 어제부터 내일까지 ○○대학에 다니고 있는 90명 정도의 모든 학생을 상담할 계획이라고 함. 현재까지 30명의 유학생이 상담을 한 후 심지문을 찍었음.
2008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수배전단 회수 지연
		1. 내담자는 2년 전에 경찰에 수배되었다가 자수하여 형 집행을 완료하고 출소하였다 함. 2. 내담자는 다방에서 자신의 수배전단이 회수되지 않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 전화했다 함.
2008	정보프라이버시	정신병원 환경개선 요구
		1. 내담자는 알코올중독 환자로 ○○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음. 2. 해당 병원에서 한 달 소모품비로 5만원을 내게 하고 그 내역 중 환자복과 침구류 세탁비가 4만2천원이라고 함. 병원에서 환자복과 침구류 세탁비를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3. 환자들은 재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쇼핑백 접기를 함. 이렇게 하면 얼마간의 작업비가 있는데 그 돈으로 환자들은 담배를 사서 피우거나 간식으로 사용함. 한달에 2~3만원 하는 그 돈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루고 있음. 4.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지체환자의 경우 타 환자가 돌봄. 대소변 치우는 것은 물론 그 빨래까지 시키고 있음. 즉, 담배를 제한시키면서 환자를 돌볼 때, 제한된 담배를 주겠다고 그걸 미끼로 환자를 이용하는 것임. 5. 환자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상태를 매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CCTV까지 갖춰놓고 환자들한테 이러한 일을 시키고 있음. 이 밖에도 여러 이상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한번에 다 들춰내기가 힘들.
2008	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1. 내담자는 (주)○○운수의 마을버스 운전사이고,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임. 2007년 7월경 ○○구청에 소속회사인 (주)○○운수에 대하여 차량을 3~4시간 정도밖에 운행 안하는 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함. 2. 이후 ○○구청 직원이 위 자필 날인한 진정서를 회사 측 요구로 그대로 복사하여 회사 측에 제공하였고, 회사 측은 위 진정서를 그대로 사내에 부착하여 내담자를 음해하였음. 3. 위 진정서의 유출에 대하여 ○○구청 관련 담당자의 징계 및 손해배상을 원함. 4. (주)○○의 관리부장은 차내 CCTV를 이용, 버스 내에서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하여 과태료와 면허취소처분 등을 내리도록 경찰서에 고발함. 차내 CCTV는 버스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인데 내담자를 해고 내지는 징계를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임.
2008	정보프라이버시	학생징계 공표 시 개인정보 유출
		1. 내담자의 자녀는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음. 학교는 자녀의 이름과 학년, 반, 번을 공시하고 죄명과 징계결과를 교내 4군데에 공표를 했음. 2. 아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인적사항을 공지하는 것은 부당함.
2008	정보프라이버시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1. 내담자는 사업을 하다가 일이 잘 못 되어 피고인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며칠 전 재판기일을 우편으로 통지 받았음. 2. 그런데 같은 사건에 연루 되었으나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적혀있었음. 본인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다는 것이 몹시 기분이 나쁨.
2008	정보프라이버시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부 관련 인권침해
		1. 내담자는 재혼을 했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 재혼을 해서 아들은 지금의 부인이 자신의 엄마로 알고 있음. 2.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여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고 보니, 아들의 친모 이름이 적혀있고 내담자의 현 부인은 없음.
2008	정보프라이버시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
		내담자의 지인이 ○○○백화점에 청소용역으로 일하고 있음. 회사는 출퇴근 시에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
2007	정보프라이버시	벌금납부와 관련한 인권 침해
		1. 내담자는 2006.8. 경 ○○지방검찰청에서 벌금형(50만원)을 받았는데,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휴대폰으로 3통의 안내문자(고지서 발급 방법 안내 등)가 들어왔고, 기한이 지나자마자 4통의 문자(전국지명수배, 형집행)가 들어왔음. 2. 벌금 50만원인데 거의 공갈 협박 수준임. 벌금을 납부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협박 수준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3.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왔음. 조서를 작성할 때도 다른 번호를 알려줬는데 알려주지 않은 휴대전화까지 알아내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문제임.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2007	정보프라이버시	검찰의 개인정보 누출에 의한 인권침해
1. 내담자는 졸업논문 대필 문제로 ○○지검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음. 그런데 약식명령서에는 같은 문제로 약식명령을 받은 5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회사명과 사건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약식명령서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2007	정보프라이버시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내담자는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교수를 강간치상혐의로 ○○지검에 2006.9. 고소했음. 검찰은 수사하면서 기자에게 내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건관련 취재를 승인하여 보도가 되었으며, 실명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은 내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2. 교수가 피해자인 내담자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여 내담자도 다시 무고로 맞고소를 하게 되었음. 담당 검사는 계속하여 내담자에게 강간치상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하고 회유하였음. 결국 내담자는 취하를 하게 되었음. 3. 검찰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해자 관련 사실 언론 누설과 고소취하 강요 등에 대한 조사를 바람.		
2007	정보프라이버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1. 내담자는 1996~2006년 사이 십여 건의 사건으로 수사와 형을 받았으나, 사건의 대부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 의해 수사경력자료표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것임. 2. 위 법 제8조의 2는 2005년 신설된 것인데, 현재까지 수사경력자료표에서 그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음.		
2007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피의자 십지문 전자채취
1. 내담자는 노조간부로,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 2.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전자 십지문 채취를 요구함.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피의자는 모두 채취하는 것이라 함.		
2007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1. 내담자는 성폭력 피해자임. 올 1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은 제3자가 없는 공간에서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 중 다른 직원들이 와서 사건을 보고 가는 등의 피해를 입음. 내담자는 그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어 뛰쳐나감. 2.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조사 중 검사 2인과 계장 2인, 다른 조사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없었음.		
2007	정보프라이버시	정신병원의 사생활 침해
1. 내담자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은 목욕탕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음.		
2007	정보프라이버시	지방자치단체 행정실수로 인한 인권침해
1. 07.1.12.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내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다른 사람에게 발급하였음. 금전적인 피해는 없으나 사생활이 노출되었는데, 직원이 사과하지 않음. 2. 이에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법원에서 고의성이 없는 직원의 실수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함.		
2007	정보프라이버시	교사의 사생활 침해
1. 내담자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교사가 신학기라 가족 상황 조사를 한다며 아이들 모두가 있는 앞에서 “이혼한 가정 자녀들은 손들어보라.”고 함. 2. 내담자의 자녀는 상관이 없으나 교사의 이 같은 공공연한 질문이 이혼 가정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2007	정보프라이버시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1. 내담자는 길거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를 했음. 어느 날 가해자는 전화를 하여 합의해 줄 것을 강요했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지원에서 합의해보라며 이름, 나이,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했음. 2. ○○지원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모두 알려주어 제2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항의했더니 법원 직원은 가해자에게도 열람권이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했음. 성추행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2007	정보프라이버시	노동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1. 내담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여 퇴직하였는데, 이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경영해 왔음. 2. 퇴사 직후인 2006.7.10. 경 내담자는 고용보험안정센터에 실업보험 급여를 받기 위하여 상담을 하였으며, 2006.7.17.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부당해고를 신고하였음. 3. 고용보험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은 상담을 통하여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이때 내담자의 비밀은 보호된다고 하였음), 이에 내담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내담자의 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급여명세서 파일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였음. 4. 그런데 며칠 후 회사의 사장이 내담자가 우송한 서류를 내담자에게 보여주면서 회사기밀을 유출하였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였음. 내담자가 우송한 서류를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이 서류를 사장에게 넘겨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함.		
2007	정보프라이버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요구
1. 내담자는 오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부에 전화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음. 국가기관에서 민원창구를 이렇게 막아놓는 것은 부당하며 매우 기분이 나쁨.		
2006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전과자에 대한 부당한 탐문수사
1. 내담자는 ○○교도소에서 6년간 복역한 후 2004.11. 출소하였다고 함. 한 달 전 ○○경찰서에서 경찰이 찾아왔음. 당시 내담자는 집을 비우고 아이들만 집에 남아있었는데 경찰은 아이들에게 “아빠 어디 갔냐?”며 내담자의 행방을 묻고 내담자의 추리닝을 뒤졌음. 2.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역시 내담자가 집을 비우고 아내가 집에 있을 때 또 경찰이 와서 “애기 아빠 어디 갔냐?”고 묻고 내담자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함. 3. 이후 내담자가 경찰을 만났는데 경찰은 내담자에게 주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탐문수사 중임을 밝혔다고 함. 4. 내담자는 탐문수사에는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으나, 내담자가 부재중일 당시 내담자의 집에 찾아와 가족에게까지 내담자의 행방 등을 묻는 것은 부당.		
2006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전과사실 누설
1. 내담자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 속 돈과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하여 강도상해죄로 고소되었고 결국에는 재판에서 여신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음. 2. 내담자가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서 2005년 12월 15일 가족들에게 구속통지가 송달되었는데 통지서 범죄사실요지에 20여 년 전 전과 13범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내담자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처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음. 3. 내담자의 현재 범죄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데, 20여 년이 지난 과거의 전과사실을 구속통지서에 기재함으로써 가족들이 내담자의 전과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함.		
2006	정보프라이버시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1. 내담자가 벌금을 못낸 것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내담자 휴대폰에 발송했음. 내담자가 없는 사이 문자메세지를 부모님이 보게 되었고 모친은 2005.9.1. 검찰에 전화하여 담당인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으로부터 내담자의 사안을 듣게 되었음. ○○은 내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하고는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내용을 설명해 준 것임. 2. 부모님이 알게 된 것이 걱정도 되거니와 불쾌함. 검찰 직원이 기소내용을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자세히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
2006	정보프라이버시	검찰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1. 피해자는 ○○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직장 내 다른 남성공무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검찰에 고소하였고 성폭력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음. 2. 사흘 전 검찰이 가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이자 피해자의 소속기관이기도 한 ○○시 교육청에 당해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공문에는 피해자의 신분도 기재되어 있었음. 이로 인하여 직장 내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고통을 받고 있음.
2006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방범진단 시행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1. 내담자는 경찰이라고 함. 90년대 말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폐지되었던 방범 진단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다시 시행하라는 상부경찰청의 공문하달이 있었음. 2. 방범진단이란 경찰이 절도, 강도 취약지역의 주민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민의 직업이나 전화번호 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3. 절도예방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방범진단은 주민의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해하여 호응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음. 4. 방범진단 시행은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음.
2006	정보프라이버시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1. 내담자는 05.12. ○○소재 ○○병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한 달 동안 입원했었음. 2. 입원 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12시간 동안 묶어 놓고 물도 주지 않았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고 기저귀를 채운 상태로 대변도 해결하라고 했음. 3. 화장실, 샤워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음.
2006	정보프라이버시	CCTV설치로 인한 초상권 침해
		1. 내담자는 ○○소재의 ○○고등학교(공립)에 근무하는 교사임. 학교 측은 정문과 중앙 현관에 CCTV를 설치 하였음. 내담자가 문제제기를 하자, 학교 측은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 현재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학생의 90%정도와 선생님들의 5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음. 교사대표라고 학교 측이 내세웠던 교사위원 중에 교감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4명)가 반대한 사실도 있음. 2. 참고로 도교육청은 공문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음. 그런데 학교 측은 교사, 학생 등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도교육청에는 학생과 교사의 대다수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허위보고를 함. 3. 내담자는 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교감, 학년부장과 면담을 함. 교감은 시간대를 조절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였음(현재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30분 까지 운영중인데, 밤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임).
2006	정보프라이버시	인감증명 발급 시 부당한 지장 날인
		1. 내담자는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을 떼러 갔다가 본인확인 후 대장에 지장을 찍음. 2. 내담자는 이미 일차적으로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였고 도장 또는 사인으로도 충분히 이차적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장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함.
2006	정보프라이버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말소 최고방법상의 문제
		1. 내담자가 지방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 ○○동사무소 직원 ○○이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는 A4용지 크기의 통지문을 2005.11.12.일자로 아파트 현관문에 붙여두었음. 내담자는 11.14. 밤에 돌아와 이것을 발견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했으니 그 사이에 이웃 주민들이 이 글을 다 읽어보았을 것임. 2.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주민등록말소 의뢰가 들어왔고 여러 차례 사실조사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이어서 현관에 붙인 것’ 이라고 했음. 그러나 주민등록 말소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한 통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임.
2006	정보프라이버시	본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 발부
		내담자의 부인은 2004년 8월 5일 경 사망하였음. 2005년 5월 말경 ○○이란 사람이 “내담자의 부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에는 내담자의 호적등본(2005년 ○월○일 ○○구청에서 발부)과 주민등록등본(2005년 ○월○일 ○○구○○동사무소에서 발부), 초본(2005년 ○월○일 ○○구청에서 발부) 등이 첨부되어 있었음. 내담자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위임장 없이도 발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더니, 담당 직원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였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음. 그리고 ○○신용금융에서 발급 받아갔다고 하였음.
2006	정보프라이버시	법원의 약식명령 서류상의 개인정보 누설
		1. 내담자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서에 내담자를 포함하여 약식기소 된 2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음. 2. 내담자가 이에 대해 ○○지방법원에 문의하자 법원 주사보는 ‘시스템 상 일괄적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함.
2005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도청, 감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수일 전에 내담자의 조카가 유괴되었다가 이틀 만에 무사히 돌아 온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 경찰이 내담자를 도청했다는 사실을 누이에게 들었다. 경찰이 삼촌인 내담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내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 부인의 통화까지도 도청을 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05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에 의한 사생활 침해
		1. 내담자는 2003.05. 세검포탈로 구속되었다가 2004.06. 석방되었다. 석방된 이후 한달에 한번씩 관할 경찰서인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였다. 내담자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경찰은 “경찰서 규정상 출소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통상 1년은 감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2. 형을 충분히 받고 출소한 사람들을 다시 관리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2005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근무감시
		내담자는 현재 경찰 공무원으로 순찰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밤 근무에 들어갈 경우 14시간 동안(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기준)근무한다. 최근에는 순찰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범죄 현장에 지원 출동 조치를 취하게 하려고 순찰차에 GPS를 설치하였는데, 실제로는 근무 경찰들을 감시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찰차가 서 있는 동안의 시간이 체크되는데, 관할 경찰서 상급자는 왜 그 시간 동안 운행하지 않았는지의 소명을 요구하였다. GPS를 근무자들의 감시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관할 경찰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지구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근무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2005	정보프라이버시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내담자는 1년 전 절도죄로 누명을 쓰고 형사 구속되었으나, 2심 및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구속되어 피의자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2004.3. 담당자이던 ○○지검 ○○○검사가 신문 및 방송기자들을 불러 놓고 내담자를 가리키며, “저런 새끼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을 시켜야 된다.”, “중앙 방송에 띄워서 죽여 놔야 된다.” 등의 말을 하였다.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2005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 내담자는 2002년 초에 성폭행을 당하여 2003년 8월에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2003년 11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내담자는 성폭행 사건이므로 비밀리에 조사해 주기를 부탁하였으나 칸막이 하나 없는 곳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경찰서 내의 다른 사람들이 사건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다. 2. 또한 내담자가 성폭력을 당한 것을 노모가 알지 못하도록 조심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내담자의 노모(80세)를 조사하였으며, 상대방의 참고인들이 내담자의 어머니에게 내담자에 대한 성적인 모욕을 가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3. 이에 대해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출하고, 여형사의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여 여형사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낸 것을 안 담당형사는 내담자에게 전화하여 “주둥이를 문질러 놓겠다”고 내담자를 협박했다.		
2005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전과기록 미 삭제 및 공개
1. 내담자는 사문서 위조 건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중, 경찰 기록상에 과거 십여 년 전의 내담자의 전과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 기록을 경찰이 복사하여 판사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87년 4월4일 사건처분미상, 89년 폭력처분 5만원 형, 10만원 형, 기타 92년에도 벌금 전과가 있다. 십여 년 이상 된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자료가 경찰의 기록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경찰이 기록을 판사에게 넘긴 것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2005	정보프라이버시	등기부에 이혼경력 기재로 인한 인격권 침해
1. 집을 복덕방에 내어 놓았는데, 집을 보러왔던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의 집이라 꺼림직하다며 계약을 꺼렸다. 2. 문제는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에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과정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담자가 이혼 전에 남편 명의의 현재 집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던 사실, 재산분할로 집을 이전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내담자의 사생활이 쉽게 공개되고 있다. 반면에 등기소에 가면 현재 소유현황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의 소유자만 드러남으로 문제가 없었다. 3. 또한 남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후 등기필증의 맨 앞에 이혼조정서가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다.		
2004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의 지문확인 강요
내담자는 지난주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었다. 내담자를 비롯한 교육생들은 지문인식기에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입·퇴실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휴식시간이 끝나고 입실할 때에도 지문확인을 해야만 했다. 교육담당자에 의하면 교통안전교육의 대리출석자가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하였고, 휴식시간 후에 지문확인을 한 것은 중간 이탈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생은 누구나 지문확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내담자는 경찰청의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였다.		
2004	정보프라이버시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내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때, 우편엽서를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다. 우편엽서에 ‘피의자출석요구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 우체부 및 주변 이웃들이 피의자의 신분 등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담자는 우편엽서를 사용한 통보는 피의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004	정보프라이버시	검찰의 제보자 신상정보 공개
○○경찰서 경찰인 내담자는 과거 성매매알선업자였던 A에게 제보를 부탁하여, 그 결과 성매매알선업자인 B를 체포할 수 있었다. B가 조사과정에서 담당검사에게 “성매매알선업을 더 크게 하는 업주를 놔두고 나를 구속한 것은 ○○경찰서 경찰들이 관내 유락업주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담당검사는 내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담자는 담당검사에게 “제보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A의 제보사실과 신상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검사가 B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A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내담자는		

사례집연도	사례 유형	사례명
범죄사실 제보로 인해 피해를 당한 A에게는 미안하지만,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위원회에 진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004	정보프라이버시	공중목욕탕 내 CCTV설치의 위법여부 문의
내담자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탈의실에서 도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CCTV를 설치 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서울의 목욕탕들은 거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내담자가 거주하는 충남의 경우에는 아직 CCTV를 설치한 곳이 없다고 하였다. 내담자가 CCTV의 설치가 위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어 경찰서에 문의 하였더니, 경찰이 위원회를 알려주었다.		
2004	정보프라이버시	위성, 레이더 등을 아용한 감시 및 통제
내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의 머리 속에 마이크로 칩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의 생각을 통제하기도 하고 목, 배, 팔목 등에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완벽하게 조정하는 한편, 최근에는 위성,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감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보기관이 내담자를 통제, 조정하는 이유는 내담자의 EQ지수가 높아서 그 능력을 무력화 하고 또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내담자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하여 통제와 이용을 당하다 억울하게 죽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는 큰 손실이며,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인 바,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고 사실을 규명하여 구제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한편, 내담자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발생했던 침해의 대표적 사례들로는 온라인 게시판 글에 대한 삭제, 자유게시판에 비판적 글 게시로 인한 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표 24〉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주요 상담 사례

2008-2009	온라인에서의 표현의자유	미니홈피에 올린 의견 때문에 퇴학 당했어요
○○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싸이월드 개인 미니홈피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이 좌파 성향이라며 2008년 8월 퇴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퇴교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2주 만에 퇴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퇴교 조치 후 ○○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 사건 때문에 입학 불어 조치를 받았습니다. 3개월 과정을 남기고 퇴교를 당해, 다음주 월요일에 일반 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지 알고자 방문했습니다.		
2010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네이버의 글 삭제로 인한 인권침해
본인은 포탈사이트에서 이미 기사화 된 사건을 네이버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계속해서 삭제를 하고 있음. 없는 이야기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이야기를 올리는데 삭제하는 것은 부당함.		
2010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 게시판에 게시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음.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므로 인권침해 아닌지 알고 싶음.		

2010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시의 게시판 사용제한
1. ○○시에 19년째 민원인으로 싸우고 있음. ○○시와 고위직으로 지낸사람의 불법행위를 청주시가 도와주었음. 내담자가 민원을 제기하니 도시계획국장이 원상복구해줄테니 기다리라고 했음. 1995년이었음. 2. 1998년 다시 ○○시와 ○○도청에 민원제기하니, ○○시의 건축과장에게 민원해결을 해결해준다고 했음. 그러나 민원사무규칙상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민원을 제기한 경우 종결할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내부종결했음. 3. 그 이후 청주시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내담자와 부인의 이름으로 게시된 민원은 삭제됨. 인권위에서 조치하여 주1회의 게시를 할 수 있도록 되었음.		
2010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경찰공무원의 부당 해임 등
1. 내담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오전 비번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오후 18:30에 동원되어 청장 화상회의를 지구대에서 참취했고, 20:00~23:00 수색근무, 24:00 귀가, 다음날 아침 08:30에 출근하여 근무함. 2. 당시 지구대는 4교대였음. 야간근무를 마치고 쉬지도 못하여 다시 근무하게 되어 내부게시판에 올렸는데 (비번과 휴무의 개념을 아시나요?), 불평불만을 한다고 하여 해임됨. 3. 해임사유는 ① 치안센터 근무 시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문을 잠겼는데,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② 행려환자 인계시 지문을 요구하여 부당하다고 하면서 의료원측과 다퉈서 이유, ③ 절도사건 대책보고를 요구하여 다른 직원은 5분만에 끝났는데, 내담자는 1시간 20분만에 했다는 이유, ④ 신고에 의해 출동하여 인도상에 파라솔 단속을 했는데,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했는데, 무리한 단속이었다는 이유 ⑤ 내부게시판에 10여건의 불평불만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 등임.		
2010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경찰의 표현의자유 침해
1. 본인은 ○○경찰서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09. 10. 23. 파면 되었음. 파면 이유는 품위손실, 성실의무 위반임. 2. 본인은 ○○경찰서 게시판, 경찰청 토론폰방 등에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글을 약 8년 정도 꾸준히 올렸음. 그런데 감찰조사에서 3년 동안 본인이 올린 글을 조사분석한 결과 비평적이고, 조직비하적인 정제되지 않은 글이라고 했음. 3. 그리고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테이프 3개월분을 돌려보니 6회에 걸쳐 순찰근무 시간에 순찰을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면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했음. 사무실에 설치한 CCTV는 내방자들의 인권을 보고하기 위한 것인지 내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임. 4.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파면 되었음. 부당한 파면에 대해서는 소청을 제기한 상태임.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감찰조사를 받은 것은 표현의자유 침해로 생각되어 전화를 했음.		

3) 정보접근권

〈표 25〉 정보접근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2005	정보접근권	영등포 구치소의 의무기록 공개청구 거부
1. 내담자는 오래 전부터 간질을 앓아 왔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4~5차례 이상 발작을 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다. 가족들과는 이미 20년 전부터 절연한 채 혼자서 지내왔다. 이런 몸 상태로는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2. 교통비 보조를 받기 위하여 최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간질 환자인 경우에는 “간질 증상에 대해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했다는 입증서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내담자는 오랫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간질에 대한 약물 복용 치료도 대부분 교도소 내에서 받았었다.		

3. ○○구치소 수용 중에 치료받은 의무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청구를 하기위해 내담자의 아버지가 구치소측에 내담자의 의무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담당자는 “○○구치소의 의무기록은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와서 공개청구를 한다 해도 절대로 공개해 줄 수 없다. 이는 우리 소의 방침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직접 구치소에 가도 받을 수 없는 서류라고 하니, 불편한 몸인 내담자가(간질 발작 우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에 깎스한 상태)구치소에 찾아가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아 인권위로 바로 오게 되었다.

2005	정보접근권	수용자의 자살
1. 2006.8.22. ○○구치소로부터 내담자의 동생이 수감 중 자살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유서로 보아 동생이 자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치소 측의 관리책임 소홀에 대한 의혹이 많음. 구치소 측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거나 거짓인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며, 중요한 사실에 있어 동료수용자들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등 의혹이 있음. 2. 구치소 측에 CCTV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보안과장은 고장이 났다는 등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고 있음. 3. 동생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치소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 녹화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족의 알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생각함.		



제4장 |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강화	191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강화	196
제3절 정보접근권의 강화	198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의 강화	200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강화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의 통일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 중복규제와 이중감독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 가능
-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료·금융·통신 산업 간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들을 통해 검증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개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재편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으로 업무와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 예산과 인력낭비 심각
 - 동일사안에 대하여 부처마다 해석이 다르고, 상호 견제로 책임감 있는 정책추진 곤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심의·의결 기능만 존재하고 조사권도 결여되어 있어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이 미흡
- EU는 27개 회원국 모두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DPA)가 개인정보 보호 행정을 통합 집행하고, 미국도 FTC가 사실상 통일된 관할권 행사

3.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문제점 발생
 - 통합관제센터의 책임주체 불분명, CCTV 설치목적의 다목적화, 지자체·경찰·군부대 간 정보 공유 기준·조건·절차 미비, 해킹·정보유출 등에 대한 방지장치 미흡 등 설치 및 운영상 문제점 발생

- 인권단체, 개인정보전문가, 인권위원회, 관련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목적 구체화
 - 개인영상정보 공유 최소화 및 공유·제공 요건·절차 마련
 - 개별 CCTV별로 운영결과를 매년 투명하게 지역주민과 언론에 공개
 - 설치·운영 목표의 설정, 관리·운영지침 제정·운영 등에 있어서 지역주민·인권단체·지역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4. 강력범죄 피의자의 가족, 친지 등 사생활 보호장치 마련

- 강력범죄 피의자나 성범죄전력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가족, 친지, 이웃 등의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가족, 친지 등 피의자 주변인물 보호 의무 명시
 - 언론도 보도지침 등에 피의자 가족 등의 명예 보호의무 및 인터뷰·취재 기준 등 마련
- 범죄자 신상공개시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가문의 내력, 가정교육 잘못 등으로 취급하는 한국적 정서 고려

5.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개선

- 헌법상 강제처분 법정주의 및 영장주의 요청에 합치되도록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화
 -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기계적으로 선별해 압수하는 필터링제도 도입
 - 시스템 운영자 등에게 압수·수색 대상 정보만을 선별·제출하게 하는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도입
 - 복제·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환부 및 폐기 의무, 방법, 절차 등 마련
 - 디지털 압수·수색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후 통지의무제도 도입
 -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없이, 또는 별건 영장에 의하여 수

집된 경우에는 그 증거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명백할 경우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도록 제도화

-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원칙적 영장주의 적용 등
- 형사소송법상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매체압수」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의 불가시성과 불가독성을 이유로 한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수색 관행 불변
- 디지털 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보장장치 마련

-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장치 마련
 - 시스템에 기록·저장되는 형사사법 정보의 종류, 범위, 보존기간 등을 정확하게 공개
 - 수집·저장이 금지되는 정보의 유형,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제한 등 사생활 보호장치 마련
 - 저장정보에 대한 수사기관, 특히 실무단계에서의 오·남용 방지대책 수립 등의 열람 권한 및 범위에 관한 기준 마련
 - 민감정도에 따라 접근권한과 보관기간을 차별화
 -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관리·감독 절차 마련
- 빅브러더의 출현과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바, 인권 및 정보보호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에 수집·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최소화

7.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 나이, 출신지역, 성별 등이 공개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 마련
- 컴퓨터 기술의 활용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무제한적인 생성과 중복체크가 가능하여 기술적 어려움 해소

-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 표시를 함께 기록함으로써 언제든지 최초 발급한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분 세탁 위험도 없음
- 기업들로 하여금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법령의 정비
 - 방만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들을 일체 정비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임을 전원일치로 판결(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등)
-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중단
 -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주민등록번호의 전자화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어야 함

8. 생체정보의 수집·처리원칙 마련 및 오남용 방지

- DNA 등 생체정보 수집·이용 전반에 관한 일반원칙의 제정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한 가치 “생체정보 보호 및 이용 지침” 제정
 - 생체정보는 유일성·비가변성·일신전속성 등으로 인해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로 취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원칙 부재
 - 최근 개별법에 의해 경쟁적으로 DNA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중이나, DNA시료의 채취·취급 방법, DNA정보의 보호·보관 방법, DNA 시료 및 정보의 폐기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정과 기준이 미비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생체정보 관련 법률 정비
 - 일반 개인정보 오남용의 경우(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수준이 현저히 낮은 DNA정보 오남용 등에 대한 처벌 수준(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강화 ⇒ DNA정보를 다루는 공직자, 의료인, 일반인들의 오남용 및 부주의 예방

9. 인터넷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의 제한 및 기준·절차 등 마련

- 인터넷 패킷감청의 무분별한 허가를 막고 패킷감청의 범위,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제어수단 마련
 - 인터넷 패킷감청의 원칙적 금지, 패킷감청 대상범죄를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대상보다 더욱 최소화
 - 패킷감청의 요건, 절차, 범위, 방법, 기간, 횟수 등 법제화
 - 패킷감청장비(DPI)의 기술사양 공개를 제도화
- 패킷감청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우편, 인터넷서핑, 전자상거래, P2P 등 개인의 인터넷 활동이 모두 감청 대상
 -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인터넷활동까지 모두 감청의 대상이 되어 과도한 사생활 침해
 - 하나의 컴퓨터를 함께 쓰는 가족이나 동료의 인터넷 이용 활동은 물론 하나의 인터넷 교환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의 컴퓨터 사용 내역까지도 도청 가능
 - 국회사무처도 패킷감청은 국민의 사생활이 통째로 실시간 감시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최소침해 원칙에 반하며, 포괄 영장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

10.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재정립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원칙을 현대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
 -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간 통합·연동의 요건,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추적차단기능(Do-Not-Track), Privacy by Default,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잊혀질 권리 등 도입
- 빅데이터는 정부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IT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포기라는 커다란 희생이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정책과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의 조화가 필요함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

- 불특정 다수 및 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공유 기준의 마련
 - 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공개로 설정해 놓는 행위 금지
 -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온라인 추적을 차단할 수 있는 추적차단기능(Do-Not-Track) 제공 의무화
- 미국, EU 등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이미 추적차단기능(Do-Not-Track) 제도화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강화

1. 인터넷에서 불법정보심의제도의 개선 및 자율규제 원칙 적용

-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1기,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방문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 등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심의에 대하여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민간자율정책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심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권고받은 바와 같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을 이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하는 수사, 구금,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불법정보심의 제도는 불법이라 규제되는 표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2.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의 강화

- 2012년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무효화됨
- 그렇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상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메인이름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와 달리 선거법상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판시하였음
- 익명표현의 자유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남은 실명제의 폐지를 고려해야 하며,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장 강화

-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상의 표현은 제한되어야 함
- 그러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타인의 명예 훼손 표현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 비록 대법원이 일관되게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진실민음의 상당성’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지만,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호가치도 중요하므로 이익형량 과정에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의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 확대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란 점에서 최대한 보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악성댓글 등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양자의 이익을 최대한 균형이 맞게 조정하는 이익형량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봄

5.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원칙을 준수

-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제한의 경우 법률유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
- 유엔인권위원회의 일반지침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서만 해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무제한의 재량권 부여를 금지해야 하며, 국제규약이 정하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에 합치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공함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서 국가안보의 경우, 이를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정당한 공익에 대한 정보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권의 최소한 제한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한 접근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함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제도의 개선

- 인터넷상 악성댓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인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도 차단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건전한 비판의 경우 일반 국민의 통상적 관념과 법적 상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반박문 게재조치만 우선 허용 정도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제3절 정보접근권의 강화

1.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의 확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비공개사유와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함
-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

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되는 기록물과 기록정보자료의 대부분도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와 일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법률간 중첩되는 부분의 정리가 필요함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의 수립

-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시행으로 정보격차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정보취약계층이 많아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격차가 존재함
- 특히 정보취약계층에 속하는 노령,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상파방송 부분에서 수화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 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확대조치가 필요함
- 2006년 「도서관법」의 전면 개정으로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만들어졌지만, 일반국민과 달리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나 오디오북의 제작 지원은 극히 미미하여, 다양한 대체자료의 제작지원이 필요함
- 2008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날로그방송의 송출중단과 모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가 2013년부터 시행되나,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디지털방송의 혜택을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 장애인이나 노인의 매체선택권과 정보접근권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3. 인터넷 접속권의 보장 확대와 망중립성 확보

-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에의 접속여부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인터넷 접속권을 새로운 인권으로 보고 있음

- 유럽의회도 2009년 전자 커뮤니케이션 공통규제 프레임워크 디렉티브 (Directives 2002/21/EC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를 개정하여 인터넷 접속권을 표현의 자유와 동등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웹사이트차단금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기 차단 금지, 불합리한 망중립성 차별 금지의 의미가 포함된 망중립성 규정을 입법화하면서, 망중립성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선언을 추가한 바 있음
- 한미 FTA 제15.7조에서는 “소비자가 네트워크에 피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 바 있음
- 우리의 경우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전기통신설비에 피해를 가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장치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는 전기통신설비에 피해를 가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 콘텐츠를 선택할 권리가 인터넷접속권으로서 필요함
- 또한 법원은 Internet Explorer 환경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공인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어야 할 것임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의 강화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 저작권법에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 과도한 저작권 행사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의 입법화
- 대중이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정보와 문화에 접근하고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지적재산권의 정보문화향유권과의 균형 있는 조화
 -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문화향유권은 이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해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해 가는 중요한 인권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음

-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에서 각 회원국들에 권고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과도하게 엄격한 저작권 보호는 인권의 향유를 위협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의 창의성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적재산권법을 수정하거나 도입하는 데 있어 항상 공익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인권 보장을 인정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규정한 만큼 이용자 측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함

2. 정보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규범들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주권국가의 움직임은 일정부분 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정보문화향유권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조치와 게임셧다운제와 같은 독특한 제도들이 입법화되어 있음
- 그 규제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삼진아웃제, 기술적 보호조치, 게임셧다운제 등과 같은 정보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다른 헌법적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입법을 폐지할 것이 권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인권 보고서

인 쇄 일 : 2013년 1월

발 행 일 : 2013년 1월

발 행 인 : **현 병 철**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전 화 : 02) 2125-9759

팩 스 : 02) 2125-9733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인 쇄 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 화 : 02) 313-7593
